

目 次

第 1 篇 西大門區 沿革 및 一般現況	21
■ 西大門區 沿革	23
■ 區政與件	25
■ 議會 構成 現況	27
第 2 篇 議 政	29
■ 會期別 議案處理 一覽	31
■ 第24回 臨時會	47
○ 本 會 議	49
○ 常任委員會	57
○ 環境對策委員會	62
○ 議會廳舍建立準備推進委員會	63
■ 第25回 臨時會	65
○ 本 會 議	67
○ 常任委員會	70
■ 第26回 臨時會	91
○ 本 會 議	93
○ 常任委員會	129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29
■ 第27回 臨時會	139
○ 本 會 議	141
○ 常任委員會	142
■ 第28回 臨時會	155
○ 本 會 議	157
○ 常任委員會	158

■ 第29回 定期會	169
○ 本會議	171
○ 常任委員會	198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247
第 3 篇 議政活動 吳 議政報告會	255
■ 議政活動	257
○ 議員財產登錄	257
○ 開院 3週年 記念行事	257
○ 議員海外研修	257
○ 植木行事	257
○ 巨濟郡 姊妹議會 訪問	257
○ 板門店訪問 吳 誠金傳達	257
○ 軍部隊訪問(第216部隊)	257
○ 議員세미나	258
○ 議政教育研修	258
○ 議政報告會	258
○ 議員送年會	258
■ 議政報告會	259
第 4 篇 現況 吳 統計	261
■ 集會 吳 會期	263
○ 集會現況	263
○ 會期別 開會日數 吳 會議時間	263
○ 會期別 集會要求 現況	265
■ '94 議案處理 現況	266
■ 議會運營現況	267

○ 本會議	267
○ 委員會	267
○ 議案處理現況	267
○ 請願 吳 陳情書 處理 現況	267
○ 區政質問	268
○ 區政監查	268
■ 民願處理現況	269
○ 請願處理內譯	269
○ 陳情書處理內譯	269
第 5 篇 畫報를 통한 議政活動	273

6

第 1 篇

一般現況 및 議會構成 現況

- ▨ 西大門區沿革
- ▨ 區政與件
- ▨ 議會構成現況

西大門區 沿革

年月日	根據法規	變更過程
石器時代		○ 部族끼리 群落·集團生活 (신촌에서 발연성 흑요석 및 옥수석기 등 유물이 발견됨)
三國時代		○ AD 553年 新羅 新州에 編入
統一新羅		○ AD 668年 漢山州에 編入
高麗時代		○ AD 983年 陽州에 編入
朝鮮時代		○ 漢城府의 5부중 서부에 속하고 廳舍所在는 서린방(현 종로구 서린동 부근)이었다.
(李太祖 3年)		○ 京城府 西部出張所 設置-58개동 관할
1940. 7. 1		○ 區制實施의 전제로 京城府 西大門事業所設置事務所 所在地는 京城府 합정27번지였다.
1943. 7. 1		○ 區制의 實施(府와 町의 中間機關) 京城府에 7개구(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설치 西大門事務所를 西大門區 役所로 改稱
1943. 6. 10		○ 麻浦區役所 신설(23개정 관할) - 京城府 8개구
1944. 10. 23	總督府令 第305號	○ 西大門區役所는 35개정 관할
1945. 10. 16		○ 西大門區域所를 西大門區로 改稱 (初代 區廳長 任命)
1945. 8. 13	大統領令 第159號 第161號	○ 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延禧面, 18개리 (恩平面 11里, 延禧面 7里 面積 46km ²)를 西大門區로 編入-53개동 관할 恩平出張所 설치-18개리 관할

年月日	根據法規	變更過程
1964. 6. 1	法律 第1640號	○ 行政區域 變更으로 西大門區 老姑山洞과 大峴洞 일부지역이 麻浦區에 편입되고 麻浦區 阿峴洞 일부지역이 西大門區로 편입
1973. 7. 1	法律 第2596號 大統領令 第6548號 市條例 第 748號	○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舊把撥里, 津寬內里, 津寬外里를 西大門區에 編入 ○ 麻浦區 阿峴洞 일부지역이 西大門區로 編入 ○ 麻浦區 東橋洞, 西橋洞 각 일부가 西大門區에 編入 ○ 津寬洞 新設(41동→42동)
1975. 10. 1	大統領令 第7816號	○ 區 管轄區域 變更 - 西大門 일부를 鍾路, 中區, 麻浦, 龍山에 編入 - 麻浦區 東橋洞 일부를 西大門區에 編入
1979. 10. 1	大統領令 第9360號	○ 恩平區 신설로 西大門區에서 分區됨 (녹번동 외 12개동 은평구 관할)
1983. 12. 1	市條例 第1814號	○ 현 행정구역

區 政 興 件

〈 地 域 特 性 〉

- 도 심 지 역 과 연 접 —— 기 존 주 거 지 역
- 노 후 주택 및 시민아파트 밀집 ——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발
- 명 문 대 학 집 중 —— 교육·문화의 중심지

1. 一般現況

- 面 積 —— 17.7km² (市の 2.9%)
- 人 口 —— 121,149世帯 370,848名 (市の 3.5%)
※ 재개발 사업등으로 최근 5년간 년평균 3,240명씩 감소
- 住 宅 —— 67,305戶 (보급율 65.6%)
- 行政區域 —— 22洞 600統 4,703班
- 人 力 —— 1,469名(區 907, 洞 489, 保健所 73)
- 財政規模 —— 81,759百萬元('94 대비 9.4% 증)

2. 基幹施設

- 도 로 율 —— 16.8%
- 상수도 보급율 —— 100%
- 도시가스 보급율 —— 45.2%
- 하수도 보급율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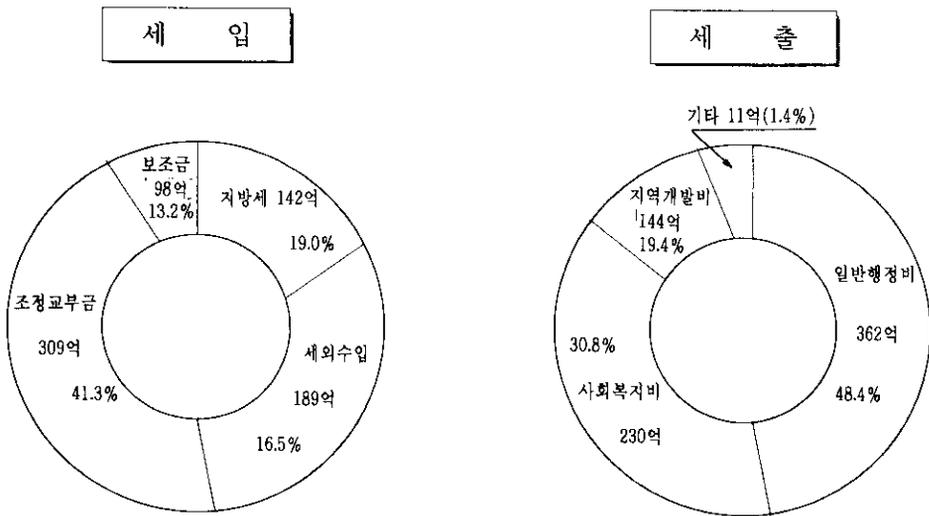
3. 主要施設

- 경찰청·불란서대사관·동아일보 등 88개 공공기관

- 세브란스·간호전문대부속병원·명지종합병원 등 393개 의료기관
- 연세대·이화여대·명지대·추계예술대 등 51개 교육기관
- 독립문·보도각백불·언더우드홀 등 16개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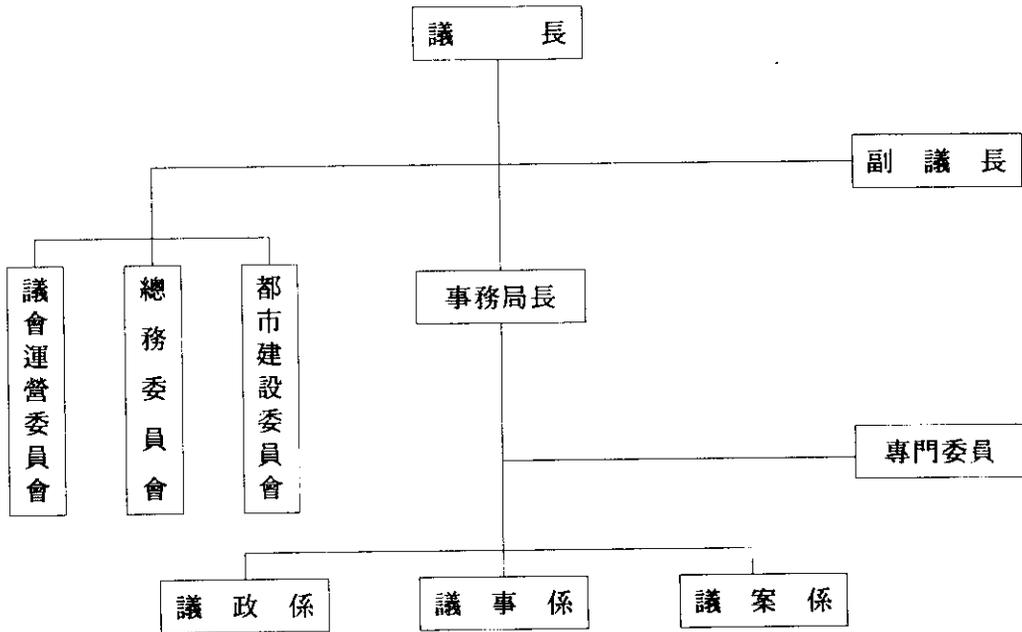
4. 財 政

- 總 74,733,567千원(一般：69,841,023千원, 特別：4,892,544千원)



議會現況

1. 組織



2. 議會構成

- 議員：28名
- 構成
 - 議長：金銀天 議員
 - 副議長：左斗行 議員
 - 常任委員會
 - 議會運營委員會 9名
 - 總務委員會 13名
 - 都市建設委員會 13名

- 特別委員會
 -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9명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9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 환경보전대책위원회 7명

3. 議 事 堂

- 施設物：총 344평
 - 3층 201평
 - 4층 143평
- 의 장 실외 8개실
- 본회의장의 4개실
- 裝 備：방송시설외 19종 구비

第 2 篇

議 政

- 會期別議案處理一覽
- 第 24 回 臨時會
- 第 25 回 臨時會
- 第 26 回 臨時會
- 第 27 回 臨時會
- 第 28 回 臨時會
- 第 29 回 定期會

會期別 議案處理一覽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3回 (定期會) 閉會中	94. 1. 24(月)	議會運營委員會 3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4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環境保全對策委員會構成決議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條例審查特別委員會所管事項調整案
第24回 (臨時會)	2. 1(火)	開 會 式	
	2. 1(火)	第1次 本會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4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第24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1994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 4. 休會의件
	2. 3(木)	第2次 本會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94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案再議要求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環境對策委員會構成決議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環境對策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條例審查特別委員會所管事項調整案 7. 都市計劃用途地域吳地區變更建議請願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4回 (臨時會)	94. 2. 1(火)	總務委員會 1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 中改正條例案
	2. 1(火)	都市建設委員會 1次	1. 都市計劃用途地域및地區變更件의請 願
	2. 3(木)	環境對策委員會 1次	1. 委員長選任의件 2. 幹事選任의件
第24回 (臨時會) 閉會中	2. 22(火)	議會廳舍建立準 備委員會 1次	1. 西大門區議會獨立廳舍事項聽取및對 策協議의件
	3. 22(火)	環境對策委員會 2次	1. 環境關聯業務報告의件
	5. 12(木)	議會運營委員會	1. 第25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 程協議의件
第25回 (臨時會)	5. 19(木)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第25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 定의件 2. 第25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 書名議員選出의件 3. 1994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 4. 休會의件
	6. 2(木)	第2次 本會議	1. 水道事業所및配水池名稱變更에 관한 建議案 2.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 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 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土地評價委 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5回 (臨時會)	94. 6. 2(木)	第2次 本會議	5.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仲介業紛爭調政 委員會運營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 條例案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社등에 대 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人事委員會費用 辨償條例案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 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國際化推進協議 會條例案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洞事務所設置條 例中改正條例案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區立合唱 團運營에 관한條例案 13. 서울特別市西大門區에너지使用者등 에 대한過怠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14. 서울特別市西大門區쓰레기줄이기와 資源再活用促進에 관한條例案 15.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 條例案 1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利用施設過 怠料徵收에 관한條例案 17. 1993年度豫算決算委員選任의件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5回 (臨時會)	94. 5. 23(月)	總務委員會 1次	1. 總務委員會所管事項業務報告 • 總務局, 保健所
	5. 24(火)	總務委員會 2次	1. 總務委員會所管事項業務報告 • 市民局
	5. 25(水)	總務委員會 3次	1. 總務委員會所管事項業務報告 • 財務局, 3室
	5. 26(木)	總務委員會 4次	1.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社등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27(金)	總務委員會 5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人事委員會費用辨償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區立合唱團運營에 관한條例案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5回 (臨時會)	94. 5. 27(金)	總務委員會 5次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에너지使用者등에 대한 過怠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注油所許可에 관한 請願
	5. 30(月)	總務委員會 6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쓰레기 줄이기와 資源再活用促進에 관한 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 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利用施設 過怠料徵收에 관한 條例案
	5. 23(月)	都市建設委員會 1次	1. 都市建設委員會所管事項業務報告 • 都市整備局
	5. 24(火)	都市建設委員會 2次	1. 水道事業所 및 配水池名稱變更에 관한 建議案 2. 都市建設委員會所管事項業務報告 • 建設局
第25回 (臨時會) 閉會中	6. 13(月)	議會運營委員會 1次	1. 第26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 程協議의件
第26回 (臨時會)	6. 20(月)	開 會 式	
	6. 20(月)	第1次 本會議	1. 第26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 定의件 2. 第26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 署名議員選出의件 3. 1994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提案說明 4.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休會의件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6回 (臨時會)	94. 6. 21(火)	第2次 本會議	1. 區政에 관한 質問
	6. 30(木)	第3次 本會議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중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 위한 區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入徵收補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1994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5. 區議會獨立廳舍確保를 위한 推進狀況報告
	6. 23(木)	總務委員會 1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 위한 區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入徵收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1994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總務委員會所管事項)
	6. 24(金)	總務委員會 2次	1. 1994年度第1次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總務委員會所管事項)
	6. 23(木)	都市建設委員會 1次	1. 1994年度第1次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都市建設委員會所管事項)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6回 (臨時會)	94. 6. 24(金)	都市建設委員會 2次	1. 1994年度第1次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都市建設委員會所管事 項)
	6. 27(月)	豫算決算委員會 1次	1. 委員長選任의件 2. 幹事選任의件 3. 1994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6. 28(火)	豫算決算委員會 2次	1. 1994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6. 25(土)	議會運營委員會 1次	1. 1994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議會運營委員會所管事 項)
第26回 (臨時會) 閉會中	9. 1(木)	議會運營委員會 2次	1. 第27回西大門區(臨時會)議事日程協 議의件
第27回 (臨時會)	9. 7(水)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第27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 定의件 2. 第27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 署名議員選出의件 3. 休會의件
	9. 14(水)	第2次 本會議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日費와 旅費의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 査및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7回 (臨時會)	94. 9. 14(水)	第2次 本會議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價對策委員會 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 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傷害등 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 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木)	總務委員會 1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傷害등 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 員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價對策委員會 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 5.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 中改正條例案
	9. 12(月)	議會運營委員會 1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日費와 旅費의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 查및調查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7回 (臨時會) 閉會中	94.10.17(月)	議會運營委員會 2次	1. 第28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第28回 (臨時會)	10. 24(月)	開 會 式	
	10. 24(月)	第1次 本會議	1. 第28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第28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休會의件
	10. 31(月)	第2次 本會議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6. 國·公有地再建築에 따른 賃入者 대책에 관한 請願
	10. 25(火)	總務委員會 1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 27(木)	都市建設委員會 1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8回 (臨時會)	94.10.27(木)	都市建設委員會 1次	2. 國·公有地再建築에 다른 貫入者對策에 관한 請願
	10. 24(月)	議會運營委員會 1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
	10. 28(金)	議會運營委員會 2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
第28回 (臨時回) 閉會中	11. 8(火)	議會運營委員會 3次	1. 第29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 件
	11. 18(金)	議會運營委員會 4次	1. 第29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에 대한 翻案動議의 件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綜合計劃協議의 件
第29回 (定期會)	11. 25(金)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第29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 件 2. 第29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 件 3. 1995年度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 4.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提案說明 5.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에 대한 提案說明 6. 區政質問期間決定의 件 7. 1994年度行政事務監查實施時期 및 期間決定의 件 8. 1994年度行政事務監查計劃書承認의 件 9. 區廳長 및 公務員出席要求의 件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9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	10.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的件
	11. 28(月)	第2次 本會議	1. 區政에 관한質問
	11. 29(火)	第3次 本會議	1. 區政에 관한質問(계속) 2. 第29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變更의件
	12. 21(水)	第4次 本會議	1.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5年度豫算案
	12. 24(土)	第5次 本會議	1. 第29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變更의件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 27(火)	第6次 本會議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의件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體育道場과隣接한場所의範圍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兒童委員協議會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減免條例案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經營投資事業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9回 (定期會)	94.12.27(火)	第6次 本會議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1995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1. 29(火)	議會運營委員會 1次	1. 第29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變更의件
	12. 3(土)	議會運營委員會 2次	1. 1995年度豫算案 • 議會事務局所管
	12. 24(土)	議會運營委員會 3次	1. 第29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變更의件
	12. 12(月)	總務委員會 1次	1.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5年度豫算案
	12. 13(火)	總務委員會 2次	1. 1995年度豫算案(계속)
	12. 23(金)	總務委員會 3次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體育道場斗隣接한場所의範圍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兒童委員協議會設置및運營등에 관한條例案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9回 (定期會)	94.12.23(金)	總務委員會 3次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減免條例案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經營投資事業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1995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 12(月)	都市建設委員會 1次	1.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5年度豫算案
	12. 13(火)	都市建設委員會 2次	1. 1995年度豫算案(계속)
	12. 22(木)	都市建設委員會 3次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12. 14(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次	1. 委員長選任의件 2. 幹事選任의件 3.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4.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5. 1995年度豫算案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9回 (定期會)	94.12.15(木)	豫算決算特別委員會 2次	1. 1995年度豫算案(계속) • 總務局所管 • 3室所管 • 財務局所管
	12. 16(金)	豫算決算特別委員會 3次	1. 1995年度豫算案(계속) • 市民局所管 • 都市整備局所管 • 建設局所管
	12. 19(月)	豫算決算特別委員會 4次	1. 1995年度豫算案(계속) • 保健所所管 • 議會事務局所管
	12. 20(火)	豫算決算特別委員會 5次	1. 1995年度豫算案(계속)
	12. 11(日)	議會運營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議會事務局)
	12. 5(月)	總務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3室, 總務局)
	12. 6(火)	總務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總務局, 市民局)
	12. 7(水)	總務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市民局)
	12. 8(木)	總務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3室, 保健所)
	12. 9(金)	總務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3室,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保健所)
	12. 10(土)	總務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3室,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保健所)
	12. 5(月)	都市建設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都市整備局, 建設局)
	12. 6(火)	都市建設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住宅課, 建築課, 建設管理課)

回 數	年月日(曜日)	會 議 名	議 事 日 程
第29回 (定期會)	94. 12. 7(水)	都市建設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土木課, 下水課, 公園綠地課)
	12. 8(木)	都市建設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都市整備局, 建設局)
	12. 9(金)	都市建設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都市整備局, 建設局)
	12. 10(土)	都市建設委員會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查(都市整備局, 建設局)

第24回 臨時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 環 境 對 策 委 員 會
- 議 會 廳 舍 建 立 準 備 推 進 委 員 會

第 24 回 臨 時 會

- 會 期：1994年 2月 1日 ~ 2月 3日 (3日間)
- 集會要求者：金平洛 議員외 9인

概 況

第24回 臨時會는 1994年度 최초로 개최되는 會期로써 開會式에서 金銀天 議長과 金太壽 區廳長의 甲戌年 신년인사가 있었으며, 1, 2차 本會議를 개최하여 유영식 總務局長으로부터 '94年度 區政主要業務計劃을 보고받음으로써 區政現況과 방향을 파악하게 되었고, 부의안건으로는 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재의 요구안의 6件的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각 常任委員會에서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의 3件的 의안을 심사하였고, 特別委員會에서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環境對策委員會委員選任의件的 2件的 의안을 심사하여 각 委員會別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委員會활동에 임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區政報告

第1, 2次 本會議에서 유영식 總務局長으로부터 구정여건과 1994年度 業務計劃을 청취하였으며, 전반적인 區政現況과 業務計劃을 파악하여 향후 議政活動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區政報告要旨]

- 財 政：總 規模 674億('93年 대비 3.69% 증가)

一般會計：652億('93年 대비 3.65% 증가)

特別會計：22億('93年 대비 4.76% 증가)

○ 主要業務計劃

- 생활개혁과 쇄신행정 실천
- “새로운 탄생” 서울 600년 사업추진
- 주거환경 현대화 추진
- 불편없는 시민생활
- 맑고 깨끗한 도시건설
- 시민복지향상

2. 議案處理

가. 條 例 案

-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案再議要求案
-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나. 決 議 案

-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環境對策委員會構成決議案

다. 請 願

- 1) 都市計劃用度地域및地區變更建議請願

라. 其他案件

-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環境對策委員會委員選任의件
-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條例審查特別委員會所管事項調整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案再議要求案

- 再議要求日字：1994年 1月 4日
- 再議 要求者：西大門區廳長
- 理 由：1993年度 12月 21日 第23回 定期會 第3次 本會議에서 “區有建物 貸付料 算出基準”인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案 第24條를 削除, 修正議決하여 區有財産을 貸付하는 경우 貸付料 算出 根據가 없어 區有建物 貸付業務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임.
- 結 果：재석의원 23名중 찬성 1名, 반대 16名으로 區廳長이 재의 요구한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案에 대한 수정안을 부결처리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議 長 新 年 人 事]

議員 여러분 그리고 金太壽 區廳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밝고 희망찬 새해에 第24回 臨時會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옛말에 세월은 流水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區議會가 출범한 지도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러 가는듯 합니다.

大學으로 말하면 大學 4年生으로 졸업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성숙된 議政活動을 펼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地域과 區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우리 區民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여 區民의 輿望과 期待에 부응하는 자세를 확고히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區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區議會를 지켜 보면서 금년에는 무엇인가 발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區民의 기대가 큰 만큼 건설하고 알찬 議會運營을 위하여 區民의 意思를 폭넓게 수용하고 執行部와는 대화를 통하여 牽制와 執行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西大門區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開會辭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區 廳 長 新 年 人 事]

존경하는 金銀天 議長님 그리고 여러 議員님!

오늘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第24回 臨時會에서 議員 여러분께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에도 區政發展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議員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안으로는 變化와 改革을 통하여 新韓國 創造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이룩한 한해였으며, 밖으로는 세계 116個國이 7年間이나 끌어왔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바야흐로 經濟가 國際間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실로 숨가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선 世界化와 未來化의 시대에 걸맞게 우리 區政도 많은 분야에서 질을 높이고 수준을 끌어 올리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해에 文民政府 출범 직후 시작한 行政刷新推進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中小企業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왔던 제반 法令과 制度를 과감하게 改善하여 住民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제 1994年 새해 區政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西大門區 公職者는 제가 지난번 定期會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區民을 주인으로 섬기는 區民 본위와 區政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月 6日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천명하신 바 있는 國家 競爭力 提高를 위한 變化와 改革의 지속적인 추진과 新經濟 5個年 計劃의 착실한 추진 그리고 農·水産物 개방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農·漁村問題의 解決, 人間教育과 人材養成을 위한 教育開化의 본격 추진,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등 사회 전반의 國際化와 世界化를 위한 각종 시설의 추진과 아울러 7,000萬 겨레의 생존과 직결되는 北韓의 핵문제 해결과 南北관계 개선 등 國政의 6대지표가 일선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議會에서 議決하여 주신 674億원의 금년도 豫算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議員님들의 의결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뜰하고 규모있게 區의 살림을 꾸려 나가겠으며, 事業을 추진할 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느것이 진정 區民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더 생각하는 자세로 豫算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主要事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들의 주변생활에서 재산으로부터 오는 모든 각종 불안과 부담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한 生活改革을 우리 公職者가 먼저 실천하고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住民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生活改革은 과거의 예와 같이 일과성 업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法과 制度를 개선하고 公職者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선정된 10代課題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第2段階 行政刷新을 통하여 단순한 사무절차 개선차원에서 벗어나 住民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企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行政刷新을 펼치겠으며 行政이 國家發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서울보다 더 긴 歷史를 가진 都市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都市가 무려 6세기 동안을 國家의 首都로 이어온 예는 흔치 않습니다.

올해는 서울이 韓半島의 首都로 정해진지 6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는 다가오는 21세기는 東北아시아가 세계 주역이 되는 時代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이 21世紀의 주역 도시로 우뚝서고 統一된 祖國의 영원한 首都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서울을 함께 가꾸고 새롭게 탄생시켜야 하겠습니다.

大學과 青年文化의 도시인 우리 西大門區는 서울 600年을 맞이하여 우리 區가 歷史都市, 文化都市 그리고 인정이 넘치는 人間都市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文化行事와 紀念事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新村文化祝祭와 區民의 날 行事가 우리 區民들의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으며, 고려 궁중의 5대 놀이의 하나였던 아현 본산대놀이를 고증을 통하여 발굴하고 무악동봉수대를 복원하며 또한 음악회, 연극제, 미술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區의 역점 시책인 시민아파트의 정리와 再開發事業 그리고 住民環境改善事業을 독려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清掃問題, 交通對策, 環境保全등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 수준을 향상시키고 綠地와 公園을 보전하는 한편 크고 작은 건설공사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노인, 부녀, 청소년들의 福祉增進을 위해서도 힘을 쏟겠습니다.

이러한 區政의 主要事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事業計劃에 대한 住民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事業을 직접 담당해 수행하고 있는 公務員 한사람 한사람의 가치관과 마음가짐이 그 사업의 성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하겠습니다.

公職者가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 비로소 훌륭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차례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西大門區를 살기좋은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자신이 먼저 땀을 흘릴 것이며 우리 직원들의 혼쾌한 동참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직한 地方自治는 議會와 執行部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상호보완적이며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會의 執行部에 대한 豫算議決과 決算承認, 行政監査등 통제는 결국 주민들의 福祉增進과 地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니 만큼, 여러 議員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저희 공무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銀天 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議員님 한분 한분은 우리 40萬 區民의 대표이시며 여러 議員님들의 의사가 바로 전체 區民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區民의 뜻에 합당한 區政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議員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500여 西大門區 소속 전 공직자는 傳統과 歷史의 고장 그리고 안정된 西大門區에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금년 한해에도 住民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議員님 여러분의 건강과 家庭에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1994年 1月 24日 第23回 定期會 閉會中 開催된 議會運營委員會는 第24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의 2개안을 심사하여 第24回 臨時會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會期決定의件

◆ 第24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議事日程 協議의件의 會期 決定 ◆

- 1) 會期期間: 1994年 2月 1日 ~ 2月 3日(3日間)
- 2) 場 所: 西大門區議會 本會議場 및 小會議室

나. 決議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環境保全對策委員會構成決議案 ◆

1) 提 案

이 案은 1994年 1月 15日 曹甲鉉 議員의 8人으로부터 發議된 決議案으로 第3次 議會運營委員會(94. 1. 24)에 상정하였으며 注文 및 提案理由,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注 文

- 쾌적하고 명량한 環境에 대한 市民의 慾求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自然環境을 保存하고 公害가 없는 社會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區內的 環境을 汚染시키는 실태를 파악하고 對策을 強求토록 촉구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環境對策委員會를 구성한다.
- 本 委員會는 7人으로 구성한다.
- 本 委員會의 任期는 의결된 날로부터 1年으로 한다.

○ 本委員會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關係機關으로부터 협조를 받는다.

나) 提案理由

環境汚染과 自然破壞는 한나라 뿐만 아니라 全人類가 공동예방하지 않으면 안될 人類의 존망과 관련된 위협으로 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60年代부터 추진해온 經濟發展의 효과로 經濟的으로는 先進開發 途上國에 들어서고 있으나 環境保全은 아직도 後進國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主要골자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環境保全對策委員會 구성
- 本委員數는 7人으로 한다.
- 本委員會는 委員會 구성시로부터 1年間 존속한다.

2) 修正要旨

가) 修正理由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環境保全對策委員會構成決議案”이라는 제목과 문구수정 및 주문 항목중 條項을 1項目 더 신설하고자 함.

나) 修正骨子

- 제목변경: 서울特別市 西大門區議會 環境保全對策委員會 구성안
- 주문항목중 1항목 신설: 本委員會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關係機關으로부터 협조를 받는다.
- 주문항목중 문구 일부 수정

3) 審査結果

재석위원 9名중 5名의 찬성으로 曹甲鉉議員외 8人이 발의한 원안을 수정가결하였다.

다. 其他案件

◆ 서울特別市西大門區條例審査特別委員會所管事項調整案 ◆

1) 提 案

이 調整案은 1994年 1月 18日 崔容完議員의 8人으로부터 발의된 所管事項 調整案으로 第3次 議會運營委員會(94. 1. 24)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條例審査 特別委員會의 條例審査範圍중 일부가 기존 常任委員會의 所管事項과 중복(區廳長이 제출하는 條例改正案등)이 되므로 이를 조정 구분시행함으로써 議會運營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구성되는 날 현재의 西大門區 75個 條例에 한하여 제정하는 條例는 所管 常任委員會에서 審議한다”를 “西大門區에서 시행중에 있는 기존條例를 자체조정하여 條例審査 特別委員會委員長 명의로 제안하며, 기존조례라 할지라도 西大門區廳長 또는 條例審査 特別委員會 委員이 아닌 委員이 提出·發議하는 條例의 改正廢止에 관한 사항은 소관常任委員會에서 이를 심사한다”로 함(條例審査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 “라”항).

2) 審査結果

在席委員 9名 전원 만장일치 崔容完議員의 8人이 발의한 원안을 가결하였다.

總務委員會

1994年 2月 1日~2月 3日까지 第24回 臨時會 休會中 開催된 總務委員會는 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하여 第24回 臨時會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4年 1月 11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改正條例案으로 第1

次 總務委員會(94. 2. 1)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중 改正條例가 공포됨에 따라 市長의 권한이던 體育關聯 社會團體 登錄事業중의 일부 업무가 區廳長에게 委任됨으로써 業務處理에 따른 手數料를 徵收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手數料의 種類 및 徵收金額중 <별표>2호의 제목중 “(19種)”을 “(20種)”으로 하고, 같은호 나목의 내용중 (10) 급수공사란 다음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

종 목	단 위	수 수 료	비 고
(11)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다) 參考事項

- 體育61010-1053('93. 10. 22)號 社會團體登錄 業務에 따른 自治區 手數料 徵收 근거 마련 지시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사회단체등록변경이란 체육관련단체외에 포괄적인 용어가 아닙니까?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조례개정
서대문구 관내에는 체육에 관련 사회단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체육관련 등록업체는 구관내에는 없습니다.

3) 審査結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在席委員 10名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都市建設委員會

1994年 2月 1日~2月 3日까지 第24回 臨時會 休會中 開催된 都市建設委員會는 西大門區 延禧2洞 92-11 윤주환외 66人으로부터 제출된 都市計劃用途 地域 및 地

區變更建議 請願에 대하여 審査, 委員會 意見書를 채택하여 第24回 臨時會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請 願

◆ 都市計劃用途地域및地區變更建議請願 ◆

1) 提 案

이 請願은 '94年 1月 21日 연희2동 92번지 11호 윤주환외 66人(소개의원 : 左斗行이 제출한 請願으로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94. 2. 1)에 상정하였으며 소개의원의 소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개의견

延禧2洞 주민일동이 청원(都市計劃用途地域 및 地區變更建議)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77年度 都市計劃 指定公告 할때 延禧洞에 일반 住居地域, 專用住居地域, 風致地區등이 복합적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현 都市計劃은 地域間 均衡이 맞지 않고, 같은 동네에서도 형평이 맞지않아 財產權行事, 建築의 制限, 貧富隔差의 誘發등 地域發展에 문제점이 있으니 전용 住居地域 및 風致地區를 해제하고 일반 住居地域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건은 議會審議를 거쳐 西大門區 및 서울시 都市計劃에 반영되도록 조치바랍니다.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名 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意見書를 採擇, 區廳長에게 이송하고 本會議에 附議토록 의결함.

3) 委員會 意見書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延禧2洞 92-11 윤주환 외 66명이 '94. 1. 21. 西大門區議會에 제출한 “都市計劃用途地域 및 地區變更의 請願”은 延禧洞 200番地 일대에 대하여 1977年 都市計劃指定 고시때 일반 住居地域, 專用住居地域, 風致地區를 해제하고

일반住居地域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請願으로 본 件은 區廳長이 關係機關과 협의하여 住民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對策委員會

1994年 2月 3日 第2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 散會後 開催된 環境對策委員會는 委員長과 幹事를 選任한 후 自然環境保全과 環境汚染豫防을 위하여 全委員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으며, 1994年 3月 22日 第24回 臨時會 閉會 期間中 開催된 環境對策委員會는 環境課의 9個 室·課 環境關聯 業務報告를 聽取하였다.

가. 委員長 및 幹事選任

◆ 委員長選任의件 ◆

1) 環境對策委員會 委員長 選任의件을 다음과 같이 互選하여 本會議에 報告함.

- 日 時：1994. 2. 3. 15：52
- 場 所：西大門區議會 小會議室
- 選任者：金源珠 議員

◆ 幹事選任의件 ◆

1) 幹事選任의件을 다음과 같이 互選하여 本會議에 報告함.

- 日 時：1994. 2. 3. 15：56
- 場 所：西大門區議會 小會議室
- 選任者：李文馥 議員

나. 業務報告

◆ 環境關聯業務報告의件 ◆

1) 1994年 3月 22日 第24回 臨時會 閉會期間中 開催된 環境對策委員會는 環境課의 9個 室·課 環境關聯 業務報告를 청취하고 西大門區의 쾌적한 都市環境造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環境對策 全委員은 積極적 業務推進 및 實踐에 萬全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環境關聯 主要業務報告 內容은 다음과 같다.

○ 日 時 : 1994. 3. 22. 10 : 13

○ 場 所 : 西大門區議會 小會議室

2) 環境關聯 業務推進部署 및 主要業務 報告 內容

○ 環 境 課 : 수질 및 대기오염등 市民局 환경대책 업무 총괄 보고

○ 衛 生 課 : 음식찌꺼기 처리 문제등 입주자을 실천 관계

○ 產 業 課 : 청정연료(도시가스) 공급관공사 및 농약관리, 연료수급관리 및 지도감독

○ 清 掃 課 :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대책등 청소 분야전반 사항

○ 住 宅 課 : 불량주택 새개발사업등 都市整備局 환경대책업무 총괄 보고

○ 地 域 交 通 課 : 불법정비 및 자동차공해 대책 등

○ 建 築 課 :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등

○ 土 木 課 : 토목공사장 분진 및 소음, 진동대책 등

○ 下 水 課 : 하천 오수 및 폐수 예방대책 등

○ 公 園 綠 地 課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미화 및 나무심기 등

議會廳舍建立準備推進委員會

1994年 2月 22日 第24回 臨時會 閉會期間中 開催된 議會廳舍建立準備推進委員會는 保健所移轉 廳舍 및 西大門區議會 獨立廳舍建立 用役設計에 관하여 審議 議決한 후 本會議에 報告하였다.

◆ 西大門區議會獨立廳舍推進事項聽取및對策協議의件 ◆

1) 經過事項

1994年 6月 10日 議會廳舍建立準備推進委員會가 구성되어 1993年 11月 13日 西大門區議會事務局 건의안에 의거 保健所의 유진상가 B동 이전계획 및 西大門區議會 獨立廳舍建立案을 93年 12月 29日 西大門區 政策調整委員會에서 審議 決定한바, 해당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2) 審議議決 事項

- 保健所 건물 보수비로 책정된 5,000千원은 西大門區議會 獨立廳舍 議事堂 建立關係로 漏水防止工事を 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區議會 獨立廳舍 用役設計費로 豫算轉用을 검토하고
- 西大門區議會獨立廳舍 議事堂은 옥상에 돔을 씌워서 本會議場과 방청석을 겸한 마스터플랜(기본설계도)을 마련토록 함.

第25回 臨時會

▨ 本 會 議
▨ 常任委員會

第 25 回 臨 時 會

- 會 期：1994年 5月 19日 ~ 6月 2日 (15日間)
- 集會要求者：崔容完 議員외 9人

概 況

第25回 臨時會는 '94. 5. 19.~6. 2.까지 개최되는 會期로써 1次 本會議에서 유영식 總務局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長 초두순시때 보고한 區政의 主要業務計劃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附議案件으로는 具滋億의원의 10人이 발의한 水道事業所 및 配水池名稱에 관한 建議案 외 16件的 의안을 처리하였고 臨時會 休會期間중 總務委員會는 委員會를 開催하여 3日間に 걸쳐 總務委員會 所管事項 業務報告를 듣고 1994年度 區有財産管理 計劃 變更承認案의 15件的 議案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으며,

都市建設委員會는 都市整備局 및 建設局 業務報告를 받고, 水道事業所 및 配水池 變更에 관한 建議案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區政 業務 報告 聽取

第1次 本會議에서 유영식 總務局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長 초두순시때 보고한 區政主要業務計劃을 보고받음으로써 區政與件과 '94年度 當面現案 事業 및 特殊事業 推進計劃에 관한 內容을 把握, 區民을 위한 적극적인 議政活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1) 區政與件

鞍山과 白蓮山등 넓은 녹지공간에 있는 전형적인 住居地域으로써 시민아파트와 노후주택이 많이 있고, 延大·梨花女大등 사학이 집중되어 있어 大學과 青年文化의 중심지임.

- 面 積 : 17.7km²
- 人 口 : 377,016名(5년동안 감소, 95년부터 증가 예상)
- 住 宅 : 66,303號
- 行政組織 : 22洞 596統 4,681個班
- 財政規模 : 674億원

2) 當面懸案 事業

- 歷史都市로써의 새로운 발견
- 文化都市로의 새로운 출발
- 새로운 행정풍토 조성
- 行政刷新의 발전적 정착
- 住居環境 현대화 추진
- 노후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 市民生活 불편 해소
- 원활한 교통소통 추진
- 밝고 깨끗한 都市 建設
- 市民福祉水準 향상

3) 特殊事業

- 유진상가 B동 保健所移轉 및 女性福祉館 개설
- 文學博物館 설립
- 區政 종합정보 상황실 개설
- 한글교육원 확대 운영
- 안산공원, 가족기념, 식수동산 조성

2. 議案處理

가. 條例案

-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
-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社등에 대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人事委員會費用辨償條例案
-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區立合唱團運營에 관한條例案
-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에너지使用者등에 대한過怠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 관한條例案
- 13)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
- 1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徵收에 관한條例案

나. 承認案

- 1)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案

다. 建議案

- 1) 水道事業所및配水池名稱變更에 관한建議案

라. 其他案件

- 1) 1993年度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1994年 5月 12日 第24回 臨時會 閉會期間中 開催된 議會運營委員會는 第25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議事日程 協議의件을 상정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第25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議事日程 協議의件의 會期決定
2. 일 시 : '94. 5. 19 ~ 6. 2(15日間)

總務委員會

1994年 5月 23日~5月 30日까지 第25回 臨時會 休會期間中 開催된 總務委員會는 3日間に 걸쳐 總務委員會 所管 局別 業務報告 및 1994年度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 承認案의 15件의 議案을 심사하여 第25回 臨時會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業務報告 聽取

◆ 總務委員會所管各局別業務報告聽取 ◆

1994年 5月 23日~5月 25日까지 業務報告를 청취하여 '94 당면현안문제 및 特殊事業의 推進計劃을 파악하였으며 委員들의 質의를 통해서 區民의 뜻을 전달하고 議政活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1) 1994. 5. 23 : 總務局, 保健所
- 2) 1994. 5. 24 : 市民局
- 3) 1995. 5. 25 : 財務局, 3室

나. 條 例 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3月 15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94. 5. 26)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區有財産 貸付料 算出에 현실을 기하며, 貸付料의 納付期限 연장과 隨意 賣却對象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區有林野의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요율을 山林法上의 國有林野와 동일하게 하여 條例體系上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나) 主要骨子

-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財産의 貸付料 引下 및 貸付料 對象 範圍 規定(條例案 第22條)
- 建物貸付料 算出基準 적용완화(條例案 第22條)
- 貸付料 納入期限을 契約締結日로부터 60日이내로 하여 30日 연장(條例案 第25條)
- 區有林野 特別會計 關聯條項 削除(條例 第33條, 第34條 및 第35條)
-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는 範圍의 擴大(條例案 第38條)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4年 2月 3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94. 5. 26)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個別公示地價의 客觀性과 公正性을 확보하고 地方土地評價委員會의 활성화를 위

하여 地域事情에 정통한 住民代表등을 본 委員會에 적극 참여토록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主要骨子

- 委員會 構成(案 第2條 第1項)
- 小委員會構成 및 상정된 案件의 실질적 심의 방안(案 第6條)

다) 關聯法令

-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施行令 第14條
- 個別土地價格 合同調查指針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地方土地評價委員會 運營條例('89. 11. 13 制定)
- '94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령(建設部)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규칙 제정시 자세한 것은 삽입하겠습니다.

3) 審査結果

재석위원 7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案 ◆

1) 提 案

이 制定 條例案은 1994年 4月 14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94. 5. 26)에 상정하였으며 制定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制定理由

仲介業務에 관한 紛爭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區廳長 소속하에 仲介業紛爭 調定 委員會를 設置·運營함으로써 仲介業者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去來秩序를 確立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委員會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仲介業者와 仲介依頼人 제3자간의 紛爭을 審査·調整함(案 第2條)
-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함.
(案 第3條 第1項)
- 委員會는 幹事 및 書記 각 1人을 두되, 幹事를 土地管理課長으로, 書記는 業務主管係長으로 함(案 第6條).

다) 關係法令：不動產仲介業法 第37條의 3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중개업 서대문지부에서 회비를 받아 중앙에 보내고 있는데 분쟁을 얼마나 해결했는지	전국적으로 1건을 처리하는등 전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구청위원회를 설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코자 합니다.

3) 審査結果

재석위원 7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4년 2월 21일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5. 26)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地方稅法 및 同法施行令 改正으로 인한 關係사항과 다른 법령 개정("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된 용어등을 반영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第17條 第5號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개정함.
- 第19條 第1項 본문중 "法 第184條의 3 第2項 第7號"를 "法 第184條의 3 第2項 第6號"로 개정함.

○ 第24條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함.

다) 根據法

地方稅法改正에 따라 法 第9條 規定에 의거 “自治區稅條例準則示達”로 內務部長 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시달되었음.

2) 審査結果

재석위원 7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社등에대한 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3月 12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한 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94. 5. 26)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서울特別市都市鐵道公社의 建設事業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서 地方公社등에 대한 區稅課稅免除對象을 신설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第2條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울特別市都市鐵道公社

다) 根據法

地方稅法 第9條 規定에 의거 地方公社등에 대한 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改正(案)許 可 (세정 13415-207호 '94. 2. 26)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차이점?	지하철1기를 1, 2, 3, 4호선을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지하철2기 지하철 5, 6, 8, 9호선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합니다.

3) 審査結果

재석위원 7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人事委員會費用辨償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4年 3月 8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5次 總務委員會('94. 5. 27)에 상정하였으며 制定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制定理由

地方公務員法 改正(法律 第4613號, '93. 12. 27)에 따라 自治區 人事委員會의 構成 및 機能을 보강하고, 委囑委員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 능률적인 人事委員會의 운영을 도모하고자함.

나) 主要骨子

- 第1條(목적) 地方公務員法 第7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第2條(일비) 委員이 會議에 출석한 때에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일비 지급
- 第3條(여비) 委員이 委員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여행한 때에는 2級地方 公務員에 상당하는 여비 지급

다) 關係法令：地方公務員法 第7條 第4項

2) 質疑 및 答辯要指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일비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초자치단체는 30,000원 이하입니다.

3) 審査結果

재석위원 9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3月 12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5次 總務委員會('94. 5. 27)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 地方公務員法 改正에 따라 區議會 事務局長에게 권한 위임
- 타 執行機關과 형평을 고려하여 議會機關에게도 임용권 일부를 권한 위임
- 行政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일부 不合理한 條項의 內容을 改正하기 위한 것임.

나) 主要骨子

- 公務員에 대한 일부 任用權
 - 6級以下地方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 : 의회내 전보권·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 技能職公務員 :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 포함), 의원면직
 - 7級以下 地方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의 소내전보(보건소장)
 - 소속 公務員의 昇級(區議會 事務局長, 保健所長)

다) 根據法令

- 地方公務員法 第30條의 5, 第63條, 第65條, 第27條, 第60條
- 地方公務員 任用令 第7條, 第26條
- 地方公務員 報酬規定 第6條

2) 質疑 및 答辯要指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이 동시에는 의회사무국장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지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개정 조례안은 지 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 항입니다.

3) 審査結果

재석위원 9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4年 3月 15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5次 總務委員會('94. 5. 27)에 상정하였으며 制定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制定理由

國際化·開放化에 대비하고 地方自治團體의 國際化 促進을 위한 民·官·産·學 協議體를 構成, 支援協助體制를 강화하여 自治團體 交流事業의 內實化를 통한 國家 競爭力 強化를 圖謀.

나) 主要骨子

○ 機 能

- 地方自治團體의 國際交流計劃 및 交流方向 설정
- 地方自治團體의 國際交流 協力事業 選定 및 推進 支援
- 地域駐在 外國機關·團體등과의 友好增進事業 실시
- 세미나·講演등을 통한 自治團體 交流協力事業 支援 등

○ 協議會 構成

- 會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
- 會長과 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區廳長이 위촉

○ 運 營 : 會議는 定期會 每분기 1회, 臨時會 필요시 소집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금번 조례안 상정은 민주화, 과학화, 국제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시기적으로 부합하다. 그러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떤지요?	임기 삽입은 3조 3항을 신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구성).

○ 수정요지 : 第3條(구성) 3項을 신설 “委囑된 委員의 任期등 필요한 事項을

規則으로 정한다” 함

○ 소수의견 : 우리구 재정 규모에 비하여 우리구에 위원회가 너무나 많다.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1名중 10名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4年 5月 2日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5次 總務委員會('94. 5. 27)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地方自治法改正('93. 3. 16 公布)으로 洞長의 임용이 特殊經歷職 公務員인 “別定職 地方公務員”에서 經歷職 公務員인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보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또한 우리區 관내 홍제3, 4동 경계지점에 직장조합아파트(현대그린)가 신축되어 아파트단지를 관할하는 2개의 行政洞을 하나의 行政洞으로 변경하여 해당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관련 條例를 改正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洞長 일반직화에 따라 “5級상당 別定職 또는 一般職 5級 公務員”을 “地方 行政事務官”으로 변경
- 홍제4동 197-10호 (724㎡)를 홍제3동 197-10호 (724㎡)로 편입
- 홍제4동 198- 8호 (2,350㎡)를 홍제3동 197- 8호 (2,350㎡)로 편입
- 홍제4동 199-20호 (163㎡)를 홍제3동 199-20호 (163㎡)로 편입

다) 參考事項

- 關聯法規 : 地方自治法 第109條 第2項, 第4條 第34項

서울特別市西大門區洞事務所設置條例 第2條 第1項, 第4條

- 立法豫告 : '94. 4. 14 ~ 5. 4(20日間)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장의 임기는 부칙이나 경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지?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의 개정에 의하여 규칙에 기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홍제4동에서 홍제3동으로 변경되면 인구는 몇사람이나 되는지?	홍제4동에서 홍제3동으로 변경되는 아파트 세대수는 90세대 약 360명 정도입니다.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1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區立合唱團運營에 관한條例案 ◆

1) 提 案

이 制定 條例案은 1994年 3月 18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5次 總務委員會('94. 5. 27)에 상정하였으며 制定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制定理由

西大門區立合唱團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基準을 區條例로 制定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目 的(第1條) : 西大門區立合唱團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
- 構成 및 團員의 定員(第2條)
- 運 營(第3條) : 西大門區廳長이 運營한다.
- 團員의 委囑 및 資格 基準(案 第5條)
- 責任完遂 및 報酬에 관한 規定(案 第7條 第8條)
- 공연 및 연습(第9條)

다) 制定根據

- 地方自治法 第9條 第2項 5號 마항(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西大門文化體育會館使用料徵收條例 第3條 第2項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疑要旨	答辯要旨
단원의수는 70인 이내인데 운영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요?	현재 94년도예산편성은 12,000,000원인데 25,000,000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93년도에 부결된 안인데 좋은 안이 많이 추가되지 않고 어머니합창단만 조례로 제안하는 이유는?	타성에 젖은 운영보다는 최선을 다하여 민족의혼을 넣을 수 있는 예술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審査結果

채석위원 10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에너지使用者등에대한
過怠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2月 3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5次 總務委員會('94. 5. 27)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에너지理用合理化法の 改正('91. 12. 14 法律 4426號) 및 서울特別市 行政權限 委任條例('93. 9. 25 第3027號) 규정에 의거 위임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過怠料賦課 徵收事務를 연계 처리함으로써 에너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고자함.

나) 主要骨子

-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過怠料의 賦課 徵收
 - 지정에너지 管理對象者: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미신고 등
 - 施工業者, 製造業者: 시공업의 일부 혹은 전부의 휴지, 폐지, 사업의 재개 미신고 등
 - 檢査對象器機 設置者: 檢査대상기기조종자의 採用, 解任, 退職 미신고 및 허위·申告 등

- 냉·난방온도 제한대상자 : 온도 제한기준 위반

다) 改正根據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92條(過怠料)
- 서울特別市條例 第30279號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개정안이 있기전에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하기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문항을 왜 삭제 했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삽입해도 좋겠습니다.

○ 討論要旨

지금까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는 긍정적인 면이 많았는데 이 改正 條例案은 “충분한 검토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議員의 충분한 토론후 議決시키든지 아니면 提出機關에서 심도있는 연구후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少數意見

4條에 삭제된 부분을 修正案으로 “삽입”하자는 의견에 4명의 의원이 찬성함.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0名중 6名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 ◆

1) 提 案

이 制定 條例案은 1994年 3月 3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6次 總務委員會('94. 5. 30)에 상정 하였으며 制定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制定理由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促進에 관한 法律이 公布 施行되고, 再活用品 收去體系가 一元化됨에 따라 서울特別市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 관한條例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날로 급증하는 쓰레기줄이기와 資源再活
 用에 기여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再活用推進協議會 構成運營(案 第5條)
- 過怠料賦課·徵收 方法(案 第7條)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분리수거가 잘되어야 쓰레기줄이기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재활용품을 잘 활용하면 분리수거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討論要旨

再活用推進協議會가 구성되려면 구체적인 人員 및 任員陣 人員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修正要旨

第5條(再活用推進協議會)

- 2項: 協議會 構成員은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30人 이
 내로 한다.
- 案 2項을 3項으로 한다.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3名중 9名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案 ◆

1) 提 案

이 制定 條例案은 1994年 3月 27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6次
 總務委員會('94. 5. 30)에 상정하였으며 制定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制定理由

廢棄物管理法·同法施行令·同法 施行規則 및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 全

文의 改正에 따라 法規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一般廢棄物 管理區域 指定하도록 함(案 第3條 및 第4條)
- 一般廢棄物 分離保管 및 排出規定을 정함(案 第5條 및 第6條)
- 一般廢棄物 收集·運搬 또는 處理의 代行契約內容 정함(案 第7條)
- 一般廢棄物 處理業者 遵守指針 정함(案 第8條 및 第9條)
- 收集·運搬·處理手數料 및 過怠料 賦課基準 정함(案 第11條 및 第12條)
- 一般廢棄物 手數料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案 第12條 내지 第25條)

다) 關係法規：廢棄物管理法·同法施行令·同法施行規則 및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

2) 審査內容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촉진 방안은?	종량제 수거제도를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물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쓰레기에 대한 공청회 및 우리구 특성에 맞는 계획은 세웠는지요?	쓰레기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며 서울의 경우는 지역특성이 비슷하여 전국민이 함께 노력할 사항입니다.

○ 討論要旨

홍제천변 적환장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비하겠습니다.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3名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徵收에 관한條例案 ◆

1) 提 案

이 制定 條例案은 1994年 5月 11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6次 總務委員會('94. 5. 30)에 상정하였으며 制定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制定理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한 室內環境確保 및 給·排水施設의 清潔管理로 國民의 保健向上을 圖謀하고 義務 違反者에게 過怠料를 賦課함으로써 義務履行을 촉구코자 함.

나) 主要內容

- 公衆利用施設 未申告 (法 第26條 第2項)
- 公衆利用施設 衛生管理 擔當者 未指定 (法 第27條 第2項)
- 公衆利用施設 精密檢査 未實施 (法 第27條 第3項)
- 公衆利用施設 吸煙區域 未指定 (法 第28條의 2 第1項)
- 公衆利用施設 衛生管理에 관한 事項 未報告 (法 第29條 第1項)
- 關係公務員 出入檢査 妨害, 其他등 (法 第29條 第1項)
- 公衆利用施設 衛生管理基準 違反 (法 第29條 第2項)

다) 制定根據

公衆衛生法 第43條 및 公衆利用施設衛生管理指針('93. 1. 24)

2) 審査內容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공중위생분야는 청소, 환경분야와 중복 연계되는데 관계자와 협조 및 연구검토를 해보셨는지요?</p>	<p>공중위생분야와 청소, 환경분야는 중복,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만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연계하여 할 수 없고 집행과정에서 연계, 협조 처리하겠습니다.</p>

○ 討論要旨

公衆衛生管理基準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西大門區廳에서는 인력이나 장비를 준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 審査結果

재석의원 8名 전원 만장일치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다. 承認案

◆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案 ◆

1) 提案

이 承認案은 1994年 1月 31日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4次 總務委員會(94. 5. 26)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77條(公有財產管理計劃) 및 區有財產 管理條例 第36條(公有財產管理計劃), 地方自治法 第58條(議案의 發議)의 規定에 의하여 1994年度 우리區 區有財產 管理計劃(賣却) 變更承認을 위함.

나) 主要骨子

○ 區有財產 賣却

總財產現況		當初管理計劃承認		變更管理計劃(案)		計	
筆地	面積(m ²)	筆地	面積(m ²)	筆地	面積(m ²)	筆地	面積(m ²)
463	27,008	3	56m ² 중53m ²	5	282.2	8	338.2m ² 중 335.2m ²

2) 審査內容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남가좌동 357-11의 소재한 토지는 명지학원에 용도변경후 매각할때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것 아닌지?	매각대상부지는 명지대학안에 있는 용지이므로 동의를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 됨.

○ 討論要旨

- 小委員會를 構成 현장답사후 本案을 審議토록 議決
- 小委員會：鄭日出의원, 鄭赫柱의원, 李文馥의원
- 小委員會에서 조사후 명지학원에 매각해도 타당함을 보고

○ 修正理由

地方財政法 第77條(公有財產管理計劃) 및 區有財產 管理條例 第36條(公有財產管理計劃), 地方自治法 第58條(議案의 發議)의 規定에 의하여 1994年度 우리區 區有財產 管理計劃(賣却) 변경승인을 위해, 1994. 1. 29일자로 西大門區議會에 제출된 4건의 區有財產 管理計劃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區有財產 賣却 5건을 추가하여 당초 제출된 區有財產 管理計劃 變更承認案을 수정하기 위함.

○ 修正의 主要骨子

總財產現況		當初管理計劃 變更承認(案)		追加管理計劃 變更承認對象		總管理計劃變更 承認對象	
筆地	面積(m ²)	筆地	面積(m ²)	筆地	面積(m ²)	筆地	面積(m ²)
463	27,008	5 (4건)	282.2	6 (5건)	172.2	11 (9건)	454.4

○ 區有財產 賣却 總括表

總財產現況		當初管理計劃承認		變更管理計劃案		計	
筆地	面積(m ²)	筆地	面積(m ²)	筆地	面積(m ²)	筆地	面積(m ²)
463	27,008	3	56m ² 중53m ²	11	454.4	14	512.4m ² 중 507.4m ²

3) 審査結果

재석위원 8名중 7名の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가결하였음.

라. 請 願

◆ 注油所許可에 관한請願 ◆

1) 提 案

이 請願은 '94. 5. 19. 西大門區 홍제3동 279-40 구인원의 71人이 金鍾彩議員, 金永一議員의 소개로 제출하여 第5次 總務委員會('94. 5. 27)에 상정하였으며 請願의 要旨 및 審査結果는 다음과 같다.

가) 紹介意見

弘濟3洞 279番地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일동이 청원한 “注油所 新規許可 撤回要求”에 대한 소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 홍제3동 279-40 구인원의 지역주민이 청원한 注油所 新規許可 撤回要求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로 주유소허가에 대한 부당성을 발견하여 民願人의 避害를 줄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임.

2) 審査內容

가) 請願要旨

- 西大門區 홍제3동 279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住民들은 북부고속도로가 홍은3동을 가로질러 통과하기 때문에 煤煙, 消音, 公害로 인해 부동산값 하락은 물론 임차인이 없어 세를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 西大門區 弘濟3洞 279番地의 10號의 3필지 지상 167㎡에는 7층건물(상가)을 신축 허가받아 지하층 축조 기초공사를 한뒤 계속해서 빌딩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중지하고 있다
- 西大門區 弘濟3洞 279番地 7號에 거주하는 이영운은 95坪 대지에 注油所 新規許可 신청을 1993年 5월에 西大門區廳 産業課에 접수하여 1993年 6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同年 8月 25日 許可權을 返納하고 같은날 권혁용, 권창수, 이상진은 상가 신축을 들연 변경하여 注油所設置 許可를 받았으며
- 西大門區 弘濟3洞 279番地의 10號의 3필지 617㎡ 지상 주유소 신축허가와 건축문제로 1993年度 9月부터 주민들이 注油所許可 및 建築에 반대하고 陳情書를 政府合同民願室, 國務總理室, 內務部長官, 環境部長官, 監査院 등에 提出하여 回示를 받은 상태이고
- 1994. 4. 19. 西大門區廳 監査室에서 民願審議調整委員會를 開催하여 상기 민원을 審議하였으나 審議委員들이 區廳長의 들러리만 서는 허수아비의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함.

3) 審査結果

재석위원 8名중 찬성 2名 반대 6名으로 홍제3동 279-40 구인원의 71인이 제출한 “注油所許可에 관한 請願”은 本會議에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음.

都市建設委員會

1994年 5月 23日~5月 24日까지 第25回 臨時會 休會期間中 開催된 都市建設委員會는 소관국별 業務報告 및 水道事業所 및 配水池 名稱變更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第25回 臨時會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業務報告 聽取

◆ 都市建設委員會所管局別業務報告聽取 ◆

1994年 5月 23日~5月 24日까지 都市建設委員會所管 局別 業務報告를 聽取하여 '94年度 當面 현안사업 및 特殊事業計劃을 把握하고 委員들의 質疑를 통해서 區民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議政活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1) 1994. 5. 23 : 都市整備局 소관 사항 업무
- 2) 1994. 5. 24 : 建設局 소관사항 업무

나. 建 議 案

◆ 水道事業所및配水池名稱變更에 관한建議案 ◆

1) 提 案

이 建議案은 1994年 4月 3日 具滋億의원의 10人이 발의한 안으로 第2次 都市建設委員會('94. 5. 24)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弘濟洞 山 1-173號에 있는 水道事業所 명칭이 恩平 水道事業所라고 되어 있어서 業務 管轄 地域인 西恩水道事業所로 變更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弘恩洞 山 9-1에 신설되는 配水池 名稱을 기 흥은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지명이 백련산이기에 백련배수지로 호칭

나) 主要骨子

- 恩平水道事業所라는 명칭을 西恩水道事業所로 변경
- 西大門區 弘恩洞 山 9-1에 신설되는 배수지는 백련배수지로 호칭

2) 審査內容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은평수도사업소와 연희배수지의 명칭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서대문구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으로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討論要旨

恩平水道事業所 名稱은 西恩水道事業所로 그리고 홍은동에 신설되는 配水池를 白蓮配水池로 名稱을 變更하여 주민들의 혼선은 없애자는 건의

○ 少數意見

명칭은 관계 없고 水道事業所를 西大門區廳 傘下로 移管시키는 문제 건의

3) 審査結果

재석議員 9名중 6名の 찬성으로 具滋億議員의 10人이 제출한 水道事業所 및 配水池 名稱 變更 건의안이 채택되었음.

4) 採擇된 建議文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1-173호에 있는 水道事業所의 명칭이 恩平水道事業所라고 되어 있어서 서대문구 주민들의 이용에 혼선이 일고 있기 때문에 業務 管轄地域인 西大門區, 恩平區를 통합해서 부를 수 있는 西大門恩平水道事業所 즉 西恩水道事業所로 變更하여 주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9-1에 신설되는 配水池의 名稱이 홍은동에 설치되는데도 延禧配水池로 되어 있어서 弘恩配水池로 변경코져 검토한바 기 弘恩配水池가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지명이 백련산이기에 白蓮配水池로 呼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26回 臨時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第 26 回 臨 時 會

- 會 期：1994年 6月 20日 ~ 6月 30日 (11日間)
- 集會要求者：崔容完 議員의 9人

概 況

第26回 臨時會議은 1일간에 걸친 區政質問과 區廳長이 제출한 1994年度 第1回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의 3件의 案件을 처리하였으며 臨時會 休會中 總務委員會에서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의 2件을 審査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 '94年 6月 20日 第1次 本會議에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尹 益 洙 議員, 金 廷 炫 議員, 丁 和 鎮 議員, 鄭 日 出 議員,
朴 正 來 議員, 金 平 洛 議員, 朴 老 鉉 議員

나. 區政 質問

- '94. 6. 21일 2次 本會議에서 全聖章議員의 16名의 議員이 117件을 질문하였다.

一 質問 및 答辯 方法

□ 頭：106件
書 面：11件

1) 議員別 提出 件數

提出順位	議員名	件 數	備 考
1	李文馥	1	구 두
2	崔容完	5	〃
3	全聖章	8	구두서면
4	尹益洙	5	〃
5	趙敏行	1	구 두
6	李鳳洙	6	〃
7	郭載萬	3	〃
8	朴正來	6	〃
9	金平洛	23	〃

提出順位	議員名	件 數	備 考
10	全在煥	4	구 두
11	金源珠	4	구두서면
12	鄭炳八	15	구 두
13	鄭田村	2	〃
14	鄭赫柱	11	〃
15	鄭日出	10	〃
16	鄭日洙	9	〃
17	金廷炫	4	서 면

2) 部署別 質問 件數

計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都 市 整備局	建設局	保健所	文 化 公報室	市 民 奉仕室	其他
117	25	4	25	36	17	1	4	4	1

[質問 및 答辯要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李文馥 의원〉</p> <p>○ 自治區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問題 點에 대한 改善對策은?</p>	<p>○ 우리區는 財政與件이 不足한 반면 財 政需要는 過多하여 諸般與件이 脆弱 한 실정으로</p> <p>— 國家와 地方, 市稅와 區稅간의 영역</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을 조정하는 것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담배消費稅를 自治區稅로 財產稅를 市稅로 전환하면 각 區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p> <p>－ 西大門區 發展計劃에 대하여 區生活圈 基本계획을 再整備하고 자립과 경상비절약을 위하여 組織과 人力 行政裝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經營診斷을 도입하겠음.</p>
<p>〈鄭田村 의원〉</p> <p>○ 창천동 100번지 일대 風致地區 해제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p>	<p>○ 창천동 100번지에 대한 사안은 해제하는 방침으로 정해져 있으며 區都市 基本計劃이 심의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쯤 정리될 수 있을 것임.</p>
<p>○ 未成年者 주류제공에 따른 飲食店 營業者에 대한 行政處分에 관하여</p>	<p>○ 食品衛生法施行規則第43條에 음주제한연령은 20歲이나 처벌위주 및 過剩 團束을 지양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을 줄여나가겠음.</p>
<p>○ 食品衛生法 第42條의 未成年者年齡 18歲에 대하여</p>	<p>○ 法規定을 改正하는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현재 保社部에 改正建議 중에 있음.</p>
<p>〈全聖章 의원〉</p> <p>○ 各洞事務所 業務用 자전거 活用不振에 대하여?</p>	<p>○ 使用回數 및 활용빈도가 부진한 洞은 區에서 回收하여 필요한 部署로 管理 轉換토록할 것임.</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區에 신설된 係 組織의 業務效率性은?</p>	<p>○ '93. 7. 23자 自治區 組織管理改選指針에 따라 係 단위 설치 및 조정권한이 定員範圍內에서 區廳長에게 부여됨에 따라 '93. 12. 1자로 10개 係를 統·廢合하고 5개 係를 신설한바 있으며</p> <p>－ 文化公報室 施設運營係, 監査室 民願管理係, 總務課廳舍管理係, 稅務2課 稅外收入係, 清掃課 再活用係는 운용면이나 업무성질상 효율성을 높였다고 판단됨.</p>
<p>○ 家政福祉課의 업무량이나 많은 예산을 15名의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p>	<p>○ 家庭福祉課의 예산 總 22億원은 주로 民間移轉, 自治團體移轉, 補償金등 社會福祉施設運營費 補助金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집행은 연간계획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이고 福祉施設의 新·增築등 영선업무도 總務課 廳舍管理係에서 처리하고 있음.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p> <p>－ 5, 6월과 연도말에 한시적인 업무폭 증으로 定員을 증원하는 것은 인력 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무리가 있으므로 課單位의 인력을 풀로 운영하여 인력부족을 해소 하고자 하며</p> <p>－ 다만 많은 현장업무에 비하여 여직원인 많은 편으로 行事準備등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적절한 인력운영으로 개선할 것임.</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路上駐車場 폐쇄에 대하여? - 대현동 33-136번지 이대정문에서 신촌역 사이 路上駐車場의 관리상 문제점?</p>	<p>○ 대현동 주민과 주변상인의 요구에 의하여 노점상을 정리하고 住民駐車를 위하여 有料駐車場을 設置하여 2년간 운영중에 있으며 民願事項은 없음.</p>
<p>○ 이대입구에서 정문까지 잡상인으로 인한 交通駐車 보행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은?</p>	<p>○ 본 도로는 一方通行 도로이고 인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으나 交通量 增加에 따라 車輛停滯 현상이 심해지면 적절히 조치할 것임.</p>
<p>○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계획은?</p>	<p>○ '95. 1월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94. 7. 1부터 북아현3동, 창전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p> <p>- 종량제 시범실시 主要推進事項으로 는 弘報 案内文 12,000枚, 프랑카드 10개소, 住民自律監視委員 197名 위촉, 규격봉투 판매소 26個所 지정, 마스크홍보(3회)를 하였으며</p> <p>- 弘報 案内文 24,000枚, 統·班長教育 및 住民自律監視委員懇談會, 班常會 報掲載, 地域新聞, 구청직원 통담당제를 지정하여 住民啓導를 실시하여 7. 1 시범실시 추진업무에 착오없도록 하겠음.</p>
<p>○ 豫算節減 측면에서 洞事務所에 都市 가스施設 設置計劃은 없는지?</p>	<p>○ 현재 洞事務所의 난방용 연료는 등유이며 숙직실은 심야전력을, 식당취사 연료는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도시가스 시설을 設置 供給하는 것은 가스관 埋設 및 諸般施設 공사에 따른 豫算에 대한 經濟性으로 보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나 향후 洞廳舍 新築이나 도시가스 供給이 가능한 洞事務所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p>									
<p>○ 洞事務所 職員의 급량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p>	<p>○ 支給 現況</p> <table border="1" data-bbox="740 801 1214 1081"> <thead> <tr> <th>區 分</th> <th>支給額</th> <th>支給基準</th> </tr> </thead> <tbody> <tr> <td>區廳</td> <td>월 20,000</td> <td>월 4일분 (5,000×4일)</td> </tr> <tr> <td>洞</td> <td>월 50,000</td> <td>월 10일분 (5,000×10일)</td> </tr> </tbody> </table> <p>상기내역은 豫算編成 기준에 의한 것이며 區의 財政與件을 감안할 때 引上支給은 불가함.</p>	區 分	支給額	支給基準	區廳	월 20,000	월 4일분 (5,000×4일)	洞	월 50,000	월 10일분 (5,000×10일)
區 分	支給額	支給基準								
區廳	월 20,000	월 4일분 (5,000×4일)								
洞	월 50,000	월 10일분 (5,000×10일)								
<p>○ 風致地區에 대한 建蔽率을 현행 30%에서 40%을 완화하는 區條例 改正問題에 대하여</p>	<p>○ 風致地區안의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建設部의 首都圈 整備審議委員會에 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 審議를 요청한바 '91. 12. 31일 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결과 풍치지구 지정목적과 수도권정비계획의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바 있으며</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境界區域의 적용기준 차이에 따른 衡平性을 고려 부분적으로는 緩和調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 管内 企業體에 대한 都·農間 姉妹結緣 실적 여부에 대하여?	○ 都·農 姉妹結緣 실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洞 行政機關이 複數結緣을 확대하여 42個 기관이 結緣되었으며 － 直去來 實績은 32回 204,104千원임. － 우리區 管内 127個 企業體가 있으나 소규모로써 姉妹結緣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管内 삼보컴퓨터 서울사무소, 국민리스(주), 임광토건(주)에 姉妹結緣을 要請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언질 이외에 아직 姉妹結緣 事例가 없는 실정임. 									
<p>〈尹益洙 의원〉</p> <p>○ 洞事務所 小規模 地域便益 사업의 執行 實績 및 事業推進 不振事由는?</p>	<p>○ '94년도 豫算은 總 8億 8千萬원이며 洞別로는 4千萬원임.</p> <p>'94. 6. 10 현재 전체 豫算의 41.6%인 366,700千원이 洞으로 교부되었으며, 이중 69.5%인 255,015千원이 집행되었음.</p> <p>－ 事業 分野別 執行內譯 (單位：千원)</p> <table border="1" data-bbox="690 1541 1199 1702"> <thead> <tr> <th>事業分野別</th> <th>件 數</th> <th>執行 內譯</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800</td> <td>255,015</td> </tr> <tr> <td>도 로</td> <td>14</td> <td>41,300</td> </tr> </tbody> </table>	事業分野別	件 數	執行 內譯	계	1,800	255,015	도 로	14	41,300
事業分野別	件 數	執行 內譯								
계	1,800	255,015								
도 로	14	41,300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table border="1" data-bbox="738 301 1245 730"> <thead> <tr> <th>事業分野別</th> <th>件 數</th> <th>執行 內譯</th> </tr> </thead> <tbody> <tr> <td>하 수</td> <td>12</td> <td>40,053</td> </tr> <tr> <td>청 소</td> <td>10</td> <td>28,416</td> </tr> <tr> <td>공 원</td> <td>4</td> <td>14,460</td> </tr> <tr> <td>보안등</td> <td>1,709</td> <td>37,634</td> </tr> <tr> <td>환경정비</td> <td>8</td> <td>20,234</td> </tr> <tr> <td>재해예방</td> <td>9</td> <td>24,877</td> </tr> <tr> <td>기 타</td> <td>34</td> <td>48,041</td> </tr> </tbody> </table> <p data-bbox="742 755 1255 884">- 93년도의 경우 豫算額 880,000千원 중 90.3%인 795,162千원이 집행되었다.</p> <p data-bbox="742 909 1255 1193">- 특히 금년에는 洞事務所 小規模 事業費 執行에 따른 절차를 簡素化하고 早期執行이 가능하도록 土木·下水分野에 한하여 年間 單價 契約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음.</p>	事業分野別	件 數	執行 內譯	하 수	12	40,053	청 소	10	28,416	공 원	4	14,460	보안등	1,709	37,634	환경정비	8	20,234	재해예방	9	24,877	기 타	34	48,041
事業分野別	件 數	執行 內譯																							
하 수	12	40,053																							
청 소	10	28,416																							
공 원	4	14,460																							
보안등	1,709	37,634																							
환경정비	8	20,234																							
재해예방	9	24,877																							
기 타	34	48,041																							
○ 西大門區 都市基本計劃 확정에 따른 자투리 땅을 區民에게 불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은?	○ 都市計劃은 지적승인이 되고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賣却이 가능하며 管内 자투리땅이 있을 경우 찾아내고 그것을 검색하여 區民에게 불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公課金業務 廢止에 관하여?	○ 政府方案은 전기요금과 T.V 시청료를 함께 묶는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확실한 결정은 없으며 다만 어떠한 결정이 되더라도 그 業務에 從事하는 職員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없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區廳局·課의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區民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망	○ 횡적으로 局과局 課와課 間의 業務協調가 미흡한 편이나 앞으로 철저히 협조적인 體制를 確立해서 地域發展에 기여 하도록 하겠음.
○ 각 동 노인정 관리에 대하여?	○ 노인정의 管理 및 각종 公課金 報酬는 洞長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豫算을 執行하고 管理토록 하고 있으나 區立노인정에 대하여는 指導監督을 철저히 하여 施設物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趙敏行 의원〉 ○ 駐車違反 過怠料 徵收實態와 改善方案은?	○ 團束이 폭주되고 電算處理 능력이 떨어져 團束으로부터 고지서 발급시까지 50일 이상 걸리는 전산과정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납세의 식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음.
〈李鳳洙 의원〉 ○ 住宅行政과 관련된 豫算執行은?	○ 關聯 豫算別로 區分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豫算은 不良住宅再開發事業, 住居環境改善事業, 市民아파트維持管理費이며 － 民間資本으로는 再建築 民營아파트事業을 － 自治區豫算은 住宅業務 分野에 종사하는 區公務員의 人件費, 수용비등 부대비용임.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再開發法 등에 의한 組合業務 監督時 實務責任에 대하여?</p>	<p>○ 再開發 組合業務에 관한 監督責任은 1차적으로 당해 組合監査이고 2차적으로 監督官廳의 擔當公務員임.</p> <p>— 우리區는 當該組合監査로 하여금 연 2회 自體監査 실시하여 보고토록 하였고</p> <p>— '94. 6. 3일 組合關聯 不當事例, 臨時總會 召集要求등 業務指示를 통한 監査機能 活性化 조치</p>												
<p>○ 無許可 建築物 管理實態 處理事項</p>	<p>○ 現 況</p> <table border="1" data-bbox="734 840 1227 946"> <thead> <tr> <th>計</th> <th>既存無許可</th> <th>新發生</th> </tr> </thead> <tbody> <tr> <td>4,938동</td> <td>4,653동</td> <td>285동</td> </tr> </tbody> </table> <p>○ 措置事項</p> <table border="1" data-bbox="734 1052 1227 1700"> <thead> <tr> <th>區 分</th> <th>措置事項</th> </tr> </thead> <tbody> <tr> <td>기존무허가 (4,653동)</td> <td>○ 再開發, 住居環境改善, 都市計劃 및 新築등에 의하여 점차적인 정비</td> </tr> <tr> <td>신발생 (285동)</td> <td>○ 93년 1차 항측 및 전년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자진철거 계고('93.12.6) — 2단계 : 이행강제 금부과예고('94.1.10) — 3단계 : 이행강제 금부과('94.1.11) — 4단계 : 강제정비 </td> </tr> </tbody> </table>	計	既存無許可	新發生	4,938동	4,653동	285동	區 分	措置事項	기존무허가 (4,653동)	○ 再開發, 住居環境改善, 都市計劃 및 新築등에 의하여 점차적인 정비	신발생 (285동)	○ 93년 1차 항측 및 전년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자진철거 계고('93.12.6) — 2단계 : 이행강제 금부과예고('94.1.10) — 3단계 : 이행강제 금부과('94.1.11) — 4단계 : 강제정비
計	既存無許可	新發生											
4,938동	4,653동	285동											
區 分	措置事項												
기존무허가 (4,653동)	○ 再開發, 住居環境改善, 都市計劃 및 新築등에 의하여 점차적인 정비												
신발생 (285동)	○ 93년 1차 항측 및 전년도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자진철거 계고('93.12.6) — 2단계 : 이행강제 금부과예고('94.1.10) — 3단계 : 이행강제 금부과('94.1.11) — 4단계 : 강제정비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96 311 865 359">區 分</th> <th data-bbox="865 311 1188 359">措 置 事 項</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96 359 865 780"></td> <td data-bbox="865 359 1188 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事前豫防 活動 強化 － 機動合同巡察 整備 班 運營 － 상설점검반(동) 運 營 － 無許可 建物申告 센타 運營 － 住民自律 監視體制 運營 </td> </tr> </tbody> </table>	區 分	措 置 事 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事前豫防 活動 強化 － 機動合同巡察 整備 班 運營 － 상설점검반(동) 運 營 － 無許可 建物申告 센타 運營 － 住民自律 監視體制 運營
區 分	措 置 事 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事前豫防 活動 強化 － 機動合同巡察 整備 班 運營 － 상설점검반(동) 運 營 － 無許可 建物申告 센타 運營 － 住民自律 監視體制 運營 				
○ 綠地管理實態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 573ha, 가로수 7,167주, 녹지대 20개소 53,080㎡에 대하여 － 職員別 責任擔當 區域을 지정 山林 保護, 違法行爲등을 團束하고 있으며 － 산불豫防 및 山林病害蟲 防災을 위 한 對策本部를 設置運營하고 있음. 				
○ 현저동 산 5번지 일대에 賦課된 辨償 金에 대한 종합적인 解決對策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有財産法 第51條 및 豫算會計法 第 96條에 의거 당지역에 부과된 5年間の 변상금은 191,252千원이 부과되었음. － 納付期間이 경과되어 연 15%의 연 체비율이 적용 再 告知된 未納者는 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 규정에 준용되며 － '94. 4. 12일자 國有財産法 施行令 改正이후 부과된 변상금은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同法施行令 第56條 2項에 의거 50만원을 초과하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는 경우 연 8%의 이자를 붙여 3年間 분할납부 할 수 있음.</p>
<p>○ 기림사 民願事項의 處理內容 및 結果는?</p>	<p>○ 기림사 2층 후편 약 15㎡의 주방과 석불유리관 10㎡이 '93. 12. 3 항측조사에 의해 조사 되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4. 13 強制 整備 - '94. 5. 20 再整備 - '94. 6. 2 기림사 주지 김정배외 93명의 強制整備 유보호소 - '94. 6. 4 대한불교조계종의 請願書 提出 - '94. 6. 8 無斷施設物 자체시정요구 - '94. 6. 16 천막 쇠파이프 強制整備 <p>○ 석탑과 석불의 파손이 우려되어 자체 시정을 계속 종용하고 있음.</p>
<p>〈郭載滿 의원〉</p> <p>○ 管内 再開發 아파트 工事現場에 擔當 公務員이 配置되어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一般公務員의 監督으로 不實工事を 豫防할 수 있는지? - 不實工사로 불상사 발생시의 對策은? 	<p>○ 建築行政 業務刷新의 일환으로 각종 검사(중간검사등)를 工事 監理者가 대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使用檢査도 민간에게 위임하는 등 責任施工 및 監理制度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實工事 防止를 위하여 組合과 區廳監理者, 施工者 모두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 또한 品質實驗을 위해 현장마다 대행기관인 建設資材試驗所에 의뢰하여 適正性 確認과 不實工事を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있다.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區廳 都市整備局長의 직렬을 기술직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p>	<p>○ 현재 각區廳 都市整備局長은 직제정원상 직렬은 行政職 또는 建築職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직제상의 정원이나 운영은 自治團體長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p> <p>－ 우리區의 재개발 시민아파트 住居環境改善事業이 많은점을 감안하여 운영정원을 建築職으로 지정토록 본청에 건의하겠음.</p>																																														
<p>〈朴正來 의원〉</p> <p>○ '94. 3. 28 현재 稅外收入徵收 실적과 체납 및 불납결손 사항은?</p>	<p>○ '94. 2. 28일 현재</p> <p style="text-align: right;">(單位：千원)</p> <table border="1" data-bbox="706 917 1214 1130"> <thead> <tr> <th colspan="2">調 整</th> <th colspan="2">徵 收</th> <th rowspan="2">徵收率</th> </tr> <tr> <th>件 數</th> <th>金 額</th> <th>件 數</th> <th>金 額</th> </tr> </thead> <tbody> <tr> <td>987,436</td> <td>32,196</td> <td>712,871</td> <td>31,227</td> <td>97</td> </tr> <tr> <td>(10,045)</td> <td>(59)</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는 결손처분：과년도 분</p>	調 整		徵 收		徵收率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987,436	32,196	712,871	31,227	97	(10,045)	(59)			%																											
調 整		徵 收		徵收率																																											
件 數	金 額	件 數	金 額																																												
987,436	32,196	712,871	31,227	97																																											
(10,045)	(59)			%																																											
<p>○ 93년도 稅金徵收實績(區稅)과 不納缺損處理에 대해서</p>	<p style="text-align: right;">(單位：百萬元)</p> <table border="1" data-bbox="706 1226 1214 1671"> <thead> <tr> <th rowspan="2">區 分</th> <th colspan="2">調 整</th> <th colspan="2">徵 收</th> <th rowspan="2">徵收率</th> </tr> <tr> <th>件數</th> <th>金額</th> <th>件數</th> <th>金額</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227,227 (3,377)</td> <td>13,776 (34)</td> <td>178,251</td> <td>12,638</td> <td>92</td> </tr> <tr> <td>재 산 세</td> <td>60,161</td> <td>4,030</td> <td>57,974</td> <td>3,922</td> <td>97.3</td> </tr> <tr> <td>종합토지세</td> <td>53,605</td> <td>6,548</td> <td>50,568</td> <td>6,382</td> <td>97.5</td> </tr> <tr> <td>면허세</td> <td>72,583</td> <td>1,689</td> <td>64,657</td> <td>1,474</td> <td>87.3</td> </tr> <tr> <td>사업소세</td> <td>1,264</td> <td>724</td> <td>1,262</td> <td>723</td> <td>99.8</td> </tr> <tr> <td>과 년 도</td> <td>39,614 (3,377)</td> <td>785 (34)</td> <td>3,790</td> <td>137</td> <td>18.2</td> </tr> </tbody> </table>	區 分	調 整		徵 收		徵收率	件數	金額	件數	金額	합 계	227,227 (3,377)	13,776 (34)	178,251	12,638	92	재 산 세	60,161	4,030	57,974	3,922	97.3	종합토지세	53,605	6,548	50,568	6,382	97.5	면허세	72,583	1,689	64,657	1,474	87.3	사업소세	1,264	724	1,262	723	99.8	과 년 도	39,614 (3,377)	785 (34)	3,790	137	18.2
區 分	調 整		徵 收		徵收率																																										
	件數	金額	件數	金額																																											
합 계	227,227 (3,377)	13,776 (34)	178,251	12,638	92																																										
재 산 세	60,161	4,030	57,974	3,922	97.3																																										
종합토지세	53,605	6,548	50,568	6,382	97.5																																										
면허세	72,583	1,689	64,657	1,474	87.3																																										
사업소세	1,264	724	1,262	723	99.8																																										
과 년 도	39,614 (3,377)	785 (34)	3,790	137	18.2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都市整備局 豫算執行現況은?	<p style="text-align: right;">(單位：百萬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會計別</th> <th style="width: 15%;">豫算額</th> <th style="width: 15%;">支出額</th> <th style="width: 15%;">事 故 移越額</th> <th style="width: 15%;">不用額</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867</td> <td style="text-align: right;">861</td> <td style="text-align: right;">149</td> <td style="text-align: right;">857</td> </tr> <tr> <td>일반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969</td> <td style="text-align: right;">515</td> <td style="text-align: right;">120</td> <td style="text-align: right;">334</td> </tr> <tr> <td>특별회계</td> <td style="text-align: right;">898</td> <td style="text-align: right;">346</td> <td style="text-align: right;">29</td> <td style="text-align: right;">523</td> </tr> </tbody> </table>	會計別	豫算額	支出額	事 故 移越額	不用額	총 계	1,867	861	149	857	일반회계	969	515	120	334	특별회계	898	346	29	523										
會計別	豫算額	支出額	事 故 移越額	不用額																											
총 계	1,867	861	149	857																											
일반회계	969	515	120	334																											
특별회계	898	346	29	523																											
○ 建設局 事故移越 不容額內譯	<p>○ 事故 移越</p> <p style="text-align: right;">(單位：千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課 名</th> <th style="width: 30%;">金 額</th> <th style="width: 40%;">內 譯</th> </tr> </thead> <tbody> <tr> <td>건설관리과</td> <td></td> <td></td> </tr> <tr> <td>토 목 과</td> <td style="text-align: right;">1,364,391</td> <td>지급사유발생</td> </tr> <tr> <td>하 수 과</td> <td></td> <td></td> </tr> <tr> <td>공원녹지과</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不用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課 名</th> <th style="width: 30%;">金 額</th> <th style="width: 40%;">內 譯</th> </tr> </thead> <tbody> <tr> <td>건설관리과</td> <td style="text-align: right;">348,671</td> <td>미불보상및지급 사유미발생</td> </tr> <tr> <td>토 목 과</td> <td style="text-align: right;">606,160</td> <td>지급사유미발생</td> </tr> <tr> <td>하 수 과</td> <td style="text-align: right;">731,61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공원녹지과</td> <td style="text-align: right;">167,604</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課 名	金 額	內 譯	건설관리과			토 목 과	1,364,391	지급사유발생	하 수 과			공원녹지과			課 名	金 額	內 譯	건설관리과	348,671	미불보상및지급 사유미발생	토 목 과	606,160	지급사유미발생	하 수 과	731,615	"	공원녹지과	167,604	"
課 名	金 額	內 譯																													
건설관리과																															
토 목 과	1,364,391	지급사유발생																													
하 수 과																															
공원녹지과																															
課 名	金 額	內 譯																													
건설관리과	348,671	미불보상및지급 사유미발생																													
토 목 과	606,160	지급사유미발생																													
하 수 과	731,615	"																													
공원녹지과	167,604	"																													
○ 生活保護對象者 福祉事業 및 自活能力提高에 대하여?	<p>○ 生活保護 對象者 福祉事業 (居宅保護者)</p> <p>┌ 대상 : 416세대 475명</p> <p>└ 지원내용</p> <p>• 의료보호 진료비 전액</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 부식비 연료비 • 중학생, 실업고교생 학비전액 • 장제비 : 1구 30만원 • 영구임대아파트입주, 직업훈련 취업알선, 한가족결연사업 • 전화무료가설, 기본료·통화료면제 (4,500원 초과분 본인부담) • 생일위문 : 1인 2만원 (自活保護者) □ 대상 : 586세대 796명 □ 지원내용 • 긴급구호 : 월25일 이내, 1인 1일 쌀 400g • 의료보호 : 외래 - 본인 1000원부담 입원 - 20%본인부담 (10만원초과시 대불) • 교육보호 : 중, 실업고생 학비전액 • 생업자금융자 : 1세대당 700만원이내 •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로사업 																						
<p>〈朴正來 의원〉</p> <p>○ 西大門區 防疫 및 衛生點檢에 대하여</p>	<p>○ 防疫人力 및 裝備現況</p> <table border="1" data-bbox="687 1402 1195 1479"> <thead> <tr> <th>계</th> <th>의사</th> <th>검사요원</th> <th>간호사</th> <th>방역</th> <th>운전수</th> <th>행정요원</th> </tr> </thead> <tbody> <tr> <td>61</td> <td>4</td> <td>4</td> <td>21</td> <td>2</td> <td>6</td> <td>24</td> </tr> </tbody> </table> <p>○ 非常防疫備蓄藥品(살충제)</p> <p style="text-align: right;">(單位 : ℓ)</p> <table border="1" data-bbox="687 1624 1195 1702"> <thead> <tr> <th>屋內用</th> <th>屋外用</th> <th>煙幕用</th> <th>噴霧用</th> </tr> </thead> <tbody> <tr> <td>200</td> <td>210</td> <td>122</td> <td>123</td> </tr> </tbody> </table>	계	의사	검사요원	간호사	방역	운전수	행정요원	61	4	4	21	2	6	24	屋內用	屋外用	煙幕用	噴霧用	200	210	122	123
계	의사	검사요원	간호사	방역	운전수	행정요원																	
61	4	4	21	2	6	24																	
屋內用	屋外用	煙幕用	噴霧用																				
200	210	122	123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방역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5. 1~9. 30 └ 근무시간 : 평일 20:00까지 <li style="padding-left: 40px;">토(일)요일 : 16:00까지 ○ 방역기동반 근무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지역 입구관리추적조사 11회/66명 └ 격리치료 의뢰 : 1건 └ 방역소독 : 취약지 5개동 주 1회 ○ 건강진단 수첩 발급 : 6,917명
<p>〈金平洛 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積換場 管理의 改善 方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積換場은 모두 29개소(固定式 10개소, 移動式 19개소)가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固定式은 빠른 시일내에 폐쇄토록 하겠고 移動式도 3개만 운영토록하며 이와 관련한 청소업무개선에 역점을 두겠음. └ 청소시설의 現代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기구매(3대) 예정 • 積換場施設 補修 • 小型車輛(14대) 減縮 └ 環境美化員 處遇改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休憩室 設置 • 煖房 및 衛生施設 補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管内 보안등은 총 9,551개소이며, 신속한 補修管理를 위하여 補修業體를 指定運營하고 있으나 區·洞行政의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총력을 다하여 철저한 指導 監督과 民願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 또한 防犯員, 清掃員, 우유配達員 등을 이용한 移動 通信員制度를 이용하여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음.</p>
<p>○ 마을버스운영에 대하여?</p>	<p>○ 노선버스조정 審議委員會의 協議結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交通施設을 補完하는 문제 - 학생통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駐車區劃線을 없앤다든지 施設을 補完하는 등 신중하게 대처하겠음.
<p>○ 停車場 管理에 대하여?</p>	<p>○ 管内 停車場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營駐車 55개소 — 路上停車場 19개소 — 附設停車場 23개소에 3,591대의 駐車施設이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空地가 확보되면은 駐車施設을 늘리도록 하겠음. - 특히 홍제천변 整備와 區廳 옆의 協同聯立 撤去敷地에 區廳民願人 駐車施設을 확충하여 行政奉仕에 노력하겠음.
<p>○ 홍은3동 아파트 建立에 따른 山林毀損事由와 對策은?</p>	<p>○ 홍은동 산26번지 143호에 홍은 두산 조합아파트를 建立하기 위해 현재 25m 都市計劃道路와 연희배수지 8m 進入道路의 개설을 위한 대지 조성공사로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7. 14일 西大門區 立地 및 土地 審議 委員會의 審議結果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 都市計劃 道路部分과 연희 배수지 進入道路에 저촉되는 토지 4, 185㎡를 기부채납토록 하는 조건부로 垡地造成 공사를 하도록 통과 되었으며 - 山林毀損에 따른 措置로 변상금(6,649천원), 대체조림비(4,762천원), 산림전용부담비(773,068천원), 지장수목 대체식수(잣나무 1,505주) 토록 조치함.
<p>○ 洞事務所 소규모 지역 便益事業의 집행실적 및 事業推進 부진사유?</p>	<p>○ 94년도 事業件當 500만원 미만의 少額事業을 발굴 推進中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도 策定豫算 8억 8천만원이며 '94. 6. 10 현재 1,800건 255,015천원(69.5%)이 執行되었으며 - 執行節次를 簡素化하여 土木·下水分野에 한하여 연간 單價契約을 締結보다 효율적인 執行이 되도록 하여 住民不偏事項의 最小화에 노력하겠음.
<p>○ 북가좌 노인정 設計變更에 관하여</p>	<p>○ 設計變更 횟수 : 1회</p> <p>○ 着工豫定日 : 94. 7월 豫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未着工 事由 : 設計費 低價로 契約者選定과 125-7호 세입자의 이주문제로 지연되었음.
<p>○ 유아원 어린이 급식비 補助金 支給內譯?</p>	<p>○ 保育施設 간식비 補助金 支給內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3세 미만) : 1인 1일 800원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立 보유시설 간식비 支給內譯 • 15個所 6個月 25,104千원
<p>○ 도시가스 공사감독에 대하여?</p>	<p>○ 서대문구 관내 도시가스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p>○ 지도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연료과) : 가스사업자 허가 및 지도감독, 도시가스공급지역 결정. - 구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과 : 도로굴착 허가 및 적법굴착여부, 복구상태 감독 - 산업과 : 공사계획 승인지역의 매설높이, 공사현장감독(시공자의 기술기준, 현장관리)
<p>○ 道路 開設工事 管理 監督에 대하여?</p>	<p>○ 工事區間內 電柱, 통신주둥 지장물은 建物の 보상과 철거 후 有關機關에 요청하여 이설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係機關間 협의 관계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나 - 지장물 철거후 移設場所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이설요청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p>○ 道路管理 보수에 대하여?</p>	<p>○ 서울시 道路施設物 維持管理 指針에 의거 管理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직 순찰, 주2회 노선별 담당자의 定期巡察과 市民不便事項 접수로 보수사항을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路 소파보수공사(年間 單價契約) 業體로 즉시 보수 또는 土木課 기동 운영반을 運營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下水道 工事管理 監督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공사에 있어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바닥과 벽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마감정리를 위해 下水整理가 잘 되도록 하수관 사이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하수소통의 원활과 찌꺼기 침전방지와 퇴적토가 쌓이지 않도록 施工監督에 철저를 기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測量監督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籍法 第25條 第28條에 의거 非營利法人에게 業務代行과 監督事項을 규정하고 있으며 - 地籍測量 전반에 대한 業務改善과 신속·공정·정확한 對民業務 執行을 위한 教育과 - 測量 성과제시, 이해관계인 입회와 관련한 民願이 발생치 않도록 지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會館 管理 運營에 관하여? - 駐車場 擴充 方案 - 弘報 方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管理 運營 면에서 - 進入路 확장으로 원활한 交通疏通增進에 기여하고 配水池 工事 및 백련교에서 현대교통간의 道路 開設후 駐車空間을 확보할 예정임. - 문화회관의 施設과 대관시설에 대하여 중앙지, 地域新聞 및 有線放送을 통해 적극홍보함과 각종 행사, 프로그램개최홍보책자를 發刊하여 弘報하도록 하겠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시민아파트 點檢 및 보수사항에 관하여?</p>	<p>○ 관내 시민아파트는 5個地區 64個棟 2,811號 이며</p> <p>－ 安全 點檢 運營</p> <table border="1" data-bbox="706 479 1218 738"> <thead> <tr> <th>주관부서</th> <th>회 수</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시건축사회</td> <td>연2회</td> <td>총적출 226건</td> </tr> <tr> <td>구안전점검반</td> <td>월2회</td> <td>조치완료 175건</td> </tr> <tr> <td>간부 순찰</td> <td>월1회</td> <td>공사중 48건</td> </tr> <tr> <td>동</td> <td>주1회</td> <td>설계검토 3건</td> </tr> </tbody> </table>	주관부서	회 수	비 고	시건축사회	연2회	총적출 226건	구안전점검반	월2회	조치완료 175건	간부 순찰	월1회	공사중 48건	동	주1회	설계검토 3건
주관부서	회 수	비 고														
시건축사회	연2회	총적출 226건														
구안전점검반	월2회	조치완료 175건														
간부 순찰	월1회	공사중 48건														
동	주1회	설계검토 3건														
<p>○ 再建築 및 再開發 民願接受와 處理內容('94. 1. 1~'94. 5. 31)</p>	<p>○ 駐車團束 強化로 裏面道路의 駐車量이 增加 했고</p> <p>－ '94. 5月 裏面道路에도 8,945 區劃의 駐車區劃線을 設置 하였으며</p> <p>－ 駐車啓導 要員 110名을 위촉 혼잡지역을 集中啓導 하고 있음.</p> <p>○ 또한 소방차 進入訓練을 分期別로 실시 交通量 혼잡에 따른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음.</p>															
<p>○ 의료보험 징수에 대하여?</p>	<p>○ 지역의료보험 체납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706 1323 1218 1452"> <thead> <tr> <th>區 分</th> <th>件 數</th> <th>金 額</th> </tr> </thead> <tbody> <tr> <td>현년도</td> <td>55,352</td> <td>631,368천원</td> </tr> <tr> <td>과년도</td> <td>197,726</td> <td>1,904,595천원</td> </tr> </tbody> </table> <p>－ 각 동장에게 滯納者 實態調査를 하여 生活保護 對象者 査定기준으로 보호혜택을 받게 하거나 低所得世帶 保險料 減免規定에 의해 減免措置토록 하고 있음.</p>	區 分	件 數	金 額	현년도	55,352	631,368천원	과년도	197,726	1,904,595천원						
區 分	件 數	金 額														
현년도	55,352	631,368천원														
과년도	197,726	1,904,595천원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無許可 建物撤去에 대하여?</p>	<p>○ 신발생 無許可 撤去 現況</p> <table border="1" data-bbox="724 369 1232 475"> <thead> <tr> <th>개</th> <th>항</th> <th>측</th> <th>동적발</th> <th>진정등</th> </tr> </thead> <tbody> <tr> <td>285/241</td> <td>196/152</td> <td></td> <td>28/28</td> <td>61/6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 건축주 이행 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 : 41건 29,950천원 └ 징수 : 14건 8,352천원 -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責任行政 具現에 의거 撤去後 3개월 集中管理 • 事前豫防 活動 強化 	개	항	측	동적발	진정등	285/241	196/152		28/28	61/61
개	항	측	동적발	진정등							
285/241	196/152		28/28	61/61							
<p>〈全在煥 의원〉</p> <p>○ 천연동 소재 시민아파트는 91. 11월 경 推進委員會가 構成되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11. 2일 住居環境 改善事業을 추진하여 줄 것을 區廳에 요청하였으나 區廳은 貫入者를 줄여 달라는 답변이외 별다른 진행사항은 없는지? - 천연동, 현저동의 시민아파트 289가구는 住居環境改善事業을 위해 주민들은 이전케 해 놓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p>○ 현저·영천 시민아파트 13個棟은 시의 안전진단 결과 위험건물로 판명되어 '93. 5. 7~'94. 2. 20까지 289世帶 중 家屋主는 임시 이주용 임대 아파트에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마련하여 이주케하여 사고에 대비한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12. 2자로 撤去 豫定 13個棟 아파트 지역을 住居環境改善事業地區로 지정하고 - '94. 3. 10日 都市開發公社를 事業施行者로 選定한후 基本設計中이며 - 아파트 所有者와의 補償問題가 타결되는 대로 撤去후 빠른 시일내에 建築工事를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세입자를 줄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며</p> <p>－ '93. 10. 22자로 住宅供給에 관한 規則이 改正되었음을 '93. 9. 1자로 안내하였음.</p> <p>－ 都市開發公社와 아파트 所有主間의 補償問題가 원만히 해결되어 하루속히 주민이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行政支援을 다하겠음.</p>
<p>○ 獨立公園을 야외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p>	<p>○ 西大門 獨立公園은 서울시 條例 307號에 의거 서울特別市 公園綠地管理事業所가 설치됨에 따라 '94. 1. 13 관리 업무를 이관 하였음.</p> <p>－ 야외 예식장 이용여부는 사적공원으로써 유족회와 가능여부를 협의 중에 있음.</p>
<p>○ 독립문 건립관 獨立精神을 후세에 알리는 행사를 독립문 건립일에 연간 행사로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p>	<p>○ 서울 정도 600년의 해인 1994. 4. 4 독립문의 건립을 추진한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일제치하의 抗日民族運動을 전개한 송재 서재필 박사의 유해가 미국에서 봉환됨에 따라 우리區에서는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區民和合과 건전한 생활기풍 造成에 기여하여 우리민족의 독립정신을 후세에 알리고자 송재의 날을 制定하여 각종 紀念事業會를 행하고자 추진중이며 문공 86000-791('94. 5. 28)호</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로 이미 시정에 송재의 날 制定에 대해 質疑 의뢰를 하였고 質疑에 대한 회시가 접수되는 대로 송재의 날을 제정하여 각종 紀念事業을 행할 것임.</p> <p>그리고, 올해 5월 9일 송재의 날 기념사업의 하나로 송재상을 시상하였음.</p> <p>※ 송재의 날(안) : 4월 7일(독립신문 창간일 : 1896년 4월 7일)</p>
<p>○ 쓰레기 수거를 2일에 한번씩 할 수 있는 방안은?</p>	<p>○ 環境美化員 복무 지침상 쓰레기 收去日은 隔日制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지역에서 環境美化員의 공가 및 병가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며 - 고장차량 修理期間중 支援을 받아야 할 경우에 쓰레기 收去가 遲延되는 경우가 있으나 - 향후 車輛點檢, 미화원 敎育등을 통하여 隔日制 收去에 만전을 기하겠음.
<p>〈金源珠 의원〉</p> <p>○ 송재상 制定에 관하여?</p>	<p>○ 西大門區 區民大賞인 송재상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독립신문을 創刊하였고 西大門의 상징인 독립문을 건립하여 自由 民權意識을 고취</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시켰던 서재필박사의 숭고한 愛國精神을 기리고 그 뜻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區 行政과 地域社會의 發展은 물론 區民의 和合과 건전한 生活 氣風에 기여한 숨은 일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區民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은 물론 40만 區民의 귀감이 되도록 서재필 박사의 호를 따서 송재상이란 區民大賞을 制定 매년 區民의 날에 시상토록 하였음.</p> <p>송재상은 孝行, 地域奉仕, 住民和合등 3개 부문으로 정하고 우리區에 3년이 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個人 또는 團體로써 부문별 특별한 공로가 있어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주소지 관할동장을 통하여 區廳長에게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區議員 2名 각 職能團體代表 5名, 區幹部 3名등 10名으로 功績 審査委員會를 구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금년도 부문별 개인 3名 1개 단체를 시상한 바 있음. 향후 西大門區民 大賞인 송재상을 40萬 西大門區民의 자랑스런 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숨은 선행자를 발굴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 하겠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관하여?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앞)</p>	<p>○ 한양아파트 앞에서 회차금지를 요구하는 민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步·車道가 구별된 도로에서는 어린이보호區域 設定 대상이 아니며 - 安全施設(步·車道) 경계를 확실히 하는 가드레일, 건널목 방지턱설치, 편도의 駐車 區劃線 廢止등 어린이 보호에 施設 改善이 있어야 할 것임.
<p>○ 대중음식점 營業許可管理에 관하여?</p>	<p>○ 許可業所에 대한 免許稅 告知書 送達, 독촉, 체납 면허취소등의 行政管理와 각 업소에 충실한 지도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음.</p>
<p>○ 積換場 閉鎖에 대하여?</p>	<p>○ 管內에 2개의 쓰레기 代行業體가 있으며 收去比率은 40% 정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行政 改善을 위하여 清掃員減員時 充員치 아니하고, 代行比率을 높이겠음. - 移動式 積換場 19개는 빠르면 금년 중에 정리할 것이며 固定式 10개중에서 최종적으로 홍제천변에 남은 3개는 영구건물로 뚜껑과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 홍제천변 綜合用役設計가 나오면 그計劃에 따라 住民慰樂施設, 餘暇善用場所, 公共用 駐車場이 예정되어 장기적인 시설이 될 수 없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鄭炳八 의원〉</p> <p>○ 西大門區 21세기 區政企劃團 構成과 運營 現況에 대하여?</p>	<p>○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區政에 대한 研究와 公務員의 創意力을 啓發하여 미래 지향적 行정을 펼치고자 지난 3. 30 발족하였으며, 副區廳長을 團長으로 하여 都市行政研究班, 市民生活研究班, 都市設計研究班 3個班 30名으로 구성되었음.</p> <p>－ 運營實績은 研究班別 월 1회 所管 事項에 대한 討論과 主題發表 등을 하고 있다.</p> <p>主要課題는</p> <p>－ 國民年齡 高齡化에 따른 產業人力 確保 및 人口政策</p> <p>－ 쓰레기 처리의 劃期的인 改善方案</p> <p>－ 都市設計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p> <p>－ 滯納地方稅의 電算管理 方案</p> <p>○ 向後 推進計劃</p> <p>연도말 中間의 檢討, 討論 課題를 研究報告書로 發刊하여 區政에 적극반 영 하는 한편 市에 建議하여 他機關에도 확대 시행토록 하겠음.</p>
<p>○ 自活保護 對象者를 위한 生業資金 融 資 實績은? (5월말 현재)</p>	<p>○ '94년도 生業資金 融資 目標는 10家 口 7,000萬원이나 生活保護對象者라 는 이유로 마땅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5月末 현재 신청자가 없음.</p> <p>－ 弘報實績</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生業資金融資 案内文을 製作하여 自活保護對象者 586세대 모두에게 個別通知('94. 4. 6)</p> <p>－ 向後計劃</p> <p>生業資金 融資制度를 알지못하여 受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홍보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行政組職을 통한 弘報 • 班常會 會報에 게재 • 地域新聞 및 生活情報紙를 活用 弘報
<p>○ 家庭儀禮業所 指導團束은 금년도 몇 회 실시했으며 隨時 또는 不時團束 조치사항은?</p>	<p>○ 隨時 및 不時點檢：總 14回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7回 └ 영안실：7回 <p>－ 隨時點檢：월 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6回 └ 영안실：6回 <p>－ 不時點檢：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1回 └ 영안실：1回 <p>－ 點檢人員：家庭福祉課 직원 5名</p> <p>○ 摘發事項：總 2件 적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1件 └ 영안실：1件 <p>－ 摘發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 使用契約時 附帶物品 利用 強要 • 영안실 營業帳簿 未備置 <p>○ 摘發 措置 事項</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 영보예식장(10日間 영업정지) • 경고 : 명지종합병원영안실(동원장의사) <p>※ '94. 3. 24 保社部 직원 3명이 우리구 가정의레업소 점검 : 적발 실적없음.</p>
<p>○ 홍제 3동 소재 흥은국민학교뒤 하천변 제방에 駐車場 設置地域이 일반부지인가 하천부지인가, 신설주차장의 施設概要 및 運營方法은?</p>	<p>○ 施設概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位 置 : 서대문구 홍제동 287번지 198호 - 面 積 : 299㎡ - 地 目 : 하천부지 - 駐車臺數 : 26대 - 工事期間 : '94. 5. 31~6. 30 - 豫 算 : 18,065,000원 <p>○ 運營方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工事完了後 周邊與件 狀況등을 檢討하여 運營方法을 결정 하겠음.
<p>○ '94年度 도시가스 事業基金은 얼마이며 5月末 현재 基金融資 實績은?</p>	<p>○ 도시가스 使用施設 設置를 희망하는 수용가에게 工事費의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된 西大門區 도시가스 事業基金은 '92年 출연금 10億원을 확보하여 용자되기 시작하였으며 '93年度에 6億5百萬원 '94年度('94. 6. 15현재)에 3億9千2百萬원을 용자하였고 '93. 3월 이후 대출된 용자금의 상환금 및 이자를 합쳐 현재 기금의 잔액은 2億9千萬원임.</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94년도에 용자가능한 事業基金은 이미 용자된 금액중 하반기에 상환되는 회수금 1億8千萬원을 합쳐 4億7千2百萬원이며 基金不足으로 금번 追加更定豫算에 2億원을 반영하여 수용가 施設融資에 활용할 계획임.</p>
<p>〈崔容完 의원〉</p> <p>○ 國際化 開放化에 대비하여 公職社會에도 외국어 강좌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p>	<p>○ 연희1동 소재 초이어학원에서 지난 4月 18日부터 英語 9名, 日本語 9名の 직원을 선발하여 委託教育을 실시하고 있고 增築廳舍가 完工되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직원들에게 이수할 기회를 부여코자함.</p>
<p>○ 環境汚染 배출업소에 대한 團束實績과 團束 計劃?</p>	<p>○ 91개의 管理業所을 분류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氣汚染：16個所 • 水質汚染：70個所 • 騒音公害：2個所 • 其 他：3個所로 <p>年 2回의 定期的인 團束과 民願發生時 隨時團束을 하여 187件을 적발 3200萬원의 過怠料를 賦課하였음.</p> <p>－ 環境汚染을 防止하기 위하여는 團束이 능사가 아니라 管理人 教育, 감시요원 懇談會와 홍보 매체를 통한 教育을 꾸준히하여 環境汚染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鄭日洙 의원〉</p> <p>○ 長期 未開設 都市計劃 施設物을 과감히 解除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지?</p>	<p>○ 정해진 計劃을 解除함은 매우 신중하게 檢討되고 研究할 事안으로 우리區 管內 20年이상 長期 未開設 道路 71件에(19,961m) 대한 道路開設 補償金이 5千億~6千億원 정도의 豫算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區財政 형편상 豫算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또는 中長期計劃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며, 都市計劃解除는 地域發展이나 장래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어느것이 더 필요한가를 결정하여 신중이 처리 하겠음.</p>
<p>○ 西大門區 각종 전산망 추진사항에 대해서?</p>	<p>○ 住民登錄表 原簿를 정확히 입력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사를 하고 있고 他區보다 성실한 자료가 입력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금년 7月 1日 부터 실시되는 전국 온라인망 실시에 문제가 없음.</p>
<p>○ 竣工檢査後 창고 점포로 개설한 附設 駐車場은?</p>	<p>○ 團束計劃에 의거 885件을 點檢하여 본 결과 그중 67件이 不法 用途變更한것으로 지적되어 즉시 시정이 가능한 22件은 시정조치하고 미시정 45件 중 35件은 고발 10件은 1700萬원의 강제 이행금을 賦課하였으며 앞으로 定期的 事後檢査를 지속적으로 하여 不法用途變更 事例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94년 水害 豫防에 대해서? (하수도, 빗물받이, 청소관리)</p>	<p>○ 우리區는 한강을 끼고 있지않아 유수 지나 펌프장은 없으나 장마철 내수에 원활한 排水가 문제되어 총 390km에 달하는 下水道를 일제히 浚渫을 하고 동별로 빗물받이 청소를 持續的으로 하여 下水에는 지장이 없으나 再開發, 再建築 工事場의 土砂로 인한 沈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合同巡察로 만전을 기하고 있음.</p>
<p>〈鄭日出 의원〉</p> <p>○ 시민의 生活民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동 奉仕班을 運營할 용의는?</p>	<p>○ 郵便集配員, 清掃員 우유배달원 防犯巡察등을 移動通信要員으로 위촉하여 勤務要領을 주지시키고 전화카드와 엽서를 주어 언제든지 生活民願을 엽서로 신고하면 수시로 運營하고 있는 기동반이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음.</p>
<p>○ 남가좌 1동 141-28, 151-12간 백조 아파트 消防道路 開設에 대하여?</p>	<p>○ 이 지역은 1969. 1. 18日 서울시 告示3號로 都市計劃施設로 결정되어 미개설상태로 있다가 '73. 12. 1日 남가좌 제3구역 再開發區域으로 지정이 된후 '81. 7. 10日 事業計劃이 변경 결정될 때까지 여러번에 걸친 변경이 있어 都市再開發法 第5條 7項의 規定(再開發 事業計劃이 決定告示되면 종전의 都市計劃 결정사항은 廢止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消防道路는 개설하기는 곤란한 실정임.</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都市計劃 業務(도시계획입안 및 區廳長 결정권 위임사항내용) 事業實績은?</p>	<p>○ 도시계획서의 道路廢止 5件, 都市計劃 施設로써 道路 決定이 5件, 연희 3동 지역 西大門消防署 廳舍敷地 결정등은 區廳長에게 委任된 후 결정된 사항임.</p>
<p>(鄭赫柱 의원)</p> <p>○ 文化會館에서 이루어진 行事로 권장하고 싶은 것과 필요없는 공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p>	<p>○ 文化行事 2/4분기 企劃 公演行事는 2件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춤, 우리가락의 향연(3月29日)은 '94 국악의 해를 맞아 임이조 무용단등 국내 유수의 국악인과 춤꾼을 초청하여 우리 국악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불러 일으킨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음(800名참석) -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공연(5月4日)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로 모든 권장할 만한 公演이 되었음(1,000명참석) <p>앞으로도 주민들의 文化受惠 차원에서 유익한 公演種目을 선정하여 공연하도록 노력하겠음.</p>
<p>○ 市民奉仕室에 區民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p>	<p>○ 시민봉사실 전직원은 우리區廳을 來訪하는 모든 民願人들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주 1회 精神教育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어 의견충돌이 거의 없으나 간혹 民願人이 본인의 의견만을 내세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陳情事項(不法駐 停車異議申請, 自動車管理法違反, 戶籍訂正要求 사항등)에 대하여 고성으로 이의 제기를 한 경우가 있으나 설명과 이해 설득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民願人을 납득시켜 드리고 있고 항시 주민을 위한 奉仕者로서 화합 구정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음.</p>
<p>○ 地域交通課의 車輛團束 人員은 몇명이며, 團束人員 1인당 俸給과 車輛運行 費用은?</p>	<p>○ 車輛團束員 및 車輛 現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團束員 : 16名 - 車 輛 : 3臺(베스타 1대, 티코 2대) <p>○ 團束員 俸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職名 및 職給 : 技能職 10等級 - 1인당 월 봉급(3호봉기준) : 329,500원 <p>○ 車輛 運營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動車稅, 保險料, 油類 기타등의 運營費는 1대당 월평균 : 145,130원
<p>○ 牽引車輛과 團束車輛이 너무 많아 交通妨害가 되고 있는데 區廳의 견해는?</p>	<p>○ 우리區의 牽引 및 團束車輛은 總 9臺로써 團束車輛은 3臺이며 동차량이 각각 우리區를 巡廻하면서 團束 또는 牽引하는 것으로 交通妨害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p> <p>○ 車輛의 駐車違反은 수시로 발생하므로 團束도 기동성 있게 실시해야 駐車秩序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됨.</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金廷炫 의원〉</p> <p>○ 연희1동 187번지 일대 風致地區 解除에 관한 事項은?</p>	<p>○ 都市計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用途地區 指定目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風致地區는 都市 風致와 景觀을 維持保護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변경을 규제하고 있으며</p> <p>○ 연희1동 궁동 근린공원과 연결되어 대부분 필지가 200㎡ 이상의 토지로 風致地區에 적합한 地域으로 인근 연희동 110番地 2號 일대(32,470㎡) 일부는 '89년도 風致地區 再整備 計劃에 의거 서울特別市 告示 第478號('89. 11. 2)로 해제되었으나</p> <p>○ 현재 존치하고 있는 風致地區는 당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 검토중에 있는 西大門區都市基本計劃案에도 未 반영된 地域임.</p>
<p>○ 연희1동 533-124號 일대와 519-5號 일대 消防道路 개설에 관한 건?</p>	<p>○ 中期地方財政 計劃에 의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동 519의 216-523의 21간 道路開設 區間은 '95年 보상 '96년에 工事施行할 豫定이며 - 연희1동 542의 42-519의 96간, 연희1동 553의 34-553의 6간 道路開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設 구간은 '99년 이후 사업시행예정 이나 최대한 앞당기도록 검토하겠 음.</p>
<p>○ 연희1동 446番地 7號 일대 및 山118 番地 산중턱 道路 解除에 관하여?</p>	<p>○ 연희1동 446番地 7號 일대 都市計劃 施設(道路)은 '83. 4. 1. 서울特別市 告示 第188號에 의거 폭 10m 길이 346m 地籍告示되었으며</p> <p>○ 본 都市計劃施設(道路)開設이 연희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연희시범아파 트 안산순환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으 로 연희동 일대의 交通難 解消에 크 게 기여하게 되며, 현지 都市計劃施 設(道路) 解除는 어려운 실정임.</p>

다. 條 例 案

-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高速電鐵建設事業支援을 위한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案
-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入徵收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라. 承 認 案

- 1) 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定豫算案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1994年 6月 13日 第25回 臨時會 閉會期間中 개최된 議會運營委員會는 第26回 臨時會議事日程協議件 외 5건과 '94. 6. 25 第26回 臨時會 休會 期間중 '94年度 第1回 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定豫算案을 審議 하였다.

가. 承 認 案

◆ '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1) 提 案

이 豫算案은 '94. 6. 11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94. 6. 25)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편성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93年度 결산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定豫算을 地方自治法 第121條 및 地方財政法施行令 第30條 2의 規定에 의하여 區議會 승인을 얻기 위함.

나) 主要骨子

- 議會運營委員會 소관 추경예산 규모(세출)

(單位：千圓)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비율
1,041,000	986,412	54,588	

○ 추경 예산안 내역

(單位：千圓)

예산 과목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일반운영비	114,299	105,006	9,293
특수활동비	21,640	20,560	1,080
시설설계비	6,475	0	6,475
업무추진비	72,000	60,400	11,600
보상금	324,280	298,140	26,140

2) 豫算決算委員會에 要求事項

“實施設計費 6,475,000원”을 “基本調査設計費로” 비목을 변경하고 부기를 “本會議場 改造工事 實施設計費”에서 “區議會 廳舍改造 基本調査 設計費”로 수정함.

3) 審査 結果

○ 제석의원 8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고 豫算決算委員會에 5項을 요구하기로 함.

總務委員會

1994年 6月 23日~24日까지 第26回 臨時會 休會期間中 開催된 總務委員會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의 4件의 안건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條 例 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94. 6. 20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6. 23)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94年 自治區 위임전결規程 整備計劃에 따라 委任專決規程을 검토한바 1971. 9. 14일자로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地方稅 完納, 未課稅證明 發給事務는 현재내부위임 보다 洞長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이 시민불편을 발생시키지 않고 民願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이를 改正하려는 것임.

나) 改正 主要骨子

地方稅 完納 證明書의 발급사무를 洞長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토록 위임근거 規程

다) 關聯 法規

- 地方稅法 第39條
- 地方稅完納證明등의 發給事務, 동장권한 위임 처리 기준시달(稅政 13400 -405 '94. 4. 26)

2) 質疑와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區廳長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로 改正되면 장, 단점은?	○ 改正이 되면 民願人에게 불편을 해소시키는 장점만 있습니다.

가) 修正 理由

總務 01140-1147('94. 6. 9)號 및 總務 01140-1179('94. 6. 13)號로 西大門區議會에 기송부로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이 第26回 西大門區議會 臨

時會議에 동일한 제명의 案件을 2個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으므로 西大門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일괄처리코자 하는 것임.

나) 修正 主要骨子

- 第6條중 “이 경우 구체적인 事務의 委任은 區事務의 內部委任 規定으로 定하여야 한다”를 삭제 한다.
- 第7條 第4項중 “15日”을 “14日”로 한다.
- 第15條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區廳長이 非課稅 對象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非課稅를 할 수 있다.
- 第23條 第1項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特別市 條例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 9條 條項 단서 規定新設

3) 審査 結果

제석의원 12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修正案이 가결 되었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위한
區稅課稅免除에 관한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94. 6. 9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6. 23)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社會間接資本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高速鐵道 建設事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區稅의 課稅免除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면제대상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공공법인)
- 대상물건 :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등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지원

• 대상세목 :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다) 關聯法規

• 地方稅法 第7條(공식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관내 대상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 京義線이 지나가는 지역으로만 추측됩니다.
○ 서울역에서 수색역까지 지하로 고속 철도기지장이 설치 된다는데 사실인가?	○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고 최종사업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3) 審査 結果

재석의원 11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이 가결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稅入徵收補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94. 6. 22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6. 23)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西大門區 稅入徵收 褒賞金 支給條例에 稅外收入인 國·公有財産 변상금 徵收業務로 補賞金을 지급할 수 있는 規定을 마련하여 地方稅 徵收業務등과 형평성 유지 및 變上金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職員の 사기양양을 통합 財産管理 業務의 效率性 提高를 도모 하고자 함.

나) 主要 骨子

“무단점유 國·公有 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 辨償金을 부과한 경우”를 추가 삽입 개정하여 辨償金 徵收業務로 補賞金을 지급(條例案 第3條 第3號)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疑要旨	答辯要旨
○ 무주부동산으로 공고된 82건의 부동산도 포상금을 지급 하는지?	○ 기 발견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고 앞으로 區民이나 공무원이 발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市有地가 區有地로 전환된 현황은?	○ 市有地가 區有地로 전환된 면적은 7,030坪이며 현시가로 130億원 쯤 됩니다.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11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이 가결됨.

나. 承認 案

◆ 1994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定豫算案 ◆

1) 提 案

이 豫算案은 '94. 6. 11 區廳長이 제출한 案으로 第1, 2次 總務委員會('94. 6. 23)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 理由

기 편성된 '94年度 본 豫算중 불요 불급한 경비와 '93年度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한 '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定豫算案을 地方自治法 第121條 및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30條 2 規定에 의하여 區議會의 승인을 얻기 위함.

○ 總務委員會 소관 追更豫算規模(歲出) : 50,882,007천원

• 豫備審査對比 歲出豫算額 : 2,745,664천원

[一般會計]

總 50,700,630천원(본 예산대비 2,720,531천원 증가)

○ 一般 行政費 : 34,396,666천원(증 1,437,266천원)

(單位：千圓)

企劃 管理費		公 報 費		內務 行政費		財務 行政費	
追更豫算	增(△)減	追更豫算	增(△)減	追更豫算	增(△)減	追更豫算	增(△)減
15,332,051	396,253	1,426,878	-1,569	17,398,229	634,237	1,676,774	408,345

○ 社會 福祉費：14,912,657千圓(증 1,040,428千圓)

(單位：千圓)

福祉 事業費		保健 衛生費		清掃 事業費	
追更豫算	增(△)減	追更豫算	增(△)減	追更豫算	增(△)減
3,927,813	99,546	2,174,148	-2,954	9,851,124	943,836

○ 産業經濟費 中 地域經濟費：528,968千圓(증 211,446千圓)

○ 지원 및 기타 경비중 豫備費：862,348千圓(증 31,391千圓)

[特別 會計]

○ 醫療 保護 基金：1,043,716千圓(증 25,133千圓)

2) 追更豫算決算委員會에 좀더 심도있는 檢討要望事項

- 總 務 課：대학생 부업알선은 그 수를 확대토록 검토요망
- 稅 務 2 課：일반 운영비중 동기우편료 부족액 보전은 과다책정
- 社會福祉課：장애인 작업장건립 및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
- 家庭福祉課：일반운영비중 지역사회 활동비는 조정
- 產 業 課：비정규직 보수, 가스시설 안전점검 요원은 자격을 갖춘자로 채용토록 요망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9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을 가결하고 심도있는 검토요망 사항 5個項을 채택 豫決委員會에 요구함.

都市建設委員會

1994年 6月 23日~24일까지 第26回 臨時會 休會期間중 開催한 都市建設委員會는 區廳長으로부터 제출한 '94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定豫算案을 심사하였다.

가. 承 認 案

◆ 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定豫算案 ◆

1) 提 案

이 豫算案은 '94. 6. 11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1, 2次 都市建設委員會('94. 6. 23~24일)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 理由

기 편성된 '94年度 本 豫算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93年度결산 순세계잉여금중추경 재원으로한 '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定豫算案을 地方自治法 第121條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30條 2 規定에 의하여 區議會 승인을 얻기 위함.

나) 主要 骨子

- 都市建設委員會 소관 追更豫算 規模(歲出) : 總 14,542,393千원
- 예비심사 대상 豫算額 : 4,387,535千원

[一般 會計]

- 追更豫算規模(세출) : 13,554,055千원
- 예비 심사대상 세출 예산액 : 1,708,793千원
- 社會福祉費中 公園綠地費 : 892,193千원(중 56,041千원)
- 地域 開發費 : 12,661,862千원(중 1,652,752千원)

(單位 : 千원)

都市 開發費		建設 事業費		治水 및 下水 事業費	
追更豫算	增(△)減	追更豫算	增(△)減	追更豫算	增(△)減
623,088	17,678	10,364,146	1,484,208	3,327,380	150,866

[特別會計]

○ 駐車場：988,338千원(증 2,678,742千원)

2) 修正 內容

가) 歲出 調整

┌ 削 減：2,693,772원
└ 增 額：33,000,000원

나) 修正 要旨

- 一般會計 지역 교통관리 시설비：1,750,000원 삭감
- 駐車場特別會計 보상금：943,772원 삭감
- 道路建設施設附帶費：33,000,000원 증액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11名중 만장일치로 追加更定 豫算案을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함.

第27回 臨時會

▨ 本 會 議
▨ 常任委員會

第 27 回 臨 時 會

- 會 期：1994年 9月 7日 ~ 9月 14日 (8日間)
- 集會要求者：尹益洙 議員외 9人

概 況

第27回 臨時會議은 '94. 9. 7~9. 14까지 개최하는 會期로써 區廳長이 제출한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의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總務委員會에서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 傷害등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案의 5건, 議會運營委員會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의 2건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條 例 案

-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 傷害등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案
-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 物價對策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관한 條例案
-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 一般廢棄物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
-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 手數料徵收 條例中改正條例案
-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

나. 規 則 案

-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다. 承 認 案

- 1) '94年度 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常 任 委 員 會

議會運營委員會

1994年 9月 1日 第26回 臨時會 閉會 期間중 議會運營委員會에서는 第27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회기결정의건 의안을 심사하여 第27回 臨時會 1次 本會議에 상정하였고, 第27回 臨時會 1次 運營委員會에서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등 改正條例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第27回 臨時會 2次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條 例 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9月 1日 崔容完 議員의 5人이 발의한 안건으로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94. 9. 12)에 상정하였으며 改正 理由 및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 理由

'94年 7月 6日 大統領令 第14317號로 地方自治法施行令 第15號(일비와 여비의 지급)중 별표 4의 개정에 따라 현행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를 改正하므로서 원활한 議政活動을 보장하기 위함.

나) 主要 骨子

- 현행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을 지급하는 日費를 “50,000원”으로 조정 (第6條)
- 第7條 第1項과 관련한 國內旅費 지급 기준등 현지 交通費, 宿泊費를 조정 하고 비고중 第1號를 삭제(별표 1)
- 第7條 第2項 관련한 國外旅費 지급기준중 宿泊費 및 食費를 조정하고자 함(별표 2)

다) 參考 事項

- 地方自治法 第32條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5條

2) 審査 內容

- 崔容完議員의 제안설명 및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 내용 생략 -
- 質疑 및 答辯要旨(생략)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8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崔容完議員의 5人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9月 1日 金源珠의원외 5人이 발의한 안건으로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94. 9. 12)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 理由

地方自治法('94. 3. 16 法律 第4741號) 및 同法 施行令('94. 7. 6 大統領令 14317 號)이 改正됨에 따라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를 이에 맞게 改正하려는 것임.

나) 主要 骨子

- 條例 第8條에 第3項 및 4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③ 議長 또는 委員長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委員長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동 條例 第11條중 [令 第17條의 6]을 [令 第17條의 7]로 하여 [令 第17條의 7]를 [令 第17條의 8]로 함.

다) 參考 事項：地方自治法 第36條 4項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 4

2) 審査 內容

○ 金源珠 議員의 제안 설명 및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 내용 생략 -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위증을 할 때 위증 감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 議長 또는 委員長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3) 審査 結果

在席委員 8名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金源珠 議員의 5人이 제출한 原案이 가결 되었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

1) 提 案

이 改正規則案은 '94年 9月 1日 朴正來 議員의 5人으로부터 발의된 案으로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94. 9. 12)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 理由

改正된 地方自治法(1994. 3. 16 法律 第4741號) 第37條 第2項 및 신설된 同法 施行令 第18條의 3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議長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관련된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나) 主要 骨子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 第65條 3項중 『區廳長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答辯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議長에게 사전 제출』토록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區廳長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本會議 또는 그 委員會의 議長이나 그 委員會의 委員長에게 사전제출』하도록 수정

다) 參考 事項：地方自治法 第37條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9條 3

2) 審査 內容

○ 朴正來 議員의 제안 설명 및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 내용 생략 -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회의 개시전까지 참석못할 사유를 議長이나 委員長에게 사전제출 하도록 改正하는 것은 區廳長의 출석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 改正前과 비교할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제출과 회의직전에 議長이나 委員長에게 보낸다』로 그 개념만이 다르다고 생각됨.

○ 主要討論의 要旨

改正案 말미에 『그 委員會의 그 다음부터 會議 개시전까지 일곱자를 삭제하고 議長이나 그 委員會 委員長에게 통지 두자를 삭제하며 委員長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기 바람.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8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金平洛 議員이 제출한 修正案이 가결됨.

總務委員會

1994年 9月 8日 第27回 臨時會 기간중 개최된 總務委員會는 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 의 5件의 의안을 심사하여 第27回 臨時會 2次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條 例 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4年 8月 23日 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條例案으로서 第1次 總務委員會('94. 9. 8)에 상정하였으며 制定理由와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制定 理由

地方自治法 施行令이 개정됨(1994. 7. 6 大統領令 第14317號)에 따라 地方議會議員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傷害를 입은 경우 그 補償金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보상금 審議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主要 骨子

- 議員 상해등 補償審議會 構成(案 第9條)
 - － 委員長을 포함한 5人으로 구성
- 審議會 機能(案 第10條)
 - －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 － 보상금 청구경위 조사
 - － 보상금 지급액 결정
- 審議會 會議(案 第13條)
 - － 在籍議員 과반수 출석과 出席委員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청구서 접수 15日 이내 심의

다) 參考 事項

○ 關係 법령：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5條의 2

2) 審査 內容

○ 總務局長의 제안설명 및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 내용 생략 -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第2條 1項중 “職務”라 함은 보상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은데?	○ 공무원의 재해보상 범위와 동등하며 금액만 차이가 있습니다.

○ 審査 結果

재석위원 10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이 가결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4年 6月 28日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條例案으로서 第1次 總務委員會('94. 9. 8)에 상정하였으며 制定理由와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制定 理由

西大門區 物價對策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業料金, 또는 手數料, 使用料에 대한 합리적 심의로 物價安定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코자함.

나) 主要 骨子

- 委員會 機能：서울特別市 西大門區 物價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協議, 調定審議
- 構成 및 議決：委員長을 포함 10人 내외로 구성,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議決

- 委員會의 會議：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석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수시로 개최
- 施行規則：이 條例에서 規定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함.

다) 參考 事項

- 關聯 法規
 - 地方自治法 第107條(합의제 행정기관)
 -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2條(자문기관의 설치)

2) 審査 內容

- 市民局長의 제안 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
 - 내용 생략 -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條例 制定으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총괄의 의미는?	○ 총괄의미는 상징적이며 地方自治制가 완전히 실시되는 95年 6月이후 정부 시책에 의하여 역할분담이 됨.

가) 修正 理由

官이 주도하는 委員會 構成은 피하고 실제로 소비자 물가를 알고 있는 團體의 長이나 教授, 言論人, 專門家중에서 委員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 실질물가에 대한 심의를 하여 物價安定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修正 主要骨子

第4條 3項 “委員은 總務局長, 財務局長, 保健所長과 또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團體의 長, 教授, 言論人등 關係專門家 中에서 區廳長이 위촉한다.”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11名중 9名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을 수정 가결하였다.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 條例案은 1994年 8月 17日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9. 8)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改正 理由

廢棄物 管理法 第7條 및 第15條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過怠料處分 및 納付通知書를 즉시 발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環境處 例規 第101條와 부합되게 改正·補完하려는 것임.

나) 主要 骨子

廢棄物 管理法 第7條 및 第15條 規定에 위반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별지 第2號의 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함.

다) 參考 事項

- 關係 法規：廢棄物 管理法, 同法施行令, 同法施行規則, 環境處 例規 第101號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분리수거(북아현3동, 창천동)의 장·단점 및 구청소속 청소원과 민간 위탁업체와의 비교평가 사항은?	○ 앞으로 청소행정은 민간위탁업체에 점차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 고지서를 발부하는 일은 누가 하는지?	○ 구청소속 공무원입니다.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9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대로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4年 8月 27日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9. 8)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改正 理由

行政情報 공개운영에 따라 공개문서의 閱覽 및 複寫등에 소요되는 手數料와 醫療法 및 同法律 施行規則의 改正으로 醫療機關의 개설허가 등의 신청시 소요되는 手數料를 징수할 수 있는 規定을 마련하기 위하여 改正하고자 함.

나) 主要 骨子

- 行政情報 공개운영에 따른 閱覽, 複寫時 手數料
 - － 문서 또는 필립 열람 : 1件 100원
 - － 문서복사 : 1枚 100원
 - － 마이크로필름의 복사 : 1枚 100원
 - －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 : 1枚 100원
- 醫療機關의 開設등에 관한 許可 및 申告 手數料
 - － 綜合病院 개설허가의 경우 : 5萬원
 - － 病院, 齒科病院, 漢方病院 또는 療養病院의 개설허가의 경우 : 3萬원
 - － 醫院, 齒科醫院, 漢醫院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의 경우 : 2萬원
 - － 醫療機關의 개설 신고 변경의 경우 : 1萬원

다) 參考 事項

- 行政情報 공개 운영지침(國務總理 訓令 第288號)
- 醫療法 및 同法施行規則 第7條

2) 審査 內容

- 市民奉仕室長 및 醫藥課長의 제안설명
 - － 내용 생략 -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수수료 100원은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	○ 전국이 통일된 가격임.
○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수수료 50,000원은 상한선인가?	○ 이번은 통과 시키고 완전 지방화가 되면 점차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9명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이 가결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條例案은 1994年 8月 29日 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議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9. 8)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 理由

요보호 兒童의 相談 指導 및 臨時保護등의 業務를 전담하는 兒童相談員(별정8급 상당)이 兒童福祉 指導員(별정7급상당)으로 정원이 조정됨.

나) 主要 骨子

兒童相談員(별정8급상당)이 兒童福祉 指導員(별정7급 상당)으로 정원조정

다) 參考 事項

○ 根據 法令

- 兒童福祉法 第6條 第2項
- 兒童福祉法 施行令 第3條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 第4條 第3項

2) 審査 內容

○ 總務局長의 제안설명 및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 내용 생략 -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별정7급 상당 공무원임용 방법은?	○ 별정직 공무원은 특별채용으로 임용합니다.
○ 아동복지 지도원(7급 상당) 업무와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보건소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되는데?	○ “임산부의 상담중” 보건소는 치료 및 의료에 관한 사항이고 아동복지 지도요원은 미혼모에 대한 상담입니다.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9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이 가결됨.

◆ 1994年度 區有財產 管理計劃 承認案 ◆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4年 8月 11日 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承認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9. 8)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 理由

地方財政法 第77條(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區有財產 管理 條例 第36條(공유재산 관리계획), 地方自治法 第58條(의안의 발의)의 規定에 의하여 1994年度 우리區 區有財產 管理計劃(賣却 및 買入) 變更承認을 위함.

나) 主要 骨子

○ 區有財產(토지, 건물) 賣却

總 財產 現況 (잠중 재산)		當 初 管 理 計 劃 承 認		變 更 管 理 計 劃 承 認 案		計	
필지 (동수)	면적 (㎡)	필지 (동수)	면적 (㎡)	필지 (동수)	면적 (㎡)	필지 (동수)	면적 (㎡)
			512.4중		995.6중		1,508중
463	27,008	14	507.4	19	640.6	33	1,148
(1)	(131.24)	(-)	(-)	(1)	(131.24)	(1)	(131.24)

○ 區有財產 取得

區 分		當初 管理 計劃		管理計劃變更(금회)		計	
		필지(동)	수량(m ²)	필지(동)	수량(m ²)	필지(동)	수량(m ²)
買 入	土 地			5	182	5	182
	建 物			5	179	5	179
	其 他				1식		1식

2) 審査 內容

○ 財務課長의 제안설명 및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 내용 생략 -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 區有財產 매각시 인접토지주들 간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은?	○ 매각전, 인접토지주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없을시는 사전에 매각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 賣却代金의 일부를 사회복지분야, 기타 필요한데 사용할 수 없는지?	○ 아주 좋은 의견이며 사회복지분야를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에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審査 結果

재석위원 9名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이 가결됨.

第28回 臨時會

- 會 期：1994年 10月 24日 ~ 10月 31日 (8日間)
- 集會要求者：金平洛 議員外 9人

概 況

第28回 臨時會는 '94. 10. 24~10. 31까지 개최되는 會期로써 朴正來 議員外 5人 이 발의한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外 5件的 議案을 처리하였으며 臨時會 休회중 總務委員會에서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外 2件的 議案을 審査하여 本會議에 上정하였고, 都市建設委員會에서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外 1件的 의안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上정하였으며, 議會運營委員會는 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條例案

-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나. 承認案

- 1)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案

다. 請 願

1) 國·公有地 再建築에 따른 貫入者 對策에 관한 請願

라. 其他案件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1994年 10月 17日 第27回 臨時會 폐회기간중 개최된 議會運營委員會는 第28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을 심사하고,

1994年 10月 24日 第28回 臨時會 휴회중에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 改正規則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上程하였다.

가. 會期決定의件

◆ 第28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의會期決定 ◆

1) 會期期間 : 1994. 10. 24 ~ 10. 31(8日間)

2) 會議場所 : 西大門區議會 本會議場 및 小會議室

나. 處理案件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

1) 提 案

이 改正案은 1994年 9月 14日 第27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재회부된 안으로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94. 10. 24)에 上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改正된 地方自治法(1994. 3. 16 法律 第4741號) 第37號 第2項 및 신설된 案으로 시행령 第19條의 3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과 관련된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會議規則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 會議規則 第65條 3項중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答辯의 충실을 위하여 關係公務員의 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議長에게 사전 제출」토록 하던것을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區廳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그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本會議 또는 그 委員會의 委員長에게 통지」하도록 개정.

2) 審査內容

○ 討論要旨

“통지”대신 “사전제출”이라고 할때 상위법에 저촉 여부는?

○ 少數意見

22個 區중 1個 區만 상위법 改正에 의해 規則改正을 하였는데 우리 구도 좀더 심도있게 改正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第29回 定期會)에 부의 검토 요망함.

3) 審査結果

在席委員 8名중 6명 贊成으로 朴正來 議員 外 5人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總務委員會

1994年 10月 25日 第28回 臨時會 休회중 개최된 總務委員會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의 2件의 議案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案

이 改正案은 1994年 9月 28日 西大門區廳長으로 부터 제출된 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10. 25)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保健所 등록치료 환자등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그 기록및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경우 保健所에서 방사선필림 사본을 발급함으로써 조기 치료 효과 도모 및 자기 건강관리 보존 용이하여 本條例案을 改正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보건소 등록치료 결핵환자등의 타 의료기관 전출시(완치 퇴록 포함)본인이 요구할 경우 방사선필림 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다) 關係法令

- 醫療法 第20條 [기록, 열람등 규정]
- 保健所法 第8條 第1項, 第2項

2) 質疑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보건소에서 X-RAY 촬영후 필름을 요구하여 일반병원에서 판독하는 경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X-RAY촬영소로 전환될 염려가 있음	의료보험시행 이후부터는 일반병원이나 보건소의 진료액(촬영요금)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X-RAY 판독료가 얼마입니까?	판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3) 審査結果

在席委員 11名중 만장일치로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案은 1994年 10月 4日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 (94. 10. 25)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地方財政法 第103條의 規定에 의거 매2年마다 실시하는 '94. 地方自治團體 정기 재물조사 결과 서울特別市西大門區物品管理條例中 일부를 改正하여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나) 主要骨子

- 내용연수 1년미만 물품(관내현황도동)중 취득단가 5萬원이상 物品에서 10萬 원 이상 物品을 備品으로 한다.
- 불용품 감정은 장부상 취득가격 1,000萬원으로 상향조정
- 물품관리 장부중 소모품대장 폐지

다) 關係法令：地方財政法 施行令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장부상 취득가격을 상향조정하면 행정 소모품을 사용하는데 낭비요소가 더 많은것 같다.	관행을 현실화 한것(소모품대장자체가 비능률임)이며 감정판매 가격보다 감정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3) 審査結果

在席委員 9名중 만장일치로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나 承認案

◆ 1994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承認案 ◆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4年 10月 17日 西大門區廳長으로 부터 제출된 議案으로 第1次

總務委員會('94. 10. 25)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77條(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區有財産管理條例 第36條(공유재산 관리계획), 地方自治法 第58條(의안의 발의)의 規定에 의하여 1994年度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매각 및 매입) 변경 승인을 위함.

나) 主要骨子

- 공유재산(토지) 매각

총재산현황 (잡종재산)		당초관리계획 승인		변경관리계획 승인안		총관리계획변경 승인대상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505	47,277.24	33	1,508 중 1,148	27	18,745.4 중 18,345.4	60	20,253.4 중 19,493.4

- 상호 점유재산 교환

구분	당초관리계획		관리계획변경(금회)		계	
	필지(동)	수량(m ²)	필지(동)	수량(m ²)	필지(동)	수량(m ²)
공유재산			3	4,420.3	3	4,420.3
사유재산			23	6,329	23	6,329

2) 審査內容

-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北阿峴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당사자간의 告訴 告發 사건이 있는등 상황에서 매각을 신중히 하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占有財産 상호교환(이화여대에서 점유한 구유지)에 따른 효용성은?	이화여대 캠퍼스안에 소재한 區有地이므로 區에서 사용하는데 효용성이 없고 이화여대 땅이 구민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호교환을 해야만 양측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議決事項

- 區有財産 매각토지중 延禧洞 341-85의 8件의(26필지 18,067.7㎡)토지는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매각 승인 하였고,
- 구유재산 북아현동 210-22(277.7㎡)토지는 매각을 부결하였으며,
- 상호 점유재산 교환은 승인하였음.(구유재산 3필지 4,420.3㎡ 사유재산 23필지 6,329㎡)

3) 審査結果

在席委員 10名중 만장일치로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제2항 의결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음.

都市建設委員會

1994年 10月 27日 第28回 臨時會 휴회중 개최된 都市建設委員會는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外 1件의 의안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가. 條例案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案

이 改正案은 1994年 10月 15日 西大門區廳長으로 부터 제출된 議案으로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94. 10. 27)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93. 8. 9 建築法施行令(대통령령 제1353호) 및 建築法施行令(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改正에 따른 불일치되는 條文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條例에 위임된 사항중 누락된 사항의 보완 및 일부규정을 완화함으로써 民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本條例를 改正코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建築委員會 기능 추가(안, 제5조)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15미터 미만도로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완화(案 第17條, 第42條, 第43條)
- 조경공사비의 예탁기준 완화(案 第19條)
- 建築法施行令(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 정비(案 第21條)
- 미관지구안의 대지안의 공지 및 용도제한 기준완화(案, 第28條, 第30條)
- 기타(案 第41條, 第51條)

다) 根據法令

- 建築施行令(93. 8. 9.대통령령 제13953호) 및 建築法施行令(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
- 건지 58550-152호(94. 1. 26)건축허가대상 1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6m에서 3m로 완화하는 경우 장단점?	서대문구 지역은 자투리땅이 많으므로 지역주민에게 아파트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경비 예치금을 2배에서 1배로 완화 하였을때 대책은?	건축주가 조경을 하지 아니할때 예탁금으로 조경을 할 수 있습니다.

3) 審査結果

在席委員 10名중 만장일치로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한 原案을 可決하였음.

나. 請 願

◆ 國·公有地再建築에 따른 貫入者對策에 관한 請願 ◆

1) 提 案

이 請願은 1994年 10月 5日 西大門區 북아현2동 210번지 여운훈외 160인이 尹益洙 議員의 소개로 제출하여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94. 10. 27)에 上程하였으며 請願의 要旨 및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紹介意見

請願要旨書와 같이 組合員이 입주하고 난 잔여세대는 세입자 339분에게 특별 분양 또는 장기 및 영구 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재건축조합과 세입자간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되어 國家的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해 줄 것을 바라는 의견임.

나) 請願要旨

'92年 불량주택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정된 시민아파트가 가옥주 세대당 建物補償對策으로 보상금 1千萬원 국민주택 22~25평형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세입자에게는 3個月 주거대책비나 임대아파트 추첨공급을 조건으로 철거명령이 하달된 이후 재건축 조성으로 현재의 貫入者와 組合間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당해 지역내 公園用地와 나대지상에 公營 公供賃賃住宅을 건립하여 貫入者에게 공급하거나,
- 일반분양용 아파트(잔여 201세대)를 殘餘貫入者에게 公供임대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하게 하고 일반 분양분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하여는 容積率을 높여주는 등으로 해서 배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또한 현재의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근에 건립된 賃賃住宅 잔여

분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철거 이후 임시 거주대책으로 假收容 施設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 質疑答辯內容

가) 당해 지역내 公園用地와 裸垆地上에 공영 공공임대주택을 建立하여 貰入者에게 공급하거나,

답변) 公園用地 및 나대지는 이미 再建築組合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賃貸住宅供給은 불가합니다.

나) 일반분양용 아파트(잔여201世帶)를 殘餘貰入者에게 公供賃貸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民間 賃貸하게 하고 일반분양분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하여는 容積率을 높여주는 등으로 해서 배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일반분양용 아파트는 請約預金 加入者에게 분양하고 容積率을 높여주는 문제는 진입로 확장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건으로는 불가합니다.

다) 또한 현재의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근에 건립된 賃貸住宅 잔여분 아파트에 入住할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 西大門區內에 賃貸住宅이 2,383世帶가 있으나 구역내 貰入者에게 우선권이 있어 자격부여가 불가합니다.

라) 마지막으로 철거 이후 임시 거주대책으로 가수용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再開發地區였을 시 사업 施行者가 설치할 수 있으나 재건축시는 불가하며 결론으로 再建築組合과 貰入者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審査結果

在席委員 10名중 만장일치로 여운훈외 160人이 提出한 請願을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 區廳長에게 이송하기로 可決하였음.

意 見 書

本 請願은 西大門區 北阿峴洞210番地 여운훈외 160人으로부터 提出된 案件으로 그 취지는 北阿峴洞 210番地 시민아파트 再建築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 당해지역내 公園用地와 裸地地上에 公營 公供賃賃住宅을 건립하여 賃入者에게 공급하거나
- 일반분양용 아파트(잔여201世帶)를 殘餘賃入者에게 공공임대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민간 임대하게 하고 一般 分讓分을 임대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분 에 대하여는 容積率을 높여주는 등으로 해서 배려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내용 으로

위 請願은 區廳長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區廳長은 면밀히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 29 回 定 期 會

- 本 會 議
- 常 任 委 員 會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第29回 定期會

- 會 期：1994年 11月 25日 ~ 12月 29日 (35日間)
- 集會要求者：地方自治法 第8條 規定에 依據 議長이 公告함

概 況

第29回 定期會는 여섯번째 개최되는 '94年度 마지막 會期로써 區政에 관한 질문 및 區廳長이 提出한 '95年度 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외 25件的 議案을 처리하였으며 議會運營委員會에서는 '94年度 行政事務監查綜合計劃協議의件 外 5件을, 總務委員會에서는 '94年度 行政事務監查 外 14件을, 都市建設委員會에서는 '94年度 行政事務監查 外 4件을,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7日間に 걸쳐 1995年度豫算案 外 2件的 議案을 審査하여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本 會 議

1. 議會活動

가. 區政質問

'94. 11. 28 第2次 本會議에서 趙敏行 議員外 19人的 議員이 總務局 15件 外 55件的 區政質問을 하였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總括現況

- 提出議員：20人
- 提出件數：70件
- 質問 및 答辯方法：구두 70件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趙敏行 議員〉</p> <p>○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95년 재정수입 展望과 동원 가능한 有·無形의 자주 財源 확충방안은 무엇인가?</p>	<p>○ 자주재원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료, 부담금 過怠料의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경영수입의 새로운 發掘을 위하여 내년도에 대현 2지구 300坪 公園敷地에 구자체 사업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財政自立度를 높이도록 하겠음. 〈區 廳 長〉</p>
<p>○ 공정한 人事를 위하여 發展的이고 획기적인 人事 방침은?</p>	<p>○ 原則的으로 건강, 출·퇴근 기타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과, 능력발전에 역점을 두어 능동적 創意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人事方針이나 많은 人員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未洽한 점이 있어 고충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 〈總務局長〉</p>
<p>○ 人事 豫告制를 실천할 용의는?</p>	<p>○ 人事豫告制를 公開的으로 실시할 경우 상당기간 직원들의 동요로 인해 업무공백의 副作用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상시 苦衷相談制度를 활용하여 人事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됨. 〈總務局長〉</p>
<p>○ 변화와 개혁시대에 복지부동인 公務員들에게 活力을 불어 넣기 위하여 체적보다는 사기 양양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p>	<p>○ 사기양양책으로 직원 동호인 모임을 적극 育成支援하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휴양소개설운영, 職員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선진 외국의 해외시찰, 自己發展을 위한 외국어 會話委託教育, 生活安定을 위하여 국민주택 분양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생일 및 결혼시에 축하선물등을 보내 직원들의 사기를 양양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음. 〈總務局長〉</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金廷炫 議員〉</p> <p>○ 延禧洞 187番地 일대 風致地區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는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으나 일부는 존치하고 있어 미해제 지역의 住民의 경제활동과 재산관리에 불편을 초래 하고 있으니 해제할 수 없는지?</p>	<p>○ 延禧2洞 187番地는 궁동 近隣 公園과 연결되어 있어 풍치지구로 적합한 지역으로 '89年度에 일부는 해제를 하였으나 아직도 풍치지구로 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p>
<p>〈全聖章 議員〉</p> <p>○ 쓰레기 종량제의 效果的인 實踐方案에 대하여?</p> <p>—쓰레기 減縮을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 종량제가 '94年 4月부터 商業地域인 滄川洞과 주거지역인 北阿峴洞에서 시범 실시되고있는데 지난 7個月간 추진결과 감량효과와 추진상의 問題點은?</p> <p>—종량제로 인하여 가로 및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는 쓰레기의 量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區廳이나 代行業所에서 치울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 종량제를 처음 실시 하였을 때는 80% 밖에 이행 안되던 것이 3個月후부터는 95% 정도 家庭과 商街에서 종량제에 참여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종량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班常會報, 區民會報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弘報를 하고 시범실시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 敎育과 弘報를 통하여 종량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p> <p>○ 당분간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10萬원 이상의 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지만 過怠料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지 않아 啓導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分離收去의 활성화와 재활용품 수거의 증진을 위하여 公務員들이 투입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 수거용 봉투의 재질이 나빠 사용중 파손이 많고 규격봉투의 초과 구입시 價格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住民의 부담이 큰데 실비가격으로 판매할 의향은?</p>	<p>○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잉여 청소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清掃員들이 주로 폐품이나 재활용품을 처리 하도록 하여 職員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줄여 사기진작 및 業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p> <p>○ 全國 실시를 앞두고 물량 확보가 어려운 형편으로 기존업체에 더 좋은 비닐제품을 구입토록하여 찢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購入價格은 條例로 정해지기 때문에 감면이나 저렴하게 할 수는 없고 쓰레기양을 줄이는 수 밖에 없음.</p>
<p>○ 과대 포장용스티로폼이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産業 廢棄物의 처리 방안은?</p>	<p>○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環境處가 주관이 되어 백화점이나 生產業體를 지도단속할 사항이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關係規定에 의거 처리하고 운영하겠음.</p>
<p>○ 쓰레기 종량제 施行으로 인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청소가 잘 되지 않는데 이에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p>	<p>○ 잉여 청소원을 활용하여 이면도로 및 規定에 미달된 도로의 청소를 하도록 하고 住民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도모 하겠음.</p>
<p><左斗行 議員></p> <p>○ 8·15 광복절날 獨立 有功者를 위하여 區廳長으로서 어떤 記念式을 하였는가?</p>	<p>○ 이제까지 관행대로 政府나 市次元의 紀念行事가 있었으나 區에서는 없었음. 앞으로 있을 광복5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獨立有功者에 대한 기념행사계획을 추진할 예정임.</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재개발 대상지역인 시민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區에서 事業施行을 하지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장·단기 事業計劃은 수립하고 있는지?	○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산상의 문제와 貫入者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行政指導만 하도록 되어있어 行政部署에서 할 수 있는 최대방안을 찾아서 住居環境이 일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老人亭 운영실태 파악과 운영비를 점검하여 보았는지?	○ 충분한 지원은 아니지만 政府 補助金 事業으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고 自治區에서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노인봉사 활동에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老人亭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豫算을 최대한 지원을 하겠음.
○ 마을버스 운영실태에 대하여?	○ 마을버스의 운행의 기본취지는 大衆 交通을 접하기 어려운 곳으로부터 지하철 연계역 또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까지 연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운행되고 있는 실정인 바 마을버스회사 11個 67 臺에 대해 指導監督을 철저히 하여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음.
○ 마을금고가 지역의 銀行으로써 住民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行政支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마을금고 育成法에 의한 年 1, 2회 指導監督權은 있지만 순수한 사업영역에는 관여하기 어려워 독자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고에 대비하여 준비금 준비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 地域住民의 자금관리가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行政支援은 없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區의 財政 自立度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은?	○ 自立度 問題는 사후평가 사항으로 높고 낮음에는 큰 의미가 없고 自體財政을 얼마만큼 확충하느냐가 관건으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自體稅入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음.
○ 주정차단속함에 있어서 團束員의 신분을 모호하게 하여 단속을 하고 있고, 4m이하 도로에 구획선을 그어 주차선이 없는 곳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확실적인 단속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 洞職員이나 區職員들이 단속을 할때 완장이나 모자를 패용을 안하여 일부 혼선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마찰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음. 洞長에게 위임하여 구획선을 그었던 것을 區에서 일괄하게 그었기 때문에 4m미만 도로에 그어진 것은 주민이 직접 자기집 앞에 설치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것이 있을시 원상회복을 하고 주차를 금하도록 하겠음.
○ 條例制定 전인 지난 8월에 보상품을 준 근거와 統長은 왜 안주고 班長만 주었는지?	○ 서울시장 방침에 의하여 시전체 統·班長에 대하여 補償品을 지급하였고, 統·班長設置條例에 통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보상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規定이 되어있어 班長에게만 지급하였음.
<p data-bbox="167 1396 356 1435"><李文馥 議員></p> ○ 행정간소화 및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行政費가 늘어 지역사업은 손을 못대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公務員의 급여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과 행정 전산화에 따른 장비를 개선하는데 많은 豫算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地域開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음.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91年 과오납 반환금이 1億원이었는데 '94年은 9億원으로 900% 증가되었는 바, 세무행정이 퇴보되고 있는 원인은?	○ 10月말 현재 과오납금 6億 8,600萬원은 區稅가 830萬원이고 市稅는 6億 7,800萬원인데 이중 유원건설이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납부한 취득세(4億 6,300萬원)件이 大法院에서 패소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예년과 같은 수준인 1億 7,000萬으로 예년과 비교할 때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음.
○ 稅務 1·2課 직원이 50餘名으로 100萬件에 달하는 고지 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업무량 과다에 따른 行政組職을 개편 할 용의는?	○ 업무의 전산화와 職員의 전문세무직렬의 신설로 業務가 숙련되어 별 애로사항은 없으나 행정개편이나 기구개편 때 이부분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하겠음.
○ 移越金이 40億원, 不用額이 90億이 每年 발생하고 있는데 定期預金에 가입하여 이자발생을 높일 수는 없는지?	○ 예금전액을 定期預金에 넣지 못하는 것은 稅金이 市稅까지 들어오고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定期預金을 하는 것은 어렵고, 장기간 보유 할 수 있는 돈 83件(194億)은 定期預金에 예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노력하겠음.
○ 地域交通課에 26億원의 돈을 적립하고도 지금까지 一般會計에서 돈을 지급한 이유와 26億을 定期預金을 하지 않고 普通預金 구조로 관리하는 이유?	○ 그동안 特別會計 自立도가 낮아 一般會計에서 人件費를 지출하였지만 적립금이 증가되어 금년부터 단속원 31名에 대해 인건비 전액을 特別會計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곤란함.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金鍾彩 議員〉</p> <p>○ 개혁에 의한 業務推進을 빌미로 의결 기구인 議會를 경시한 처사는 없는지?</p>	<p>○ 職員들이나 職制를 관장하는데 있어 對 議會 문제는 어느 일보다도 우선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하여 소홀한 점이 없다고 자부하며, 의회경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단언함.</p>
<p>○ 현재 잘못된 行政을 인정하면서 인책이 두려워 과감한 개혁과 행정 집행을 뒤로 미루는 것은 없는지?</p>	<p>○ 행정개선과제 발굴 總 532件중 法令이나 條例 상급부서의 指針등의 改正을 요구한 것 248件, 市에 건의하여 진행중인 16件을, 建議 과제로 채택하여 3件은 즉시 시정되고 70件은 업무의 참고 과제로 채택 되었으며 48件은 區자체에서 발굴 확정하여 생활편의에 증진하고 있으며, 재난, 불법, 무질서로부터 住民生活을 보호하기 위하여 民間推進協議會를 구성하여 생활 행정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p>
<p>○ '94年度 區政計劃과 정도 6백년 사업의 推進實績은 어디까지 왔는가?</p>	<p>○ 연초에 계획한 것을 分期別로 심사분석하여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나 補償業務가 좀 부진하고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나 부진사업이나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박차를 가하여 당초계획이 순조롭게 운용되도록 하겠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94년도 최우선 주요사업으로 시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 되어 왔으나 성수대교 붕괴이후 안전에 치중하다 보니 추진 하이라이트 부분에 미진했음은 부인 할 수 없으나 계획했던 2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일부 미진한 사업은 아현산대늘이의 복원, 문학박물관 건립, 춤·가락향연, 등은 옛날 문헌에 의한 복원이라 어려운 과정이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임.</p>
<p>〈鄭炳八 議員〉</p> <p>○ 국유지 점유실태와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p> <p>-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얼마나 되는가?</p> <p>-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시킨 토지변상금 사용료는 얼마인가?</p>	<p>- 무단점유 면적은 68,161km²(2만 2,000평) 필지는 1,123필지, 가구는 2,246가구</p> <p>- 752필지에 20억 9,4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248필지에 3억 900만원으로 징수율이 약 15%임.</p>
<p>-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p> <p>- 법원에 토지변상금 분쟁으로 계류중인 건수와 승소와 패소의 건수는?</p>	<p>- 국세징수법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있으나 자진하여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계류소송건수 12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중(6件) — 승소(2件) — 패소(2件) <p>계류소송12件중 변상금 취소 소송은 없고 시효취득 문제로 소유권이전소송만 있으며, 大法院 판례에 따라 점차 승소 건수가 늘어나는 전망이다.</p>
<p>○ 西大門區 地域의 아파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상당히 많고 특히 문화촌 아파트와 같이 오랫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民願의 발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 관내 아파트중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공가로 있는 아파트는 弘恩洞에 있는 문화촌 아파트 冷泉, 峴底地區에 있는 13個棟의 시민아파트가 공가로 되어 있으나 이것들은 모두 사업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철거를 못하고 공가로 방치된 상태인 바 이러한 공가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도록 組合에 行政指導를 하여 民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都市整備局長></p>
<p>○ 弘恩 1·2洞 弘濟3洞 7萬餘 住民이 거주하는 地域에 북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161번 시내버스의 회차지점이 변경되어 住民의 애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 회차지점 변경에 의한 住民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공회사인 삼성종합 건설과 監督廳인 綜合建設本部와 협의하여 工事를 구간구간하도록 하여 회차지점 변동이 없도록 하겠음. <都市整備局長></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郭載滿 議員〉</p> <p>○ 西大門 관내 재개발 아파트 공사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 아파트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생활터전인 만큼 설계에서 부터 기초 공사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조그만 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監督을 철저히 하겠으며, 組合이나 시공사, 監理者 모두가 부실공사를 추방한다는 의지를 가지도록 회의 및 정신교육등의 行政指導를 강화하겠음.</p>
<p>○ 西大門區는 재개발 사업도 많고 建築業務도 폭주하는데 都市整備局長의 직렬을 건축직으로 임명하여 지도감독함이 어떤지?</p>	<p>○ 중요한 建築問題나 住宅改良問題등의 都市整備 問題는 專門職公務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4級이상 公務員의 임용과 정원조정권한을 서울市長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만 하여 놓은 상태임.</p>
<p>○ 住宅課에서는 별도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입지심의와 환경심의를 무엇이며 심의에 참여하는 委員의 자격은?</p>	<p>○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전에 關聯法規나 주변여건을 종합해서 검토하고자 종전의 建築審議委員會를 사전 결정심의 위원회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 참여委員은 住宅建設事業計劃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자중 區廳長이 위촉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짐.</p>
<p>○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 중에 20년 이상된 것이 많아 住民의 財產權을 침해하는 상태가 되어 원성이 잦은데?</p>	<p>○ 百年大計를 위해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계획은 수정을 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0년이 넘도록 都市計劃을 집행 못하고 있는 부분은 財政형편이 열악하여 늦어지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執行計劃을 세우고 검토해서 도시계획 시설 지정이 필요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鄭田村 議員〉</p> <p>○ 滄川洞 100番地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대하여?</p>	<p>○ 滄川洞 100番地 일대 풍치지구 해제 의 건은 西大門區 都市基本計劃 속에 포함되어 있어 서울市議會 本會議에 상정이 끝나고 市都市計劃委員會 심의를 거쳐 市長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하므로 이런 과정이 끝나는 평년도 상반기중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p>
<p>〈尹益洙 議員〉</p> <p>○ 西大門區 都市基本計劃이 확정된 후 자투리 公園敷地를 해제할 용의는?</p>	<p>○ 公園用地 해제는 都市計劃運營上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北阿峴洞 243番地 일대 해제건은 충분히 검토하겠음.</p>
<p>○ 시대변천에 따라 建築法도 효율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축건물옥상 옥탑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어 생활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구체책은?</p>	<p>○ 현실에 급급하여 인정할 사안은 아니며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p>
<p>○ 再建築地域의 아파트내의 不法 入住者 처리의 대책은 무엇이며 貰入者와 組合員간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p>	<p>○ 不法入住者중 구제가 가능한 분은 구제를 하고 구제가 안되는 분은 零細民 책정을 한다든지 政府에서 짓고 있는 영구 賃貸住宅의 입주권 부여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구제하겠고, 貰入者와 組合員과의 불화는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겠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全在煥 議員〉</p> <p>○ 금화시민아파트는 建물이 老朽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 조속히 住居環境改善事業의 승인을 하여 줄 수 없는지?</p>	<p>○ 금화시민아파트는 표고가 높기 때문에 高度制限에 따른 고도 문제와 부지 및 진입로 협소문제등을 극복하면서 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豫算과 行政指導를 하여 금화아파트가 개량될 수 있도록 하겠음.</p>
<p>○ 峴底洞 산복도로가 24年이 지나도록 도로로 승인되지 않고 있는데 산복도로에 대한 대책은?</p>	<p>○ 안산 순환도로의 일부분으로 포함 시키기 위하여 區·都市基本計劃에 폭 10m로 해서 市에 승인요청중이며 중기 재정 계획에 맞도록 財政을 배분하여 빠른 시일내에 都市計劃道路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p>
<p>○ 西大門區 관내 22個洞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많은데 이를 民營化로 할수는 없는지?</p>	<p>○ 우리區 쓰레기 수거처리는 區廳에서 60%, 대행업체가 40%를 맡고 있으나 과감히 民營化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區廳清掃員에 대한 예우나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 전면 대행체제로 전환 못하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전부 대행체제로 바꿀 생각임.</p>
<p>〈鄭日洙 議員〉</p> <p>○ 文化會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식장의 부대시설 사용료가 시중일반업소보다 비싸 民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대책은?</p>	<p>○ 附帶施設 사용료를 인근에 있는 예식장과 비교할 때 차이는 있으나 이 부대시설 이용이 일반 예식장과 같이 강제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예식장 계약할 때 弘報하여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民願을 해소하겠음.</p>
<p>○ 마구잡이 駐車團束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무리한 團束을 피하기 위하여 10分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지?</p>	<p>○ 駐車團束은 어려운 문제로 어느정도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리한 단속은 피하도록 啓導를 하여 駐車 停車 단속에 따른 시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음.</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洞 소규모사업의 시행실적과 시행업체와 豫算內譯에 대하여?</p>	<p>○ 소규모 편익사업이 洞別 300萬원에서 500萬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지난 11月 21日 현재 86.7%인 7億 6,300萬원이 교부되어 그중 76%인 5億 8,000萬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안전관리가 시급하고 年內施行이 가능한 소규모사업은 조기 집행을 하여 冬節期에 區民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 버스 및 마을버스 불법주차 점검 사항과 行政處分 내역에 대하여?</p>	<p>○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 결과 과징금을 10件에 55萬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課徵金 보다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駐車를 시킬 수 있도록 行政指導를 하겠으며, 마을 버스 11個 회사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分期別로 한번씩 그외 문제발생시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 문제가 도출되면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겠으며, 마을버스 점검결과 11件에 200萬원의 課徵金을 부과하였습니다.</p>
<p><鄭日出 議員></p> <p>○ 弘濟川을 살릴 수 있는 弘濟川 開發委員會를 구성할 용의와 물막이댐, 미화림, 꽃단지, 유실수, 휴게시설,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開發計劃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檢討하고 研究하여 서울市에 建議할 용의는 없는지?</p>	<p>○ 본래의 弘濟川 모습으로 바꾸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애로를 극복하고 그 취지에 맞춰 行政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 모래내 商業地區는 언제 어떻게 施行할 것인가?	○ 모래내 商業地域 관계는 가좌권 중심과 가좌역세권 地域으로써 지구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都市基本計劃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3월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항을 市政開發研究員과 都市計劃常任企劃團, 기타 有關部署에서 검토가 완료되어 서울시議會에 상정중에 있고 市議會 의결이 되면 市 都市計劃委員會에서 도시기본계획결정안이 결정되어 區로 시달되면 사안별로 都市計劃法에 따라 사업지구에 대한 제반절차를 밟게 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都市整備局長>
○ 區行政에 대한 輿論調査 실시여부와 各洞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 輿論調査는 부서별로 분야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추진 부서별 여론조사는 監査室, 文化公報室, 總務課, 市民奉仕室 등 4개 부서가 수사로 여론조사를 하여 우수사례가 있으면 전부서에 전파를 하고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시정을 하고 있음. <總務局長>
○ 行政情報에 대한 住民의 이용실적과 弘報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 행정정보 이용 실적은 總 18件을 접수하여 공개된 것이 14件, 비공개된 것 2件 기타로 처리한 2件 등 이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전단 2,500매, 서대문구 소식지에 홍보하고, 반상회나 회보지에 홍보한 사실이 있음. <總務局長>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林在鮮 議員〉</p> <p>○ 福祉行政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區廳傘下 모든 機構와 職制를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조정할 용의는?</p> <p>○ 북부 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라 소음, 매연등의 공해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p>	<p>○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區行政에도 기업마인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완전한 經營分析을 하여 차기 民選 團體長에게 넘겨 줄 생각임.</p> <p>○ 북부고속화 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터널구간과 강변구간을 제외하고는 전구간에 높이 1.5m - 4m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줄일 예정이고 매연에 관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선진화로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연료 개선을 통하여 근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p>
<p>〈金源珠 議員〉</p> <p>○ 追更豫算을 편성하면서 40億원 이라는 豫算이 예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追更豫算에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p> <p>○ 금년도 예산중 市費補助金이 본예산에 8億 4,873萬 6,000원이 계상되어 本會議에 통과하였으나 追加更正豫算에서 市補助金이 9億 5,496萬 4,000원이 本會議에 추경예산으로 상정되었는데 議會의 의결승인도 받지 않고 증액상정하여 豫算을 편성한 이유?</p>	<p>○ 本豫算 편성시에는 결산전망이 불투명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전년도 폐쇄기때 결산잔액을 追更으로 하는 관례에 따라 작년도도 편성하였으나 '95年度 豫算에는 예측가능한 所要豫算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였음.</p> <p>○ 地方財政法 第36條나 西大門區 豫算總則 8條에 의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부금은 區廳長이 편성하고 議會에서 사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간주 처리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임.</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南加佐2洞 237番地 진입로공사가 예산이 확보된지 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p>	<p>○ 補償協議가 되지 않아 土地收用委員會와 법원 재판 과정을 거쳐 보상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보상을 촉구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區廳長></p>
<p><崔容完 議員></p> <p>○ 公務員들의 기강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p>	<p>○ 정부의 第2 改革司正活動으로 공직 부조리근절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稅務, 建築등 지방 10대 취약업무에 대하여 部署長 책임관찰제도를 도입하여 부정근절시까지 실시하고 취약분야 근무자에 대해 人事管理와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고발제도를 병행 실시하겠음. <總務局長></p>
<p>○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이 시행과정에서 법적인 보완책과 같은방향 맺어 주기등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하여 성과가 미진한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의 대책방안은?</p>	<p>○ 凡市民運動으로 전개하고 있는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이 參與車輛에 대한 혜택부여와 미참여 차량에 대한 法的 規制事項이 없어 강력히 시행하는데 애로가 있고 동승자 사건에 대한 보험보상 미흡과 同乘者의 자격지심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 승용차 함께타기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關係法이 개정되면 적극적인 行政指導와 대시민홍보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總務局長></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鄭赫柱 議員〉</p> <p>○ 高額滯納者와 그 額數는 얼마나 되며 체납결손 처리건수 및 액수는?</p>	<p>○ 高額滯納이란 件當 50萬원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94年 9月 30日 현재 件數는 1,653件 金額 51億 9,100萬원이 고, 결손처리 件數는 10月 31日 현재 8,489件에 금액 1億 7,400萬원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財務局長〉</p>
<p>○ '93年, '94年 10月 末까지 매매계약 검인 건수는?</p>	<p>○ '93年度 계약서 검인 처리 실적은 총 5,973件이며 '94年度 현재까지 계약서 검인 처리 실적은 4,615件으로 '93年度와 '94年度 현재까지 총처리 件數는 1萬 588件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財務局長〉</p>
<p>○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建物 土地는 非課稅를 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며 어떤 근거에 의하여 비과세를 하는지와 과세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p>	<p>○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非課稅 하는 것이 아니라 宗教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 비과세를 하고 있고 대상 교회수는 285개 교회입니다.</p> <p>비과세 근거는 地方稅法 第7條, 第107條, 第184條, 第123條의 第12條 規定에 의거 비과세함.</p> <p style="text-align: right;">〈財務局長〉</p>
<p>○ 일용인부임의 수당은 얼마이며 적절하다고 보는지?</p>	<p>○ 特定事業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용인부임은 勤勞基準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1日 1萬 5,300원으로 月 25日 근무하였을시 지급되는 임금은 38萬 2,500원이기 때문에</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1人當 5萬원 정도의 급량비를 더 지급 하여 40萬원이 넘도록 지급하는 실정이나 앞으로 일용인부임 보수에 대해 상당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노력 하겠음. 〈總務局長〉</p>
<p>○ 公務員 근무태세에 대하여? - 어떤 公務員은 하루종일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신문을 통독할 정도로 시간이 많은데 조정 할 수 없는지?</p>	<p>○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자세는 일과 시간중 맡은바 職務를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직원은 계절적 또는 擔當業務의 성격상으로 業務量이 다소 차이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실·과장이 적절하게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다시 조정하겠음. 〈總務局長〉</p>
<p>〈具滋億 議員〉 ○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지 공급에 모조품 및 사제품 유통에 따른 단속 실태에 관하여?</p>	<p>○ 시범실시 지역의 수거봉투를 여러측면에서 파악하였으나 모조품및 유사 봉투 유통은 없었고 내년도 전면 실시를 앞두고 3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수립하였음.</p> <p>- 첫째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반을 운영토록하여 유사봉투나 모조품을 발견하였을때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제를 확립하고,</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둘째</p> <p>모조품이나 유사품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하여 刑法 第225條, 第229條에 의한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하여 10년 이하 懲役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가하겠음.</p> <p>—셋째</p> <p>제작업체에 제작동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僞造나 變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징물과 서대문구 각동별 명칭을 넣겠음. <市民局長></p>
<p>○ 戶籍上 단독으로나 또는 戶主가 되어 지방에서 전입된 자의 현황?</p>	<p>○ 호적변조 또는 위조 문제가 있어 刑事立件된 사실이 문제가 되어 市 監 查官室에서 西大門 區廳 戶籍監查를 실시한 바 위조나 변조된 사항은 1건도 없으며 民法 第787條 第1項 및 第2項의 改正에 의한 여성 호주자는 今年 10月 31日 현재 지방에서 전입된 여성단독 또는 여성호주가 總1,115名 여성단독 호주가 746명, 여성호주 369명임. <總務局長></p>
<p>○ 성산회관 뒷산에 컴퓨터광고 입간판 설치의 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태에 대하여?</p>	<p>○ 성산회관 뒷산의 광고는 軍事施設 차폐물로써 광고주는 육군 제1596부대장이 광고차폐시설 광고물을 신청하여 지난 '90~'92년까지 2年間に 걸쳐 광고차폐 시설신청이 들어와 수수료 99萬원을 징수한 바 있고 그후 광고허</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가와 광고주가 없는 관계로 백색으로 칠하여 있다가 무단으로 금성그린헬스 컴퓨터 광고가 부착돼 그 현장을 확인하여 지난 10月경 관계부대에 통보하고 무단광고 게재에 대한 廣告物管理法 第20條 規定에 의해 과태료 50萬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광고주인 제1596부대에서 금성그린헬스 컴퓨터광고 허가를 신청해서 검토중에 있으며 다른 하자만 없으면 허가할 예정임.</p> <p style="text-align: right;">〈都市整備局長〉</p>
<p>○ 區를 상징하기 위하여 區木인 소나무로 연희로변의 가로수를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내년도 豫算에 반영하여 구청 광장에 수령이 좋은 소나무를 식재하여 區木으로서 제정된 의미를 구민에게 홍보 할 용의는 없는지.</p>	<p>○ 가로수 식재는 소나무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가로변 녹지대와 건물주변에도 소나무 식재를 유도하고 區木인 소나무를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애항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區廳 청사내에 소나무 위주로 청사조경계획을 수립하여 '95年度 歲出豫算에 3,000萬원을 편성하여 요구중에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建設局長〉</p>
<p>〈朴正來 議員〉</p> <p>○ '94年度 당해년도 재정운영 總豫算支出에 관한 총괄적 재정집행을 하였는지?</p>	<p>○ 5년 주기로 하는 中期財政計劃과 년차적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위 계획에 의하여 新規事業은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소모성 경비의 낭비요소 억제등</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豫算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豫算執行審議委員會를 설치하여 예산전용이라든지 사업계획의 변경, 예비비사용,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간의 균형적 배분 등 예산집행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효율적 배분을 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總務局長〉</p>
<p>○ 경상 경비를 줄이고 장기 지속적인 계속사업이나 신규개발 건설사업의 연계 및 타당성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차질없이 집행되었는지?</p>	<p>○ 地方財政計劃運營은 연간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投資審查를 거쳐 결정되고 중요한 案件은 정책회의에 회부하여 사전심사를 거치게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신규사업이나 개발건설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長期繼續事業과 연계성 지역간의 균형 발전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總務局長〉</p>
<p>○ 금년도 西大門區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과 특히 과태료 징수 실적이 세외수입을 수반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p>	<p>○ 세외세입 604億 8,649萬원 중 一般會計가 555億 9,394萬 6,000원이고 特別會計가 48億 9,254萬 4,000원으로 구전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80.9%로 세외수입중 市補助金과 調整補助金을 제외한 세외수입 예산은 279億 1,478萬 9,000원으로 이 중에 過怠料는 41億 5,736萬원으로써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과태료의 비율은 14.9%이고 계속 액수가 늘어나는 추세임.</p> <p style="text-align: right;">〈總務局長〉</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金平洛 議員〉</p> <p>○ 公務員 수를 줄일 수는 없는지?</p>	<p>○ 행정수요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늘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운 실정으로 공무원수를 줄이기는 곤란함.</p> <p style="text-align: right;">〈總務局長〉</p>
<p>○ 區廳長은 局長室을 폐쇄하고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p>	<p>○ 2~3명의 局長을 한 부속실로 만들어 여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는 방법을 檢討하여 보았으나 문제가 있어 더 研究 檢討하여 보고하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總務局長〉</p>
<p>○ 人事委員會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지?</p>	<p>○ 人事委員會는 地方公務員法 및 人事管理規則에 의하여 7名으로 구성되며 그중 辯護士 1人, 일반민간인 1人을 위촉하여 人事委員會 委員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어 민간인 2人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임.</p> <p style="text-align: right;">〈總務局長〉</p>
<p>○ 都·農間の 직거래 현황 실적 및 문제점, 효과는 무엇이고 농협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 政府施策事業인 도·농자매결연 현황은 區廳이 2個 機關, 22個 洞事務所는 37個機關, 새마을 부녀회등 民間團體 (4個團體)까지 43個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總 87日에 金額은 6億 7,100萬원이 되겠음. 또한 품질이나 가격등이 농협출하 물품에 못지않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여 시정하겠음.</p> <p style="text-align: right;">〈市民局長〉</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 쓰레기 壓縮機는 몇 대가 있으며 적체되는 쓰레기를 신속처리하기 위하여 압축기를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북가좌1동 積換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p>	<p>○ '94년에 2대를 도입 현재 난지도에서 가동중에 있으며 '95年度에 북가좌1동 중간 집하장에 2대를 설치한다면 적환장이 깨끗이 정비 될 것임.</p>
<p>○ 북가좌1동 한양아파트에서 지하철 홍제역까지 연계해서 운행하는 가좌마을 버스의 노선을 변경할 용의는?</p>	<p>○ 현재 제반 여건상 노선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제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시기에 가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에 마을 버스도 함께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임.</p> <p style="text-align: right;">〈都市整備局長〉</p>
<p>○ 유명무실한 車庫地 證明制를 폐지할 용의는?</p>	<p>○ 運輸事業法에 법정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車庫地 證明 폐지관계는 關係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임.</p> <p style="text-align: right;">〈都市整備局長〉</p>
<p>○ 도로개설공사에 있어 폭 6m가 5m로 개설되는 이유?</p>	<p>○ 도시계획 도면상 6m로 표시된 도로가 폭 5m 내지 5.5m로 확보되는 이유는</p> <p>－첫째</p> <p>地籍工事に 의뢰하여 경계명시 측량을 한후 施工하므로 도로 경계선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高低差가 있는 급경사지상의 주택가 지역인 경우 경사지 토류공용벽, 또는 석축을 시공하면 도로 폭이 벽면에 해당하므로 이용노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p> <p>－둘째</p> <p>부분보상 철거대상 建物の 주기등이</p>

質 問 要 旨	答 辯 要 旨
	<p>저촉되어 잔여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주의 협조 없이는 재철거가 곤란하므로 완전 철거후 재건축시 까지 도로를 확보토록 합의한 경우 도로폭이 일시적으로 미확보 되는 경우가 있음. <建設局長></p>
<p>○ 포장두께가 20cm인데 10cm 施工되고 레미콘 資材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不實施工한 지역이 있으면 재시공 조치를 하겠으며 監督 公務員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建設局長></p>
<p>○ 북가좌 국민학교 앞 육교처리 문제에 대하여?</p>	<p>○ 북가좌 국민학교 네거리 육교처리하는 관할 洞을 통해서 육교 존치여부 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임. <建設局長></p>
<p>○ 포장마차 단속에 대하여?</p>	<p>○ 포장마차 중 잠정 허용된 36個所 외 신규발생 포장마차는 1日 2回 이상 순찰을 하여 강력단속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指導團東으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建設局長></p>

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選任

第29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과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및 1995年度豫算案審查를 위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구성의件을 상정하여 議長이 추천한 11名の 議員을 滿場一致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委員은 다음과 같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

鄭田村議員, 金源珠議員, 鄭炳八議員, 趙敏行議員, 鄭赫柱議員, 李文馥議員
崔容完議員, 朴正來議員, 鄭日洙議員, 尹益洙議員, 曹甲鉉議員

다. 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第23回 定期會 第1次 本會議에서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4年度 행정사무감사 실시 승인과 第6次 本會議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區廳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승인된 監査計劃은 다음과 같다.

◆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案 ◆

1)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에 의하여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으로써 區政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議政活動에 기여하고, 1995年度 豫算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目的으로 함.

* 根據

- 地方自治法 第36條
-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6條 내지 第19條의 2

- 2) 監査時期
- ┌ 總務, 都市建設委員會 : 94. 12. 5~12. 10(6일간)
 - └ 議會運營委員會 : 94. 12. 11(1일간)

- 3) 監査對象 : 區廳5局(27課), 3室, 保健所, 洞事務所, 議會事務局

4) 監査對象業務：地方自治法 第9條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監査對象 事務의 範圍：1994年度에 처리된 업무

라. 條例案

-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改正條例案
-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體育道場과隣接한場所의範圍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
-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兒童委員協議會設置및運營등에 관한條例案
-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減免條例案
-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經營投資事業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마. 承認案

- 1)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2) 1993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 3) 1995年度豫算案
- 4) 1995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바. 其他議案

-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총무위원회 소관)
- 3)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도시건설위원회 소관)

常任委員會

議會運營委員會

1994年 11月 18日 臨時會 폐회기간중 개최된 議會運營委員會는 '94年度行政事務 監查綜合計劃書協議의件 外 2件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綜合計劃書案 ◆

1) 提 案

地方自治法 第36條에 의거 行政事務監查를 실시함으로써 區政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議政活動에 기여하고 1995年度 豫算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 根 據

- 地方自治法 제36조
- 地方自治法 施行令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行政事務監查및조사에관한조례

- 2) 監查時期
- ┌ 총무위원회 : 94. 12. 5~12.10
 - ├ 도시건설위원회 : 94. 12. 5~12. 10
 - └ 의회운영위원회 : 94. 12. 11

3) 監查對象 : 구청5국(27과), 3실,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4) 監查對象業務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 1994年度에 처리된 업무

5) 監查委員의 構成

常任委員會別	議 員 名	監查對象	備 考
總務委員會	委員長 : 林在鮮, 幹事 : 李文馥 委 員 : 趙敏行, 全聖章, 姜碩宗, 鄭田村, 朴老鉉, 金鍾彩, 鄭炳八, 具滋億, 鄭日出, 金源珠, 鄭赫柱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文化公報室, 監查室, 市 民奉仕室, 保健所, 洞事 務所	事務補佐 專門 委員 : 李相憲 事務補助 : 議 案係職員

常任委員會別	議 員 名	監查對象	備 考
都 市 建 設 委 員 會	委員長：全在煥, 幹事：曹甲鉉 委 員：宋榮于, 李鳳洙, 尹益洙, 金廷炫, 金永一, 丁和鎭, 崔容完, 朴正來, 金平洛, 鄭日洙, 郭載滿	都市整備局 建設局 洞事務所	事務補佐 專門 委員：韓重鉉 事務補助：議 事係職員
議 會 運 營 委 員 會	委員長：鄭日出, 幹事：崔容完 委 員：全在煥, 尹益洙, 左斗行, 朴正來, 林在鮮, 金源珠, 金平 洛	議會事務局	事務補佐 專門 委員：韓重鉉 事務補助：議 案係職員

6) 監查場所

- 總務委員會：區廳 3層 企劃狀況室
- 都市建設委員會：新築廳舍 3層 會議室
- 議會運營委員會：議會事務局 小會議室

7) 監查要領 및 節次

- 要 領
 - 업무보고 청취
 - 서류제출
 - 현지확인
 - 관계인 출석：증인 및 참고인 등 진술
- 節 次
 - 開會宣言 및 委員長 인사
 - 해당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業務報告 및 질문·답변
 - 김증, 증언 등 청취
 - 현지확인 실시(필요시)
 - 監查結果 강평 및 종료 선언

8) 監查日程 및 場所

委員會別	監查日程		對象部署	監查場所
	月 日	日 時		
總務委員會	94. 12. 5	10:00	① 總務局	區廳 3層 企劃狀況室
	12. 6	10:00	② 財務局	
	12. 7	10:00	③ 市民局	
	12. 8	10:00	④ 3室, 保健所	
總務委員會	94. 12. 9	10:00	⑤ 各課 조별 감사 및 洞事務所	
	12. 10	10:00	⑥ "	
都市建設委員會	12. 5	10:00	① 住宅課, 都市整備課, 地籍課	신축청사 3층 회의실
	12. 6	10:00	② 地域交通課, 建築課, 建設管理課	
	12. 7	10:00	③ 下水課, 公園綠地課, 土木課	
	12. 8	10:00	④ 各課 個別監查 및 現場確認	
	12. 9	10:00	⑤ "	
	12. 10	10:00	⑥ 現場確認 및 洞事務所	
議會運營委員會	12. 11	10:00	① 議會事務局	議會 小會議室

◆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案 ◆

- 1) 監查日時 : 1994. 12. 11(日)
- 2) 監查對象 部署 : 議會事務局
- 3) 監查場所 : 議會 小會議室(3層)

4) 部署別 監査事項

部署別	監査事項	備考
議政係	○ 홍보활동비 적정 집행 여부에 관하여 ○ 의회기념품 제작 및 배부 ○ 의원교육 연구비 집행사항	
議事係	○ 의회 회의소집 일시 홍보에 관하여	
議案係	○ 의안 처리부 관리에 관하여 ○ 안건 접수 처리에 관하여	

4) 是正要求 및 建議事項

가)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事項	備考
議政係	○ 홍보활동비 적정 집행 여부에 관하여 - 을지연습 실시요원 격려금을 홍보활동비에서 지출하였는데 격려금은 업무집행 성격상 기관운영 공적경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임. ○ 의회기념품 제작 및 배부에 대하여 - 의회기념품의 증정이 형평에 맞게 전달되어야 할 것임. ○ 의원교육 연구비 집행 - 의원연구비 지원금을 등록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부대과정 운영비등 기타까지 지원보조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議事係	○ 의회 회의소집 일시 홍보 - 관내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의회 회의소집 일시를 홍보하여야 할 것임.	

部 署 別	是 正 及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議 案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議案 處理部 관리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처리부는 영구 보존해야 할 중요한 서류로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의안처리부는 1년 회기 단위로 편철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 의안처리부의 1년 회기 마지막장에 案件別, 發議者別, 處理委員會別로 집계표를 작성 부착하여 누구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전접수 처리사항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議事日程이 확정된 후 예견치 못한 발의안건 및 區廳長 제출안건이 있어 심의하기가 애로가 있는 바 의사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접수되는 안건은 접수하되 차기 회기에 처리하도록 해야 됨(區廳에 공문으로 통보). 	

나) 建 議 事 項

部 署 別	建 議 事 項	備 考
議 政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서의 용지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서에 사용하는 용지를 갱지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 지. 	
議 事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기사의 피복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議會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속기사의 제복을 품위있는 옷으로 교체할 용의는(피복비 부족액은 타비목을 전용하여 사용). ○ 會議錄 번문에 필요한 속기사용 컴퓨터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會議錄 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속기 사용 컴퓨터 4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 지. 	

◆ 1995年度豫算案 ◆

1994. 11. 15. 西大門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1995年度西大門區豫算案中 議會運營委員會에 심사회부된 소관 豫算案에 대하여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94. 12. 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區廳長이 제출한 豫算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음.

1) 豫算案의 規模

가) 一般會計

○ 區全體 歲入豫算

(단위: 천원)

總 歲入豫算額	地 方 稅	經常的 稅外收入	臨時的 稅外收入	調整交付金
74,108,808	16,730,248	8,255,021	12,763,997	30,487,000

國庫補助金	市費補助金	指定 財源金	'94年度 最終豫算案	增減(%)
1,205,357	1,029,591	3,637,594	69,842,005	4,226,803(6.1)

○ 議會運營委員會 所管 歲出豫算

(단위: 천원)

總 歲入豫算額	議事運營	議政活動	'94歲入豫算費	增減(%)
1,650,456	1,248,216	402,240	1,041,000	609,456(58.54%)

2) 審查內容

가) 主要討論要旨

○ 홍보활동비

- 區議員은 무보수 명예직임으로 각종 행사장등 議員弘報 活動에 따른 홍보 활동비를 증액해야 할 것이다.
- 指針, 基準 및 비목이 없는 豫算으로 '94기준으로 편성함이 어떠한가?

○ 議會制度 比較 視察費

- '94예산 삭감은 議員活動의 제약이 된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증액 필요성이 있다.

○ 議員 教育 研究費

- 初代議員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95年度 2代議員을 위해서도 專門教育을 위한 예산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본다.

- 연세대 위탁교육비는 480萬원인데 기 시행한 豫算도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 豫算編成 지침이 없는 비목으로 단가계상에 어려움이 있다.

3) 參照內容

가) 歲出調整

총삭감액 : 없음

총 증 액 : 60,000,000원

나) 修正要旨

豫算削減內譯	豫算增額內譯
	○ 議政活動 - 弘報活動費 : 5,000,000원 - 議會制度比較視察費 : 11,500,000원 - 議員教育研究費 : 43,500,000원
삭감계 :	증액계 : 60,000,000원

4) 審査結果

在席委員 9名 중 전원 滿場一致로 區廳長이 제출한 議會運營委員會 所管豫算案을 위와 같이 수정가결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상정기로 의결하였음.

總務委員會

第29回 定期會 휴회기간중 개최된 總務委員會는 區行政事務監查(6日) 1995年度

西大門區豫算案 및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案 外 10件의 議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 1994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

- 1) 監查期間 : 1994. 12. 5~12. 10(6일간)
- 2) 監查對象 部署 : 3실, 3국(15과), 보건소(3과), 5개 동사무소

室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保健所	洞
文化公報室	總務課	財務課	社會福祉課	保健行政課	峴底洞
監查室	企劃豫算課	稅務1課	家庭福祉課	保健指導課	北阿峴2洞
市民奉仕室	國民運動支援課	稅務2課	衛生課	醫藥課	延禧2洞
	生活體育課	土地管理課	產業課		弘恩1洞
	民防衛課		環境課		南加佐1洞
			清掃課		

- 3) 監查場所 : 西大門區廳 企劃狀況室(3層)
- 4) 監查日程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2/10(토)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3室 및 保健所	各課 個別監查	洞事務所 및 講評

- 5) 부서별 감사사항

部署別	監查事項	備考
文化公報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악봉수대 복원공사가 기간내에 완공되었는지 여부 ○ 2億원의 工事費를 투입하여 복원된 봉수대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 및 관리 ○ '94年度 文化會館 管理費 總額과 대비 '95年度 豫算要求額의 증가된 이유와 文化體育會館에서 사용하는 수도물 사용료를 文化會館에서 부담하는지의 여부 	

部 署 別	監 查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區報發刊時 년초에 구보표지를 구입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 出版社, 印刷所등 지도감독 사항 ○ 구정보 모니터 요원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하여 ○ 불법 음란물 단속사항 	
監 查 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건물의 옥탑, 물탱크등 옥상시설 무질서 정비사항 ○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사항 ○ 창천동 포장마차 심야영업행위 단속사항(통행불편, 인근 주민 불편등) ○ 街飯店 음식조리 및 판매행위 근절(신촌역앞 버스정류장)대책에 대한 사항 ○ 鞍山에 설치된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새벽운동 주민에 의한 시설물 훼손 우려) ○ 각종 비리 척결에 관하여 ○ 징계의결 요구사항에 관하여 ○ '92~'94年度 洞行政 綜合監查 結果 內容 및 措置 事項 	
市民奉仕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문서 관리 상태 ○ 시민봉사실 운영상태 점검 ○ 행정정보 공개 운영상태에 관하여 ○ 호적업무 처리사항 	
總 務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소규모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 차량운행 일지 관리 및 보험가입, 운전자 교육에 관하여 ○ 구청사 증축에 관하여 ○ 청사내외 관리 및 당·숙직 근무현황 	

部 署 別	監 查 事 項	備 考
總 務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위원회 운영사항 ○ 퇴임대상 洞長의 복무점검 사항 ○ 방법원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내역 ○ 人事管理의 공정성 및 공무원 비위문책 사항 ○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 住民登錄證 재발급 수수료, 과태료 인상에 따른 민원발생 및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조치 내역 ○ 西大門區區民 大賞 선정기준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 名譽公務員制 운영사항에 대하여 ○ 公明選舉를 위한 감시반 모집방법 ○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자의 기준과 적격성 여부 	
企 劃 豫 算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機關長 업무추진비의 분산편성의 근거 ○ 사고이월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 市長, 區廳長의 특별중점사항의 이해조치 여부 ○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國 民 運 動 支 援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별 지원 현황 ○ 각종 委員會의 委員선정의 방법 ○ 國民運動支援課의 '95년도 예산의 감소 사유 ○ 보조금 지급 내역 ○ 관변단체 회원의 포상관계 	
生 活 體 育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업의 학교와 거리제한 관계에 대하여 ○ 우정스포츠 지하수 수질검사 및 골프연습장 민원 사항에 관하여 ○ 체육회관 운영상의 문제점 ○ 생활체육교실 운영사항 	

部 署 別	監 査 事 項	備 考
民 防 衛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소화전 현황 ○ 민방위날 훈련 활용 계획 ○ 민방위 창설기념 표창 대상자 선정 방법 ○ 공동정호 활용 및 수질검사 상태 ○ 통대장 현황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상태 ○ 민방위 신고위반 및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사항 	
財 務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예금 중 주차장特別會計 8億원의 예금사항 ○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타금융기관과의 예금이자 차이(비율) 및 이자수입과 예금구좌에 관하여 ○ 입찰예정가격 누설방지에 관한 사항 ○ 매각시 재산평가 여부 ○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 ○ '94 會計年度 豫算 미집행에 관하여(예비비 및 계속비) ○ 國·公有地 재산관리 및 소송 수행에 대하여 ○ 수의계약 사유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고 한도 ○ '93년도 정부물품 구매서류 일체(세금계산서, 계약서) ○ 체육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 실적에 대하여 ○ 공사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 및 지출증빙서 관리 현황 	
稅 務 1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과세 적정 여부 ○ 區稅 체납자 관리 ○ 고액체납자 유형별 현황 및 시효결손 처분 내역 ○ '94년 재산세 고액 체납자 현황 	

部 署 別	監 查 事 項	備 考
	○ 공평과세로 세수증대 방안	
稅 務 2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입증 변상금과 과태료의 체납건수와 금액 ○ 과년도 稅外收入 목표 및 징수사항 ○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재산세 부과 차이여부 ○ 세외수입계 설치로 인한 세수입 기대효과 ○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의 부진사항 ○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추적 실태 	
土 地 管 理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실적 ○ 부동산 등기 해태자 과태료 부과사항 ○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94年度 개별이익 부담금 부과 징수 ○ 부동산 중개업 각종 회비 납부상황과 支會의 예산 내역 	
社 會 福 祉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의 적용대상 사업자 규모 ○ 의료보험 책정기준 ○ 거택보호자 구호실시 및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 고용촉진 훈련생 비용지급 및 훈련실적에 대하여 ○ 취로사업 집행에 대하여 ○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복장애인 및 장애인 현황 ○ 의료보험조합 감사결과 조치사항 ○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법정지원단체 적정여부 	
家 庭 福 祉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노승차권 동별 배부내역 및 집행내역 ○ 노령수당 지급내역 ○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흥은2동 공부방 신축에 관하여 	

部署別	監 查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알뜰시장 운영사항 ○ 구립유아원 운영사항 ○ 가정의료준칙 준수사항 	
衛 生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취소 및 시정지시된 업소 현황 ○ 위생업소 종사자의 保健證 소지여부 ○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의 위생업소 허가사항 ○ 쓰레기종량제 실시 확대에 따른 위생업소의 음식 찌꺼기 활용계획 ○ 위생업소 신규허가 및 변경신청 처리사항 ○ 식품업소 신고사항 변경 미이행업소 및 기타법규 위반 사항 행정처분 내용 	
產 業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감시 실적에 관하여 ○ 조건부 등록공장 현황 ○ 연탁비축자금 미회수 금액 여부 ○ 실내 보관하고 있는 L.P가스 용기의 안전관리 상태 ○ 공산품 품질관리 실효성 여부 ○ 도시가스 공사 감독사항 ○ 석유용기류 15ℓ를 석유판매소에서 사용함으로써의 문제점 	
環 境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 개선사항 ○ 무허가 세차장 관리 내역 ○ 허가업소를 제외한 공해업소 단속에 관하여 	
清 掃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 급여 및 자녀학자금 지급에 대하여 ○ 각 동별 수거식 화장실 및 수세식 화장실 현황 ○ 분노 대행업체 지도 점검사항 ○ 종량제 이후 텃 근절대책 	

部署別	監 查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가좌2동 하수구 직결변소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 '95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분리수거 및 대형 쓰레기 처리대책 ○ 하수구와 직결된 불량 화장실 실태에 대하여 		
保 健 所	保健行政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수첩 및 건강진단서 발급에 관하여 ○ 건강진단서수첩 미수령자에 대한 대책 	
	醫 藥 課	○ 보건소 이용 환자에 대한 진찰권 교부 여부	
	保健指導課	○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한 주민보건 증진사업 계획 여부	
峴 底 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個洞 민원처리에 대한 재량권 확보 ○ 동사무소 인력 수급에 관하여 ○ 각동 통합공과금계 신설 사항 ○ 금화시민아파트 11개동 공가의 관리와 철거시행 시기 		
北 阿 峴 2 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소규모 사업 집행내역 ○ 공문서 통제의 필요성 관하여 		
南 加 佐 1 洞	○ 남가좌1동 지하사무실 사용의 적정 여부		

6) 是正要求 및 建議事項

가)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部署別	是 正 及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文化公報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 모니터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정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려면 예우와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임. ○ 불법 음란물 단속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폐 음란 및 폭력물의 확산으로 청소년 비행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部署別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備考
監 查 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리 척결에 관하여 - 감사업무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강화되 제도상의 문제점과 자료를 심층분석하고 취약분야를 중점 監査하여 區民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함. 	
市民奉仕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行政情報 공개 운영 실정에 대하여 - 행정정보 공개 운영이 홍보 부족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바 地域新聞이나 반상회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임. 	
總 務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사업의 집행상 문제점 - 소규모사업이 單價契約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공사하자 발생시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民願이 발생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이 洞에서 직접 공사발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차량운행 일지 관리사항 - 차량일지의 기재누락(출발, 도착시간)등 관리가 미흡한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서대문구 구민대상 선정기준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 서대문 구민대상 선정기준이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었는데 條例나 規則을 제정하여 시상토록 하여야 할 것임. 	
企 劃 豫 算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진행 사항에 대하여 - 행정소송이나 심판에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임. 	
國 民 運 動 支 援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官邊團體 회원의 포상에 관하여 -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함. 	

部署別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備 考
生活體育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교실의 운영사항 - 예산투입에 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民防衛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교육 불참자의 과태료 부과사항 - 현행 제도가 실무면에서 연구할 문제이나 업무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담당자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불참 처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財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 - 증지판매를 시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청 상조회에서 운영하여야 할 것임. 	
土地管理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기 해태자 과태료 징수율 저조 - 등기 해태자 과태료 징수율이 타세금에 비해 저조한 편인데 납부독촉 및 채권확보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社會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의료보험조합 감사결과 조치 사항 미흡 - 의료보험조합의 형식적인 감사로 취약분야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할 것임. ○ 생활보호 대상자 중 중복 장애자에 대한 사항 - '94年度 생활보호 대상자 중 중복장애인(1級~2級) 40名에 960萬원은 '92~'94년까지, 서대문관내 중복 장애인은 總 7名으로 예산집행이 끝났는데 '95年度에는 60名으로 1,400萬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조사와 중복장애인 명단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함.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備考
社會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로사업 집행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취로노임사업비로 58,277名에 8億 7,400萬원을 책정 집행하였으나 10月 31日 현재 各洞의 精確한 취로실적, 병단확보가 精理되어 있지 않아 實質적인 人력과 예산의 불일치 및 오차가 보고자료와 상이한 점이 있는데 취로노임사업비의 人력운영과 예산집행을 보다 精確한 자료에 의해서 철저한 管理를 하여야 함. 	
家庭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알뜰시장 운영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알뜰시장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방법상 문제점이 있으니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토록 하고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의견수렴 검토후 제도개선해야 할 것임. ○ 敬老乘車券 동별 배부내역 및 집행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65歲 이상 경노승차권 현황은 18,200名에 17萬 2,200枚로 되어 있으나 人력현황 및 실제 사용량과 문서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분기별로 각 동과 협력하여 문서처리에 대한 서류를 精確히 기재하고, 신청주의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대상자에게 충분한 혜택이 結여되어 있으니 담당 職員으로부터 현주소 확인과 받고자 하는 경노승차권 사용신청에 사전승락여부를 확인한 후 월별 刊覽지불해야 함. 	
衛生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종량제 실시확대에 따른 위생업소의 음식찌꺼기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준의 위생업소에 음식찌꺼기 발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쓰레기 양도 줄이고 비료로도 사용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함. 	

部署別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備 考
産 業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공사 감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공사가 各洞에 많이 발주되어 있는데 가스관 연결공사 및 매설시 현장입회 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 ○ 석유용기류 15ℓ를 석유판매소에서 사용함으로써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판매업소 대부분이 15ℓ의 용기류를 사용함으로써 住民의 가격혼란과 용량시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 석유 판매소 담합에 의한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바, 법정용기 20ℓ를 사용하므로써 도량형의 지정수치에 알맞게 용기를 사용토록하여 용기시비를 차단하여야 하며, 가격 및 용량조작 수고비등을 차단하는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함. 	
環 境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세차장 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식당의 세차행위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세차행위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清 掃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 이후 텃근절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청소원의 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비리척결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함. 	
保 健 行 政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 수첩 미교부자에 대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첩미교부자에 대한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건강진단서 수첩을 미교부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部署別	是正 및 處理要求	備考
醫藥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이용환자에 대한 진찰권을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부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진찰권을 교부하여 의료보험증을 분실하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保健指導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 주민보건증진 사업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특수사업을 개발하여 '95년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임. 	
總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동 統合公課金係의 신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10. 1. 각동 통합공과금 업무가 한전 및 도시가스사업체등으로 이관 시행함에 따라 시민을 위한 民主行政 원리를 벗어나 수도, 전기에 대한 신고문의 사항등 民願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제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統合公課金係 신설 운영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峴底洞 (住宅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가 금화시민아파트 관리와 철거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화시민아파트 11個棟은 공가(빈집)로 되어 있어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고 금년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철거하기로 되었는데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 범죄 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바, 도심미관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즉시 철거조치 또는 대책 강구해야 할 것임. 	

나) 건의사항

部 署 別	建 議 事 項	備 考
總 務 課	○ 市民奉仕室 戶籍係 직원 부족으로 인하여 호적부 관리 및 호적정리 발급이 지연되어 民願이 야기되고 있는 바, 人事를 관리하는 총무과는 타부서에 우선하여 부족인원을 충원하여 줄 것을 건의함.	
企 劃 豫 算 課	○ 各洞事務所의 컴퓨터를 386에서 486용량으로 교체한다는데 386용량에 하드웨어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의 컴퓨터를 계속 사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건의함. ○ 사고이월 과다발생과 追更豫算 편성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업무는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할 것을 건의함.	
財 務 課	○ 구청내 상업은행의 현금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원경찰을 상주시킬 것을 건의함.	
稅 務 2 課	○ 조세부과 징수의 간소화와 세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 할 것을 건의함.	
峴 底 洞 (稅 務 課)	○ 峴底洞 주민이 447世帶 2,812名에 동직원이 정원 19名인데 현원 16名으로 동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인력수급에 대한 조정을 건의함.	

◆ 1995年度豫算案 ◆

1) 提 案

이 承認案은 '94. 11. 18.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1, 2次 總務委員會(94. 12. 12~12. 13)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豫算은 일회계년도에 있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支出의 예산액 또는 계획안이며 地方自治團體가 수행하여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地方自治法 第118條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30條의2 規定에 의거 '95年度 豫算案을 편성하여 西大門區議會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主要骨子

- 一般會計(總務委員會 소관)

(單位：千원)

總歲入豫算額	機關運營	企劃管理	公報管理	內務行政	洞行政運營
57,845,572	15,297,203	595,482	1,274,119	4,637,321	15,367,795

會計및財産管理	一般社會福祉	保健衛生管理	環境管理	쓰레기處理	糞尿處理
1,329,028	5,387,476	2,316,762	61,340	9,443,648	551,446

地域經濟管理	民防衛管理	豫備費	'94歲出豫算	增減(%)
400,871	237,279	945,802	54,616,907	3,222,665(5.91)

- 特別會計

- 醫療保護基金

(單位：千원)

歲 入			歲 出			前年度 對比	
計	事業外 收 入	補助金	計	醫療保護 管 理	醫療保護 事 業	豫算額	%
811,746	13,466	798,280	811,746	3,840	807,906	1,068,849	(△257,103 △24.05%)

－ 새마을 所得 支援事業

歲 入				歲 出	前年度 對比		備考
計	移越金	融資金回收	雜收入	融資金	豫算額	%	
219,513	53,902	163,111	2,500	219,513	156,615	(62,898) 40.16%	

2) 審査內容

가) '95年度 一般會計 豫算案 修正內譯

區分	歲 入			歲 出		總務委員會所管歲出豫算	
	總歲入	純歲計剩餘金	債務負擔	總歲出	內務行政費 (庶務管理)	總 歲 出	內務行政費
原 案	74,108,808	8,882,447	—	74,108,808	30,000	57,845,572	30,000
修 正 案	74,948,808	9,722,447	(916,000)	74,948,808 채916,000	870,000	58,685,572	870,000
增 減	840,000	840,000	(916,000)	840,000	840,000	840,000	840,000
%	1.13	9.45		1.13	290.00	1.45	290.00

3) 審査結果

1994. 12. 13. 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된 '95年度豫算案에 대한修正案을 原案과 함께 심사한 결과 區廳長이 제출한 '95年度수정예산안을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 가결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위임할 것을 의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案은 '94. 11. 7.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서울特別市西大門區統·班設置條例 및 內務部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指針”에 의거 班長에게 보상금(상여금)으로 산정된 年 25,000원 보상금을 보상품으로 전환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고자 함.

나) 主要骨子

班長에게 지급할 수 있는 “賞與金”을 “補償金 또는 補償品”으로 변경하여 반장에게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문화 시키고자 함.

2) 審査內容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現 條例에 補償金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보상품 지급은 부당하지 않은가? 물품 구입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현금지급 보다는 合理的인 방법이라 사료되며, 물품선정 구매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의심받지 않도록 품목선정등 지급에 徹底를 기하겠음.

○ 討論要旨

鄭田村委員：年 25,000원을 2회에 현금(1회：12,500원)으로 지급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임으로 보상품 지급은 마땅한 것임.

3) 審査結果

在席委員 10명 전원 滿場一致로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案은 '94. 11. 15.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母子保健法에 의거 1992年 4月 20日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 條例를 개정 피임약제 및 기구보금 수수료를 징수 재활용하였으나 서울시 동수수료 징수 지침 폐지(의약65321-3057)와 人口增加率이 1%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향

후 인구의 양적사업에서 질적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등을 規定한 條例 第2條 第2項 2號 및 第4條 第1項을 삭제함.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手數料徵收 폐지는 재정수입 감소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이에 대책은?	年間 29萬원 정도로 自治區 재정 규모면에서 영향이 없을 줄 압니다.

3) 審査結果

在席委員 10名 전원 滿場一致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體育道場과隣接한場所의範圍에 관한 條例廢止條例案 ◆

1) 提 案

이 廢止案은 '94. 11. 21.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상정하였으며, 廢止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廢止理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法律(94. 1. 7 法律 第4719號) 및 同法施行令(94. 6. 17 大統領令 第1428號) 施行規則(94. 6. 17. 文化體育部令 第12號) 전면개정시 “미성년자보호”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의 근거로 制定된 本條例를 폐지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體育道場과隣接한場所의範圍에 관한조례를 폐지함.

2) 審査內譯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現 條 例 에 의 한 民 願 事 例 및 條 例 가 폐 지 될 경 우 기 존 당 구 장 영 업 의 抵 觸 與 否 ?</p>	<p>당구장이 유기장法에서 체육시설로 구분되고 교육위원에서 관장하는 學校保健法에 저촉되어 명지대등 50m범위에 8個所가 있으나, 96年度까지 자진이전 행정지도하고 있으며(11個中 3個所이전 하였음) 廢止될 경우 기존업체는 저촉받지는 않게 됨.</p>

○ 討 論 要 旨

上位法이 94. 1. 7 및 94. 6. 17 전문 개정되고 서울시 指針이 '94年度 9月頃에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西大門區條例는 아직까지 존속되어 區民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區民의 福祉行政 具現을 위해서는 서울시지침 시달전이라도 상위법 내에서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審 查 結 果

在席委員 전원 滿場一致로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兒童委員協議會設置및運營등에관한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1994. 11. 18 區廳長이 提出한 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兒童福祉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兒童委員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職務遂行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여 아동위원회협의회 設置·運營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協議會 構成 및 任期(案 第2條, 第4條)

- 協議會의 기능을 정함(案 第3條)
- 協議會의 회의 및 議決方法(案 第6條)
- 協議會 委員의 수당 및 경비지급(案 第8條)

2) 審査內容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 鄭田村委員：區산하 모든 자생단체 임원의 임기가 전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條例案 第4條 會長·副會長 및 委員의 임기를 2年으로 수정할 수 있겠는가?</p>	<p>○ 家庭福祉課長：서울시 指針에 의해서 任員의 임기는 3年으로 하였으나, 우리구 자생단체 임원의 임기와 맞도록 2年으로 수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金源珠委員：현재 동단위 아동위원수 및 활동내용, 수반예산과 條例 制定 이유?</p>	<p>○ 각 洞 2名씩 總 44名이 위촉되어 있고 兒童委員의 활동 내용은 각동별로 이웃돕기, 청소년 선도사업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94. 推進實績은 거의 없으며 委員會活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運營豫算으로는 간담회 및 행사격려비 등으로 4,296千원이 계상되었고, 本條例를 내무부지침(통·폐합)에 의거 임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p>
<p>○ 全聖章委員：'95年度 4대선거와 연관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p> <p>현재 아동위원활동의 효과 정도 및 우리구민 성년 모두가 兒童委員이 되어서 불량아 및 청소년을 선도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p>	<p>○ 한밤중에 불량아 및 靑少年을 선도하고 福祉施設 및 일선위문을 하는 것으로 임원활동이 활성화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선거와는 무관하다. 또한 우리구 성년 모두가 불량 청소년등을 선도하도록 하자는 제</p>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안은 인륜관계 내지 도덕적 관념에서 너무도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만, 關聯法規 취지 및 그 한계상 區民의 성년 모두를 회원으로 委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林在鮮委員長：委員의 임기를 3年에서 2年으로 수정하려면 上位法에 저촉되지는 않겠습니까?	○ 法令에는 會員의 任期가 規定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指針에 3年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도 3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3年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關係法上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會員의 임기는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修正要旨

第4條(會長, 副議長 및 委員의 임기) 중 “각각 3年”을 “각각 2年”으로 수정함.

3) 審査結果

在席委員 7名 전원 滿場一致로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條例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94. 11. 17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상정하였으며,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改正理由

廢棄物 手數料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종량제 규격 봉투의 종류 및 제작 봉투종류에 따른 판매가격등을 新設 또는 改正하고,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의

종류, 수수료 및 재활용 가능 품목을 종류 및 배출요령을 規定하는 등 法規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改正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근거 및 종류별 규격봉투의 수수료 결정(안 제11조)
- 규격봉투의 종류별 제작·관리 및 판매소의 지정·해제,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規定(안 제14조 내지 제22조)
- 手數料賦課·徵收 등 手數料 감면에 관한 規定(안 제23조 내지 제27조)
-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따른 절차 및 서식을 規定(안 제29조 내지 제33조)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金源珠委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거용 20ℓ 봉투를 270원으로 정한 것은 他區에 비해 주민부담액이 많다고 사료되고 판매업소허가 기준과 지정절차는? ○ 區條例에 판매이윤이 9%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 구와 財政自立도가 비슷한 區보다 봉투가격이 비싼이유? ○ 施行日 시점에서 條例 制定이 지연되어 시행상의 문제점과 審議委員會에 區議員의 포함 여부는? 	<p>清掃課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區(麻浦, 恩平)와 비교하여 가격을 정하였으며 청소비 자립도 31%에서 40% 확립하여 2,000年度까지 100%수준 달성하도록 하고 판매업소는 각동별로 신중히 선정하고 있음. ○ 各區 “6%수준”과 비교하여 가격을 정하였고 봉투대금은 직영운영인 경우 저렴하며, 江南, 松坡區등은 업자수지면에서 고가 산정하였으나 우리 구는 인근구와는 형평 유지하고 있음. ○ 현재 統別 1個所 기준으로 385個 판매업소 지정 및 표지판을 배부하였고, 판매이윤의 폭은 신축적으로 규정하고 審議委員會에 區議員 참여를 고려하겠음.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全聖章委員</p> <p>○ 공공봉투 배급 및 공과금 부과시 오물수거료 부과 문제는?</p>	<p>○ 統·班長 회의 등 각동별로 책임운영 및 부작용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統合公課金에서 수수료부과는 제외됨.</p>
<p>具滋億委員</p> <p>○ 쓰레기봉투 위조 부정 유통대책 및 전입주민의 타구 쓰레기 봉투 사용가능 여부?</p>	<p>○ 刑法上 공무집행 방해죄로써 주민신고제, 자율감시, 청소원 발견 등으로 판매업소 지정 및 가정 방문판매는 불가할 것임.</p>

○ 討論要旨

이자수입 손실 방지를 위해서 대금 收納期間을 15日에서 10日로 하는 방안은 시행이후 문제점 보완 필요시 재검토토록 함.

3) 審査結果

在席委員 8名 전원 滿場一致로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減免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94. 11. 21 區廳長이 제출한 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94年度 감면시한이 만료된 條例의 시한 연장을 再檢討하고 現行 條例運營上 그 사안에 따라 개별조례로 制定 運營되고 있는 모든 감면 조례를 통폐합하여 自治區 단일조례로 制定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감면 目的에 따라 각각 個別的으로 制定되어 있는 條例를 自治區 감면 조례로 통폐합 운영함.

13개 감면조례 55개 조문 → 단일자치구 감면조례 5장 16개 조문 부칙 3개

조문

- 제4장 제7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의 면제기준 완화함
- 제5장 제10조에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의 범위 규정을 완화함.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宗教團體 시설등 區 전체 대상물건을 종 합해서 統廢合 條例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宗教團體 시설 및 학교등 關係法規에서 制定된 것 이외의 모든 대상 물건은 전 부 포함하였음.

3) 審査結果

在席委員 7명 전원 滿場一致로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한 原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經營投資事業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

1) 提 案

이 條例案은 94. 11. 21 區廳長이 제출한 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上程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서울特別市 西大門區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거 經營投資事業基金을 설치하고 運用·관리하여 區民福利增進에 기여 하고자함.

나) 主要骨子

- 서울特別市 西大門區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의 財源으로 기금조성(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는 區民의 福利增進을 위한 세입으로 함.(안 제4조)
- 기금의 運用·管理는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지정함(안 제5조)
- 基金運用·管理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한 經營投資事業審議委員會 구성 (안 제6조)
- 投資事業의 선정과 經營方法은 委員會의 議決과 區議會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7조)

2) 質疑 및 答辯 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金源珠委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在 西大門區 財政 여건상 條例制定 運用 必要性이 있는가? ○ 經營投資 事業의 예? ○ 經營投資事業계획은 계속 中장기 事業으로 추진하는가? ○ 區民福利 增進事業은 너무 포괄적인 데 세부사업은 명시할 수 없는가? ○ 우리구 財政自立運營上 문제점 및 '95 예정 基金은? 	<p>企劃豫算課長</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必要性은 벌써부터 인정하고 있었으며 현재 북아현 시민아파트 및 대현2지구 재개발에 따른 270億원 정도 조성될 수 있음. ○ 公共廳舍(區議會등)增築하여 잔여 사무실 임대 및 주민주차난 해소등 市民生活 便益施設을 제공할 수 있음. ○ 稅源이 꾸준히 확보될 수 있다면 中장기 계획 추진이 바람직하여 현재는 당면현안 문제를 效果的으로 해결하고자 함. ○ 基金의 용도는 條例 第4條 區民의 福利增進을 위해 運用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타용도 運用은 불가함. ○ 세외수입, 特殊事業基金에서 경영함으로써, 평시 財政運用에는 영향이 없으며 '95년에는 약 270億원이 예상됨.

3) 審査結果

在席委員 8名 전원 만장일치로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한 原案을 可決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案은 94. 11. 21 區廳長이 提出한 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上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156條 改正(93. 9. 23)으로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規定을 보완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基金出納命令官을 基金運用官으로 改正함(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 第5條 第2項 중 “基金出納命令官은 담당과장(산업과장)으로 하고”를 “基金運用官은 市民局長으로 하고”로 改正하고, 第5條 第3項 중 “基金出納命令官에게”를 “基金運用官에게”로 개정함.

2) 審査結果

在席委員 7名 전원 滿場一致로 區廳長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案은 94. 11. 21 區廳長이 제출한 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上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16條 改正(93. 9. 23)으로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의 관직명 改正과 서울特別市西大門區事務分掌規則의 改正에 따른 직제개편(가스계가 연료계로 통합)에 의거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基金管理公務員의 지정(안 제5조)
(현행)“基金出納命令官 産業課長”과 “基金出納公務員 가스계장”
(개정안)“基金運用官 市民局長”과 “基金出納員 연료계장”

2) 審査結果

在席委員 7名 전원 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을 가결하였음.

◆ 1995年度區有財產管理計劃承認案 ◆

1) 提 案

이 承認案은 94. 11. 21 區廳長이 提出한 案으로 第3次 總務委員會(94. 12. 23)에 上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77條(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區有財產管理條例 第36條(공유 재산관리 조례) 地方自治法 第58條(의안의 발의)의 規定에 의하여 1995年度 우리區 區有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함.

나) 主要骨子

○ 區有財產(土地) 賣却

總財產現況 (’94. 10. 31 현재)		賣 却 對 象		매각대상재산의 개별지가총액(천원)	비 고
필 지	면적(m ²)	필 지	면적(m ²)		
505	47,277.24	6	1,060.5	956,344	

○ 區有財產 無償使用 貸付

物 件 地	社用面積	名 稱	代 表 者	申 請 期 間	備 考
서대문구 연희동 168-6	60.75m ²	서대문구 갑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박 준 수	’95. 1. 1~ ’95. 12. 31	무상 사용
		서대문구 을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양 동 관	“	“
“	81.00m 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협의회장 백 영 기	“	“

2)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具滋億委員</p> <p>○ 北阿峴洞 상가아파트에 구유지상 건축물의 부당성 및 사용료 징수는?</p>	<p>財務課長</p> <p>○ 70年度 시민아파트 建立 당시 고지대 주민의 생활불편해소 차원 서울시에서 건축하였고 앞으로 사용료 부과징수는 가능하나 '94. 9月 區有地로 변경되어 5年 소급은 어려움.</p>
<p>全聖章委員</p> <p>○ 매각시 民願의 소지는?</p>	<p>○ 시민아파트와 상가아파트 2개 조합이 연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입자에 대한 民願이 다소 있으나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시민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시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p>
<p>鄭日出委員</p> <p>○ 南加佐洞所在 구유지매각시 인접 지주에게 매각 방법은?</p>	<p>○ 인접 地主에게 합의토록 종용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여 지명경쟁 入札토록 하였으므로 民願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p>

3) 審査結果

在席委員 9名 전원 滿場一致로 西大門區廳長이 제출한 原案을 가결하였음.

都市建設委員會

第29回 定期會 休회중 개최된 都市建設委員會는 區行政事務監査(6日), 1995年度 豫算案 및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

- 1) 監査期間：1994. 12. 5(월)~12. 10(토) (6일간)
 2) 監査對象部署：都市整備局(5과), 建設局(4과), 5個 洞事務所

都市整備局	建設局	洞事務所	備考
주 택 과	건 설 관 리 과	연 회 3 동	
도 시 정 비 과	토 목 과	홍 은 2 동	
지 역 교 통 과	하 수 과	충 정 로 동	
지 적 과	공 원 녹 지 과	홍 은 3 동	
건 축 과		북 아 현 1 동	

3) 監査場所：서대문구청 회의실(신축건물3층)

4) 監査日程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2/10(토)
주 택 과	지역교통과	하 수 과	각과개별감사	각과개별감사	각과개별감사
도시정비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및 현장확인	및 현장확인	및 현장확인
지 적 과	건설관리과	토 목 과			

5) 部署別 監査事項

部署別	監査事項	備考
住宅課	○ 재건축에 대한 陳情 및 民願에 관한 사항 ○ 低所得者 전세자금 융자지원 은행 손실금에 대하여 ○ 주거환경 지구내 도로현황 및 도로건설 豫算執行 사항	

部 署 別	監 査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住居環境 개선사업 추진사항 ○ 홍제3, 4지구 再開發事業 변경신청건의 진척사항 ○ 都市整備局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여부 ○ 北阿峴洞 시민아파트 불법 입주자에 대한 대책 	
都市整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된 都市計劃 廢止에 관하여 ○ 高速化道路 주변의 주거생활권 파괴에 대한 용도변경 관계 ○ 西大門區 도시기본 계획안 진행 사항 ○ 不法廣告物 철거 및 대집행(정비)예상 집행 현황 ○ 廣告物 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地 籍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측량 監督에 관한 사항 ○ 토지 분할 및 地籍公社의 건물현황 측량에 대하여 ○ 訴訟으로 인한 法院의 적접 측량 사항 	
地域交通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정비업소 指導 단속사항 ○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한사항 ○ 주차단속원에 대한 각종수당 및 補償金에 대하여 ○ 마을버스 指導團東 및 행정처분 사항 ○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의한 불법주차 과잉단속 사항 ○ 道路案内標識板 통일 규격 정비 사항 ○ 주차구획선 설치규격 준수사항 ○ 民間委託 노상주차장 관리 및 유찰된 주차장의 관리사항 ○ 마을버스 운행노선 신청 民願에 관하여 	
建 築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豫算을 전년도 보다 대폭 감축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 건축 심의에 대하여 ○ 건축과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 여부 ○ 허위조서(복명) 작성에 의한 認許可 처리 및 준공여부 	

部署別	監 查 事 項	備 考
	○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현황에 대하여	
建設管理課	○ 심야시간대의 포장마차 난립에 관한 대책 ○ '95豫算을 감소편성한 사유 ○ 도로점용료등 세외수입 賦課徵收에 관하여 ○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및 근절대책	
土 木 課	○ 주택가 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 도로굴착공사(가스, 상수도공사등) 및 모든 토목공사 관리 감독 사항 ○ 육교 안전도 문제 및 관리대책 ○ 미미예식장앞 가드레일 設置 이전에 관하여 ○ 유니목차량 運行에 관하여	
下 水 課	○ 하수도에 직결된 화장실에 대하여 ○ 하수도 노후관 교체사항 ○ 준설업체 운영에 관하여	
公園綠地課	○ 어린이공원 確保 및 管理 事項 ○ 가로수 消毒에 관하여 ○ 시설비 豫算의 적정 집행에 관하여	
弘 恩 2 洞	○ 洞別 주차단속 방안에 관하여	

6) 是正要求 및 建設事項

가)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部署別	是 正 및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都市整備課	○ 20年 이상된 都市計劃 廢止에 대하여 - 5개 폐지지역 외 76件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과감한 폐지 요망함. ○ 無許可 看板 4,275個에 대한 過怠料 賦課	

部 署 別	是 正 및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미부과 213,750,000원에 대하여 검토 즉시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할 것. ○ 突出看板과 許可期間이 경과되어 방치되어 있는 廣告物의 조치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를 연기토록 하거나, 철거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조속히 허가조치 또는 철거토록 할 것. ○ 安全度 검사 미필 屋上 看板 조치 않고 放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간판은 설치 허가후 10日 이내에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이를 위반하고 있는 옥상 간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및 안전대책등을 강구할 것. ○ 廣告物 許可臺帳 管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 허가대장을 일괄성 없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철저한 대장관리로 무허가 간판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93年度 대집행비용 대납(98件 5,383,230원)에 대한 '94年度 미부과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은 체납금 징수절차에 의거 독촉공문이나 계고장을 발부한 후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아직 시행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철저히 부과 조치하고 처리결과 보고 및 區稅(체납금)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94年度 대집행비용 징수, 영천동 227번지 김선옥치과의 95件的 대집행비용 5,617,490원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5. 23 적발 행정 대집행 철거후 전·후반기 고지서를 발부하여 '94. 12. 20일 고지 12. 31일까지 납부토록 독려할 것. 	

部 署 別	是 正 및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期別 廣告物 대집행 이행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고지는 당해년도에 고지토록 담당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不法 廣告物 整備豫算 內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사업계획 미수립 시행으로 인하여 豫算이 낭비되고 있는 바, 연간 事業施行計劃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地 籍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籍 測量 監督 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도로 개설시 6m도로가 5m남짓한데 측량을 왜 이렇게 하는가? 지적과는 대한지적측량공사 및 토목과와 협조하여 規定에 맞는 6m도로가 되도록 일괄성 있는 측량을 하도록 할 것. 	
地 域 交 通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車團束의 手當 支給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40萬원씩 洞事務所에 주고 있는 주차단속 수당과 단속실적이 우수한 洞에 20萬원씩을 3個洞에 시상하고 있어, 주차단속을 무차별 실시하고 있는 바, 공무집행의 일환인 주차단속에 별도의 수당지급은 부당함. ○ 路上駐車場 不當料金 徵收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진상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주차 면수의 구획선을 임의 설치하여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임의로 설치한 주차구획선을 즉시 폐쇄 조치할 것. ○ 마을버스 團束 및 行政處分 事項, 위반 11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방송, 정원초과, 거스름돈 미준비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이 요구됨. ○ 裏面道路 駐車區劃線 設置 기준 준수 공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동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공사에 구간마다 통일되지 못하고 정비 지연으로 이용 주민에게 	

部 署 別	是 正 及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p>많은 불편이 있는 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監督으로 주차구획선 설치 기준을 준수, 도심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이용시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 마을버스노선 申請 民願事項에 대하여</p> <p>- 현저동 마을버스 대표자 인장날인 취하 요구(날인불인정주장)과 관련한 운행노선(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소조치는 행정처분 절차상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완벽한 행정처분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 것임.</p> <p>○ 民間委託 路上 駐車場 關係</p> <p>- 독립문 주차장 주차구획선의 임의적으로 구획선을 설치하여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현장 담당 이명복과 유진상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현장 담당자 최진영, 최인수에 대한 조치 및 대책 강구해야 할 것임.</p> <p>- 有料駐車場 위탁 조정금액 관계에서 '93年 고액 낙찰이 '94年 저가 낙찰액은 동일인인 경우 저가 낙찰에 대한 해명 및 설득이 부족하고 '93~'94 동일인이 입찰하여 낙찰된 금액 차이가 많은 것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제도상 문제점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p>	
建設管理課	<p>○ 포장마차 난립</p> <p>- 포장마차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 거리질서가 혼잡한데 지속적인 단속으로 거리질서를 확립도록 할 것.</p> <p>○ 豫算編成을 前年度 보다 減少 編成한 사유</p>	

部 署 別	是 正 及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p>-40億원을 왜 적게 편성했는지와 住民의 생계수단 및 타부서와 달리 이해관계 民願이 많은 중요한 부서로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업무를 신중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토록해야 할 것임.</p> <p>○ 세외수입에 대하여</p> <p>-도로무단 점용단속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발사항이 누락없이 정확히 집행되었는지와 단속업무는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하고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 적발 즉시 과감히 시행해야 할 것임.</p> <p>○ 路上積置物 團束</p> <p>-강제수거물품이 보관증 없이 영치하고 있는데 보관증을 발급하여 보관할 것과 가능한한 수거한 물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p> <p>-생물인 경우에 보관증 부패가 우려되어 조치 곤란하므로 생물 영치는 가급적 피하도록 할 것.</p>	
住 宅 課	<p>○ 狀況板 製作費에 관하여</p> <p>- 2도를 20萬원씩에 한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함.</p> <p>○ 都市整備局 業務推進費</p> <p>-630萬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열심히 일한 성과가 있는가? 業務推進 실적이 있어야함.</p> <p>○ 低所得者 傳貰資金 融資支援 은행 손실금은?</p> <p>-'93年分 1,136萬원 손실과 '94年度에 15,625,000원이 책정된 이유와 미진한 사유</p>	
建 築 課	<p>○ 前年度 보다 豫算을 대폭 감소 책정한 사항</p> <p>-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며, 豫算을 충분히 편성하여 소신껏 집행 할 것.</p> <p>○ 建築 審議의 件</p>	

部署別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備考
	<p>-거울철에는 審議를 생략할 수 없는 지와 수당지급의 과다지출로 낭비성이 있음.</p> <p>○ 建築課 業務推進費에 관하여</p> <p>-개인지급이 충분하므로 철저한 단속을 할 것과 건축사조사 대행물의 위법 방지대책은 무엇인가?</p> <p>駐車場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대상건물 및 면적 현황과, 앞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양성화할 용의는 없는지?</p> <p>-미준공 건물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용검사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p> <p>○ 無斷 增築建物 與否</p> <p>1. 대현동 27-51 유효일</p> <p>- 4층 → 5층</p> <p>2. 대현동 104-56 손용록</p> <p>- 5층 → 6층</p> <p>136.46㎡ 무단 증축</p> <p>- 6층 → 7층</p> <p>거푸집 무단 증축사항에 대하여 '94. 11. 20일한 이행 강제 부담금 예고만 하였을 뿐 부과조치를 않고 있는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p> <p>○ 違法 建築物에 대하여</p> <p>-位 置 : 대현동 27-51</p> <p>-施工者 : 삼품(이성일)</p> <p>建築主 : 유효일</p> <p>-부당건축부분 : 지상 4층→5층(5층 위법 건축함)</p>	

部 署 別	是 正 및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p>-지상 5층→7층 2개층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사법에 의거 당국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개선할 것.</p>	
土 木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防道路 開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6m 도로가 못되는 곳이 있어(5m정도 되는 곳이 있음) 지적도대로(도시계획도로) 측량 規定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원칙적인 설계 및 공사 시행 요망. ○ 道路堀鑿 포장상황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種 工事로 이면도로 굴착후 포장이 허술한데 원래의 포장도로와 같이 완벽하게 포장될 수 있도록 道路 管理 監督(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道路 및 步道 工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초부터 시작한 18件 공사중(9건완료) 미완료 공사는 11月중에 공사를 완전히 끝내도록 요구함. ○ 陸橋 및 道路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교를 재점검하여 손잡이가 부식된 것은 재방청 도로를 해서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모든 工事實績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사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며,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함. ○ 人道 및 步道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各洞 골목에 있는 보도 블록을 조사하여 재 보수할 것을 요구함. ○ 금화터널 管理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의 점검과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것. 	

部署別	是正 및 處理 要求 事項	備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防道路 開設 確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加佐洞 135-4에서 144-386간 소방도로 폭 6m도 로가 실제로 5m밖에 안 되는 곳이 있는데 6m도로가 되어야 할 것임. - 도로 가운데 미철거 건물(보상완결건물) 남아 있어 조속히 철거하여 도로 준공이 되도록 할 것. ○ 道路굴착 복구확인(가스공사, 상수도공사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시 카트한 곳을 제거치 않고 덧씌우기등 부실복 구(포장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전 제거시키고 본 래의 도로를 만들어 놓을 것. ○ 陸橋管理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국교, 세림병원앞 육교 철거비용이 1,9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육교 건설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설 계 후 건설토록 할 것. ○ 보안등 관리소홀 및 스위치 박스 비고정, 안전도, 밝기 문제에 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9,620餘 個 보안등에 대하여 12個 보수공사업체 가 수시 고장수리 조치하고 있으나 자체 안전문제 및 스위치 높이를 조사하여 시정 요망. ○ 名譽 監督官 委囑 活性化 方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망이 두텁고 專門性과 경력이 있는 관내 지도급 인 사를 위촉하고 동별 출신의원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할 것임. ○ 미미예식장앞 주변가드레일 설치 이전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착공후 의회의 승인없이 무단이전 공사로 공사비 를 낭비(주민의 민원을 사전 파악치 못하고 사업계획 수립)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업시행 결과로써 	

部 署 別	是 正 及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p>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豫算을 편성하고 담당공무원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p> <p>○ 유니목 제설차량 運行日誌</p> <p>- 시동용 油類를 3ℓ로 과다 책정하고 유류 수불대장의 감독미비</p> <p>예) '94. 7. 17 16km 4ℓ 사용</p> <p>'94. 7. 18日 16km 16ℓ 사용의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운행일지와 차량 검침기가 일치하도록 확인 점검 정리 하고 철저한 교육이 요구됨.</p>	
公園綠地課	<p>○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p> <p>- 公園이 없는 각동에 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을 갖추도록 요망.</p> <p>○ 나무 소독건</p> <p>- 왕래가 적은 새벽이나 밤에 소독을 하고 나무가 타지 않도록 적당히 소독을 할 것.</p> <p>○ 施設費 費目에 대하여</p> <p>- '94年度에 3億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으나, 시설비로 쓰여진 만큼의 실효가 없고 미진한 분야가 많으니 '95年度는 잘하기 바람.</p> <p>○ 區花인 장미꽃 심기운동을 전개할 용의는</p> <p>- 區花인 장비 보급이 미흡한데 동별로 장비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p> <p>○ 산행에 필요한 쉼스 설치</p> <p>- 쉼스 설치가 부족한데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p>	
下 水 課	<p>○ 下水道 직결 화장실 실태</p> <p>- 하수도 직결 화장실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개선하지 못한 화장실에 대하여는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요망.</p>	

部 署 別	是 正 및 處 理 要 求 事 項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관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관 교체 실적이 미흡하여 하수관 해결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교체할 것을 철저히 조사 발굴하여 신속히 교체 요망. ○ 浚渫業體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입식 준설시 區議員에게 확인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바, '95년에는 各洞 議員에게 접수하여 확인 요망. ○ 분류하수관이 제기능을 유지하고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하수관 1,080m를 10月 초에 일체조사 한바, 12곳 중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5개지역은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며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함. ○ 맨홀, 빗물받이 시설물로 인한 보행 및 교통장애등이 도로 기능 저해와 施工上의 問題點은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은 시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한 것이며, 특수 빗물받이 설치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위치를 정확히 파악관리 하도록 할 것. 	
弘 恩 2 洞 (地域交通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車團束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요원은 제복착용(모자, 완장등) 및 증표 없이는 단속 업무에 임하지 말 것과, 지역여건을 잘 아는 자기 동 관할 구역에 대한 책임단속제로 무차별 단속으로 인한 민원에 방이 가능하므로 주차단속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임. 	

나) 建議事項

部 署 別	建 議 事 項	備 考
都市整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都市高速化 道路 周邊의 住居施設 破壞된 地域의 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은동 로타리에서 세관병원 사이 홍제1동을 준주거 지역 지정요망. 	

◆ 1995年度豫算案 ◆

1) 提 案

이 承認案은 1994. 11. 18. 區廳長이 제출한 案으로 第1, 2次 都市建設委員會(94. 12. 12~12. 13)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豫算은 일회계년도에 있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支出의 예산액 또는 계획안 이며 地方自治團體가 수행하여야 할 재정활동의 지침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地方自治法 第118條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30條의 2 規定에 의하여 '95年度 예산안을 편성하여 西大門區議會 의결을 얻고자 함.

나) 主要骨子

- 一般會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單位：千원)

總歲入豫算額	公園綠地管理	都市計劃管理	住宅事業	建設行政	治水및下水事業
14,612,780	1,018,319	265,216	203,343	10,224,342	2,901,560

'94 歲出豫算	增 減 (%)	備 考
14,184,098	428,682(3.02%)	

- 駐車場特別會計

(單位：千원)

歲 入					歲 出 計
計	使用料收入	純歲計剩餘金	雜收入	過年度收入	
5,779,829	345,000	2,906,000	1,785,616	743,213	5,779,829

歲 出			前 年 度 對 比		備 考
駐車場施設管理	交通管理	豫備費	豫算額	%	
4,344,887	1,325,942	109,000	3,667,080	(2,112,749) 57.61%	

2) 審査結果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공사는 조기 착공하고 정확한 測 量 및 종합적인 공사로 시민생활에 不便이 없도록 해야함. ○ 전기 사용료가 많은 이유는? ○ 雪害對策을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이 중으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공사는 '95상반기중 조기 着工하 겠으며 가급적 消防道路는 집중보수 하겠습니다. ○ 街路燈, 保安燈, 부대시설등에 따른 전기료로 부족액은 없습니다. ○ 설해대책 관서당경비는 主務課에서, 기타 비용은 主管課에서 계상한 것입 니다.

○ 修正內容

－ 歲出調整

- ┌ 總削減額 : 1,851,800,000원
- └ 總增額 : 1,882,400,000원

○ 修正要旨

豫算削減內譯	豫算增額內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시설관리－시설비(404)중 －도로시설물보수설계용역비 ₩50,000,000 ○ 주차장특별회계－토지매입비(403) －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1,800,000,000 ○ 주차장특별회계－자산취득비(407)중 －불법주차단속용카메라구입 1,8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관리－업무추진비(204)중 －도시정비업무추진 2,400,000원 증액 ○ 도로시설관리－연구개발비(206)에 －도로시설물보수설계용역비 50,000,000원 －도로시설물대장용역비 30,000,000원 신설 ○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707)중 －주차장시설 적립금 1,800,000,000원
<p>삭감계 : 1,851,800,000원</p>	<p>증액계 : 1,882,400,000원</p>

3) 審査結果

都市整備局과 建設局 所管 豫算中 ₩1,851,800,000원을 삭감하고 ₩1,882,400,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 차액 ₩30,600,000원 가용 예산액을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때 재편성하도록 의결함.

◆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1) 提 案

이 改正案은 1994年 11月 14日 區廳長이 提出한 案으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94. 12. 22)에 상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道路法 施行規則(건설부령 제546호 '94. 2. 1)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등에 관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를 구수입으로 함.(안 제8조)
- 도로폭 20미터 이상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시수입으로 함.(안 제10조)
- 시수입분 과태료를 자치구에서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구에 교부함.(안 제11조)

2) 審査內容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郭載滿委員 ○ 과태료 20% → 50%로 재조정 가능한가?	建設管理課長 ○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관리도로로 점용료도 20m 이상에서 받을 수 있으며, 현행 지침상 징수 교부금은 30%이상 상향조정할 수 없음.

質 疑 要 旨	答 辯 要 旨
<p>崔容完委員</p> <p>○ 條例案 改正은 시기 적절한 것 같은 데 예정되는 구수입은?</p> <p>金永一委員</p> <p>○ 占用料와 過怠料의 구분</p>	<p>○ 수수료는 3년에 1회씩 받고 있으며 징수 교부금 예상액은 예측하기 어려움.</p> <p>○ 점용료는 道路法 第40條에 의거 도로 점용허가시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도로의 임시 사용시 행정질서 벌로써 사용 시점부터 5年前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음.</p>

○ 少數意見

- 임의사용은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발견시점부터 過怠料 부과하는 것이 民願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 발견시점과 임의사용시점에 있어서 土地主의 입장에서 계속 점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시점부터 부과함이 타당하고 대부분 토지주에게 부과하여 큰 민원은 없었음.

3) 審査結果

在席委員 8명중 5명 찬성으로 西大門區廳長이 提出한 原案을 가결하였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4. 12. 14~12. 20(7일간) 第29回 定期會 休會期間中 개최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委員長 및 幹事를 호선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각 常任委員會에서 豫備審査를 거쳐 상정된 1995年度豫算案 外 2件 承認案을 심사하여 本會議에 상정하였다.

◆ 1995年度豫算案 ◆

1) 提 案

이 豫算案은 '94. 11. 18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案으로 第1~5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94. 12. 12~12. 20)에 上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豫算案은 일회계년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이며, 地方自治團體가 수행하여야 할 재정활동으로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는 地方自治法 第118條 및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30條의2 規定에 의하여 1995年度西大門區豫算案을 편성하여 區議會 議決을 얻고자 함.

나) 主要骨子

○ 一般會計

－ 歲入豫算

(단위: 천원)

總 歲入豫算額	地方稅	經常的 稅外收入	臨時的 稅外收入	調整交付金
74,108,808	16,730,248	8,255,021	12,763,997	30,487,000

國庫 補助金	市費 補助金	指定 財源金	'94年度 最終豫算	增 減(%)
1,205,357	1,029,591	3,637,594	69,842,005	5,106,803(7.3)

－ 歲出豫算

總歲入豫算	議會運營	機關運營	企劃管理	公報管理	內務行政
74,108,808	1,650,456	15,297,203	595,482	1,274,119	4,637,321

洞行政運營	會計및財產管理	一般社會福祉	保健衛生管理	環境管理	公園綠地管理
15,367,795	1,329,028	5,387,476	2,316,762	61,340	1,018,319

쓰레기處理	糞尿處理	地域經濟管理	都市計劃管理	住宅事業	建設行政
9,443,648	551,446	400,871	265,216	203,343	10,224,342

治水 및 下水事業	民防衛管理費	豫 備 費
2,901,560	237,279	945,802

○ 特別會計

－ 醫療保護 基金

(단위 : 천원)

歲 入			歲 出			前年度 對比	
計	事業外 收 入	補助金	計	醫療保護 管 理	醫療保護 事 業	豫算額	%
811,746	13,466	798,280	811,746	3,840	807,906	1,068,849	(△257,103 △24.05%)

－ 새마을 所得 支援事業

歲 入			歲 出		前年度 對比		備 考
計	移越金	融資金回收	雜收入	融資金	豫算額	%	
219,513	53,902	163,111	2,500	219,513	156,615	(62,898) 40.16%	

○ 駐車場 特別會計

(단위 : 천원)

歲 入				
計	使用料 收入	純歲計剩餘金	雜 收 入	過年度 收入
5,779,829	345,000	2,906,000	1,785,616	743,213

歲 出			前年度 對比			備 考
計	駐車場施設管理	交通管理	豫備費	豫算額	%	
5,779,829	4,344,887	1,294,142	140,800	3,667,080	(2,112,749) 57.61%	

減 額		增 額	
豫算科目	金額	豫算科目	金額
○ 노임소득취로사업비	50,000	○ 부녀교실운영(강사료)	8,640
○ 직장어린이집건립실시설계비	5,114	○ 공기살균기 1대	880
○ 유아실(놀이기구)	358	○ 혈압계 1대	300
○ 유아실운영	5,508	○ 청진기 1대	100
○ 유아실(책상외8종)	2,018	○ 도시정비업무추진	2,400
○ 홍제동 167의4~158의15간 (보상비)	100,000	○ 버스전용차선제 상반기 카메라 운영비	30,812
○ 제설 상황판 제작	1,800	○ 홍제동 361의28~355간 (보상비)	100,000
○ 도로시설물 보수설계용역	50,000	○ 도로시설물 보수설계용 역비	50,000
○ 도시방재 관리	20,000	○ 도로시설물대장 설계용 역비	30,000
○ 주차장건설부지매입	1,800,000	○ 관내도로소파보수공사	20,000
○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	150,000	○ 예비비(일반회계)	3,679
○ 불법주차단속용 카메라구입	1,800	○ 주정차시설적립금	1,800,000
		○ 불법주차차량견인료	120,000
		○ 예비비(특별회계)	31,800
계	2,388,098	계	2,338,098

4) 豫算總則修正事項 - 없음

5) 審査結果

在席委員 8名 전원 만장일치 區廳長이 提出한 豫算案을 수정가결하였음.

◆ 1993年度 歲入·歲出決算案및豫備費支出承認案 ◆

1) 提 案

이 案은 '94. 11. 15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94. 12. 14)에 上정하였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是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地方自治法 제125조 및 同法施行令 第47條 規定에 의하여 1993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38條에 의하여 區議會의 승인을 받고 자 함.

나) 主要骨子

〈'93年度 歲入·歲出 結算 규모〉

○ 總 括

(單位：百만원)

歲 入		歲 出			'94 移 越 金			
豫算額	收納額	豫算額	豫算現額	支出額	計	事故移越	返還金	歲計剩餘金
71,752	78,419	71,752	75,690	61,237	17,182	4,078	69	13,035

○ 一般會計

歲 入		歲 出			移 越 金			
豫算額	收納額	豫算額	豫算現額	支出額	計	事故移越	返還金	歲計剩餘金
69,617	75,169	69,617	73,555	59,761	15,408	4,048	69	11,291

○ 特別會計

歲 入		歲 出			移 越 金			
豫算額	收納額	豫算額	豫算現額	支出額	計	事故移越	返還金	歲計剩餘金
2,135	3,250	2,135	2,135	1,476	1,774	30		1,744

第 3 篇

議政活動 및 議政報告 現況

1. 議政活動

- 議員 財產登錄
- 開院3週年 紀念行事(本會議場)
- 議員 海外研修(캐나다 外 1個國)
- 植木行事(鞍山)
- 巨濟郡 姊妹 議會 訪問
- 板門店 訪問 및 誠金 傳達
- 軍部隊 訪問(第216部隊)
- 議員 세미나(楊坪)
- 議員 教育 研修
- 議政報告會
- 議員 送年會

2. 議政報告會 — 28回

1. 議政活動

事業名	主要內容
議員 財產登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구의원 ○ 등록접수 : 구의회사무국 ○ 기 간 : '94. 1. 3~1. 28 ○ 내 용 : 의원 재산 변경 등록
개원3주년 기념행사 (본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94. 4. 15 ○ 장 소 : 의사당(본회의장) ○ 내 용 : 의회유공자 표창 및 기념식
議員海外研修 (캐나다의 1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수 국 : 미국, 캐나다 ○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94. 3. 16~4. 12 2차 : '94. 4. 18~5. 5 ○ 연수인원 :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의원 14명, 공무원 2명 2차 : 의원 12명, 공무원 2명
植木行事 (안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94. 4. 5 ○ 장 소 : 연회동 산2-17 안산(연세대학 뒷산) ○ 수 종 : 잣나무 500주 식수
巨濟郡姊妹議會訪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94. 8. 8~8. 10 ○ 방문의회 : 거제군의의회 ○ 내 용 : 상호의정활동 비교토론 및 의정평가
板門店 訪問 및 誠 金傳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94. 11. 1 ○ 방문장소 :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 ○ 내 용 : 남북대치상황 및 안보의식고취 ○ 성금전달액 : 250,000원
軍部隊 訪問 (제216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94. 9. 3(토) ○ 방문부대 : 제216연대본부 ○ 내 용 : 장병 위문차

事業名	主要內容
議員세미나 (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4. 11. 10~11. 11 ○ 장소 : 양평(대명콘도) ○ 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 강사 : 전국대학교 김종순 교수
議員 教育 研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 시립대학교, 한양대(지방자치), 연세대학원 ○ 내용 : 지방의회 발전 전문성 ○ 연수인원 : 의원 17명
議政報告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4. 2. 1~12. 30 ○ 방법 : 지역구별(28지구) 보고회 실시 ○ 내용 : '94년도 의정활동 사항 및 '95년도 활동계획 보고 ○ 참여자 : 지역구 주민 유관단체
議員 送年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94. 12. 29 18:00 ○ 장소 : 스위스그랜드호텔 2층 볼룸홀 ○ 내용 : 관내 국회의원 및 기관장, 의원부부 120명 참석

2. 議政報告會

日時	議員名	場 所
2. 19	金 鍾 彩	인왕국민학교
3. 12	李 文 馥	홍제2동 사무소
11. 3	鄭 日 洙	북가좌2동 전통식당
11. 8	曹 甲 鉉	조갑현 의원사무실
11. 9	鄭 日 出	남가좌동 우신식당
11. 23	尹 益 洙	북성교회
11. 28	朴 正 來	영보예식장
11. 30	朴 老 鉉	고려갈비
12. 11	鄭 赫 柱	북가좌1동사무소
12. 12	左 斗 行	연희회관
12. 13	具 滋 億	홍은식당
12. 14	姜 碩 宗	강석종 의원 사무실
12. 15	金 永 一	홍제3동사무소
12. 16	金 平 洛	북가좌1동사무소

日時	議員名	場 所
12. 20	李 鳳 洙	현저동사무소
12. 23	金 廷 炫	연희1동사무소
12. 23	全 在 煥	금화국민학교
12. 25	金 銀 天	홍은식당
12. 26	鄭 田 村	형제갈비
12. 26	鄭 和 鎭	인왕 노인정
12. 27	崔 容 完	홍제국민학교
12. 27	郭 載 滿	북가좌2동사무소
12. 28	宋 榮 于	노라노예식장
12. 28	鄭 炳 八	홍은2동사무소
12. 28	林 在 鮮	성은교회
12. 28	金 源 珠	남가좌2동사무소
12. 30	趙 敏 行	북아현1동사무소
12. 30	全 聖 章	북아현3동사무소

第 4 篇

會議 現況 및 統計

- 集會 및 會期
- 議案處理 現況
- 議會運營 現況
- 民願處理 現況

集會 및 會期

1. 集會現況

會 期 別	集 會 公 告 日	開 會 日	閉 會 日
第 24 回 臨 時 會	94. 1. 25	94. 2. 1	94. 2. 3
第 25 回 臨 時 會	94. 5. 13	94. 5. 19	94. 6. 2
第 26 回 臨 時 會	94. 6. 14	94. 6. 20	94. 6. 30
第 27 回 臨 時 會	94. 9. 2	94. 9. 7	94. 9. 14
第 28 回 臨 時 會	94. 10. 18	94. 10. 24	94. 10. 31
第 29 回 定 期 會	94. 11. 25	94. 11. 25	94. 12. 29

2. 會期別 開議日數와 會議時間

○ 本會議

會 期 別	會 期	開議日數	總會議時間	1日 平均會議時間
第 24 回 臨 時 會	3	2	2시간 29분	1시간 15분
第 25 回 臨 時 會	15	2	3시간 11분	1시간 36분
第 26 回 臨 時 會	11	3	9시간 8분	3시간 3분
第 27 回 臨 時 會	8	2	1시간 35분	48분
第 28 回 臨 時 會	8	2	1시간 19분	40분
第 29 回 定 期 會	35	6	18시간 4분	3시간 1분
計	80	17	35시간 46분	2시간 6분

○ 常任委員會

委員會 會期別	議會運營 委員會		總務委員會		都市建設委員會		計	
	開議 日數	會議 時間	開議 日數	會議 時間	開議 日數	會議 時間	開議 日數	會議 時間
24回臨時會	1	시간58분	1	시간44분	1	시간57분	3	2시간39분
25回臨時會	1	시간16분	6	38시간12분	2	8시간24분	9	46시간52분
26回臨時會	2	2시간14분	2	13시간39분	2	3시간44분	6	19시간27분
27回臨時會	2	1시간23분	1	6시간22분		시간 분	3	7시간45분
28回臨時會	4	2시간40분	1	2시간38분	1	2시간 44분	6	8시간 2분
29回定期會	5	2시간59분	9	57시간42분	9	43시간48분	23	104시간29분
計	15	10시간30분	20	119시간17분	15	59시간37분	50	189시간24분

○ 特別委員會

委員會 會期別	議會運營 委員會		總務委員會		都市建設委員會		計	
	開議 日數	會議 時間	開議 日數	會議 時間	開議 日數	會議 時間	開議 日數	會議 時間
24回臨時會	1	시간44분		시간 분	2	6시간10분	3	6시간54분
26回臨時會		시간 분	2	3시간37분		시간 분	2	3시간37분
29回定期會		시간 분	5	18시간55분		시간 분	5	18시간55분
計	1	시간44분	7	22시간32분	2	6시간10분	10	29시간26분

3. 會期別 集會要求 現況

會期別	集會 公告日	集會 要求者	集會要求理由
第 24 回 臨時會	'94. 1. 26	金平洛議員外9人	각종 조례안 처리
第 25 回 臨時會	'94. 5. 13	崔容完議員外9人	'94년도 구정업무보고
第 26 回 臨時會	'94. 6. 14	崔容完議員外9人	구정질문 및 조례안 처리
第 27 回 臨時會	'94. 5. 1	尹益洙議員外9人	각종 조례안 처리
第 28 回 臨時會	'94. 10. 18	金平洛議員外9人	각종 조례안 처리
第 29 回 定期會	'94. 11. 19	地方自治法第38條	'94년도 정기회

○ 集會 要求者別 現況

要 求 者	回 數	備 考
議 員 集 會 要 求	5 회	臨 時 會
地 方 自 治 法 第 38 條	1 회	定 期 會
計	6 회	

議案處理現況

1. 總括

區 分 議案別		提出	處理內容				未處理	備考	
			可決			否決			計
			原案	修正	小計				
計		58	45	13	58		58		
條例案	小計	45	45	13	58		58		
	議員發議	2	37	8	45		45		
	委員會發議		2		2		2		
	區廳長提出	43	35	8	43		43		
豫算・決算案豫備費		4	2	2	4		4		
建議案									
決議案		1		1	1		1		
承認案		3	3		3		3		
規則案		1	1		1		1		
其他		4	2	2	4		4		

請願 吳 陳情處理

區 分	接 收	處 理			審查(處理)除外		
		計	議會處理	區廳移送	計	要件未備	其 他
請 願	4	2		2	2		2
陳 情	14	13	1	12	1		1

議會運營現況

1. 本會議

開催日數			開催日數			處理案件			
計	定期會	臨時會	計	定期會	臨時會	計	條例案	豫算案	其他案
6	1	5	80	35	45	58	45	4	9

2. 委員會

常任委員會			
計	議會運營委員會	總務委員會	都市建設委員會
50回	15回	20回	15回

特別委員會			
計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環境對策委員會	議會廳舍建立準備委員會
10回	7回	2回	1回

3. 議案處理 現況

議案別								處理區分	
計	豫算案	條例案	建議案	決議案	同議案	吳承認案	其他	可決	否決
58	4	45		1		4	4	58	

4. 請願 吳 陳情書 處理 現況

區分	接收	處理			未處理	審查(處理)除外	
		計	議會處理	區廳移送		要件不備	其他
請願	4	2		2			2
陳情	14	13	1	12			

5. 區政質問

○ 現況 …… 總 187件

移送件數		質問 類型別		平均件數	最多件數	備 考
		書 面	口 頭			
1次	117	11	106	6.8	23	
2次	70		70	3.5	6	
計	187	11	176	10.3	29	

○ 部署別 …… 總 187件

計	總務局	財務局	市民局	都 市 整備局	建設局	保健所	文 化 公報室	市 民 奉仕室	其 他	計
1次	25	4	25	36	17	1	4	4	1	117
2次	15	12	11	22	6		2	1	1	70
計	40	16	36	58	23	1	6	5	2	187

6. 區政監査

○ 資料提出 要求 …… 總 212件

區 分	總務委員會	都市建設 委員會	3室	共 通
件 數	83	113	6	10

○ 是正要求 吳 建議事項 …… 總 99件

區 分	總務委員會	都市建設 委員會	3室	議會事務局
件 數	30	55	4	10

民願處理 現況

1. 請願 및 陳情書處理

區 分	接 收	處 理			未處理	未處理 事由
		計	議會處理	區廳移送		
請 願	4	2		2	2	재판계류및기타
陳 情	14	13	1	12	1	재판계류

2. 請願 處理 內譯

請 願 名	請 願 人	處 理 結 果
都市計劃 용도 지역 및 地區 변경에 대한 請願	延禧2洞 91-11 윤주환외 66인	○ 鞍山公園에 연접된 지역으로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專用住居地域으로 지정한 것이고 안산공원의 가시권 확보와 自然風致를 유지하기 위해 풍치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전용주거지역 및 풍치지구 변경 및 해제는 불가함.
注油所 허가에 관한 請願	弘濟3洞 279-40 區議員外 125人	○ 허가 사항이 타당하여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國公有地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대책에 관한 請願	北阿峴2洞 210번 지 여운훈외 160人	○ 特定地域의 세입자만을 위한 공동임대주택 건립은 다른지역의 貫入者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國家政策的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立法化할 사항임. ○ 住宅建設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에 의거 건립세대수가 평형에 관계없이 1000세대 이상일 경우 진입

請 願 名	請 願 人	處 理 結 果
		<p>도로가 15m이상 확보 되어야 하므로 容積率을 높일 수 없고 다만 세입자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조합으로 하여금 세입자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토록 行政指導 하겠음.</p>
<p>공용지하 연결통로 占用料 賦課 撤回要求</p>	<p>滄川洞 50-13호 김영희외 1159人</p>	<p>○ 請願法 第5條 및 地方自治法 第66條에 의거(불수리 통보)</p>
<p>不合理한 都市計劃 是正</p>	<p>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번지 159호 나중삼외 2인</p>	<p>○ 90년 서울시 都市計劃 再整備 계획시 전용주거지역및 풍치지구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한 바 미반영되어 指定目的上 해제는 불가함.</p>
<p>風致地區 解除 및 건폐율 調整要求</p>	<p>北阿峴洞 1-1121 김현술</p>	<p>○ 鞍山 자연공원의 가시권의 自然風致를 위하여 해제는 불가 ○ 경기도와 인접한 풍치지구중 區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만 가능함.</p>
<p>市場 진입로 工事로 인한 생계대책 要求</p>	<p>弘濟4洞 109번지 1호 김화순외 643명</p>	<p>○ 民願人이 無斷占用하고 있는 부분은 再開發 구역의 주진입 도로로 건물철거 및 土沙搬出을 위하여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고 별도의 對策은 없음.</p>
<p>不當한 再建築 組合 運營에 대한 시정요구</p>	<p>麻浦區 望遠洞 384-48 성기민외 1人</p>	<p>○ 재판계류중인 사항으로 불수리 통보</p>
<p>無分別한 景觀毀損 禁止 및 개발중지</p>	<p>弘恩3洞 413-36 성형식</p>	<p>○ 弘恩洞 산26번지 백련산 일대의 주변 공사는 각 사업의 공익성 등으로 인하여 중단은 어려운 실정임.</p>

請 願 名	請 願 人	處 理 結 果
設立委員 懲戒再審 要求	南加佐2洞 224- 91 김윤환외 3인	○ 南加佐7區域 再開發事業推進 委員會의 추진위원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민원은 동구역사업 推進委員會로부터 소명기 회부여 및 질의회답토록 조치하였음.
延禧洞 151번지 1- 159번지 3호간 道路 開設(6m)요구	강원도 철원군 동 송읍 이평리 4/6 호민세외 2인	○ 延禧洞 151의1-159의3간 도시계획 도 로의 조속한 시행요청 건은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96-97년 까지 보상 및 공사할 계획임.
一時 道路 占用	大峴洞 104-26 정명애	○ '94. 8. 22 公務員(18명)과 차량(2대) 을 동원하여 의약품 및 부대시설을 강 제정비하여 구 物品倉庫에 임시보관 조치 하였음.
地域 再建築에 따른 對策	北阿峴2洞 210번 지 시민 아파트 9 棟 여운훈외 165 인	○ 建物所有者가 再建築組合을 결성하여 재건축에 따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어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임대 및 영구아파트 建築은 어려운 실정임.
區有財産 賣却保有 및 眞相要求	北阿峴2洞 210번 지 시민아파트 강 연순 외 23人	○ 請願으로 審査한 사안을 다시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사료되므로 진정인의 요구 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지.